

# **지방소득세의 도입방안**

**연구책임 : 라 휘 문(책임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요약 및 정책건의>**

### **I.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지방소득세를 도입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음. 구체적으로는
  - 지방소득세의 도입 이유와 이론적·현실적 도입가능성을 살펴보며,
  - 지방소득세의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지방소득세 도입 모형들을 제시한 후 각 모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실한 지방소득세의 도입모형을 제시하고자 함.

### **II. 연구범위와 방법**

- 지방소득세의 도입모형을 제시하기 전에 지방소득세의 도입이유와 이론적·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함.
- 지방소득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득세의 도입유형을 결정하여야 함. 도입유형으로는 분리방식과 공동이용방식이 있음.
- 도입유형이 결정될 경우 공동이용세원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함. 대상세목으로는 국세 소득세, 법인세,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등이 있음.
- 마지막으로 배분방식과 기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함. 배분방식은

정세지주의, 배분공식, 그리고 양자를 혼합한 절충안이 있을 수 있음.

### III. 연구내용

#### 1. 지방소득세의 도입 필요성

-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자치단체이양에 따른 재원이양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재원이양노력이 크지 않음. 따라서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자치단체이양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성과는 지방세로 연계되기 보다는 국세로서 연계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체계내 소득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경제상황의 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지방세개편논의에 따른 세수감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서 지방소득세의 도입필요성을 설명하였음.

#### 2. 지방소득세 도입의 이론적 · 현실적 타당성

- 세출수요와 세입수단의 일치라는 차원에서 Musgrave와 King 등의 세원배분기준을 살펴보았으며, 이로 인하여 도입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공공재의 편익범위를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을 살펴보았는 바, 역시 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음.
- 지방세원칙과의 연계하에서 소득세가 지방세로서 가능한가를 검토하였는 바, 개인소득과세의 경우 재산과세 다음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소득과세가 지방세원화되는 것에는 별다른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음.
- 지방소득세의 도입으로 세율이 인상될 가능성이 큼. 이는 노동공급, 투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러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한 세율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지방소득세의 도입이 가능함.

### 3. 지방소득세의 도입유형

-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이 분리방식보다 징세비 절약, 세무행정의 간편성 측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음.
- 또한 조세수출, 세원의 이동성 그리고 과세행정의 전문성을 이유로 지방소득세의 도입을 반대하는 학자들의 주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음.

### 4. 공동이용대상세목

- 국세 소득과세인 소득세, 법인세,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등을 검토하였는 바, 자산재평가세와 부당이득세는 세수규모가 작아 지방소득세의 공동세원으로서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제외하였

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형평성과 이론적인 측면에서 소득세가 법인세에 비하여 우월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세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 5. 배분규모

- 지방소득세의 배분규모는 기능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능 배분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예시적으로 지방재정부족액과 지방세체계 개편논의에 의한 감소분을 포함할 경우의 부족액인 25%를 제시하였음.

## 6. 배분방식과 배분기준

- 세원의 배분방식은 정세지주의, 배분공식 그리고 이를 절충하는 안을 이용하였음.
- 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하는 경우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 소득 세액의 부담비율, 배분공식은 재정력환산지수와 역재정력배분지수 그리고 절충안은 두 기준의 혼합임.

## 7. 대안별 효과분석 및 대안의 선택

- 세수확충효과, 세수이전효과, 지방자치단체간 형평화 효과, 소득과 세 강화효과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지방세목으로서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적인 이유로 어려울 경우

사전재정조정제도로서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임.

## IV. 정책건의

-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목으로서 도입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타당할 것으로 보임.
  - 과세주체는 직·주분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지방세목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현행 지방세체계 내 소득과세와의 중복문제를 들 수 있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지방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현행 지방세체계내 소득과세를 지방소득세에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이와 같은 소득과세의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현행 소득과세가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이거나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이거나에 따라 세수이전효과가 발생함. 이때에는 지방소득세의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임.
- 지방소득세를 정책적인 이유 때문에 지방세목화하기 어려울 경우 사전재정조정재원으로서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이 방안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임.
  - 지방재정조정재원으로서 지방소득세를 신설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를 완화한다는 의미에서 배분공식을 사용하는 동시에 효율성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징세지주의를 가미하는 혼합된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이 방식에 의하여 지방재정조정재원으로서 지방소득세를 신설할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일정한 배분비율을 정한 후 배분공식과 징세 지주의를 혼합한 모형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이때 지방교부세와의 문제가 발생함. 먼저 국세 소득세는 지방교부 세의 재원인 동시에 지방소득세의 재원이 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 경우 지방교부세의 대상에서 국세 소득세를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또한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를 완화하는 장치로서 이미 지방교부세가 활용되고 있는데 지방 소득세를 또 다시 조정재원으로서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 문제는 지방교부세의 경우 현재 지방자치단체간 형평화기능을 수행하고 있기는 하나 완전하지는 않으며 따라서 많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양한 문헌에서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는 지방교부세를 개선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지방소득세를 사전재정조정 장치로서 활용한 후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교부세를 활용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제3절 연구의 모형 .....	9
제2장 지방소득세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 .....	12
제1절 지방소득세 도입의 필요성 .....	12
1.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부족재원확보 .....	12
2. 지방세수감소의 보전대책 .....	14
3. 지방세체계내 소득과세의 강화 .....	18
제2절 지방소득세 도입의 타당성 .....	24
1. 이론적 타당성 .....	24
2. 현실적 타당성 .....	29
제3장 지방소득세의 도입방안 .....	39
제1절 지방소득세의 도입유형 .....	39
1. 지방소득세 도입유형의 제시 .....	39
2. 지방소득세 도입유형의 선택 .....	41

제2절 지방소득세의 공동이용세원 .....	45
1. 지방소득세 대상세목의 제시 .....	45
2. 지방소득세 대상세목의 선택 .....	46
제3절 지방소득세의 배분비율 .....	52
1.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재원 .....	52
2. 지방소득세의 배분비율 .....	55
3. 지방소득세 재원의 확보방법 .....	56
제4절 지방소득세의 배분방식 및 배분결과 .....	59
1. 지방소득세의 배분방식 .....	59
2. 지방소득세의 배분결과 .....	64
 제4장 지방소득세의 도입을 위한 대안별 평가 ....	107
제1절 세수확충효과 .....	107
1. 광역자치단체 .....	107
2. 기초자치단체 .....	113
제2절 세수이전효과 .....	119
제3절 형평화 효과 .....	121
1. 광역자치단체 .....	121
2. 기초자치단체 .....	123
제4절 소득과세의 강화효과 .....	125
1. 광역자치단체 .....	125
2. 기초자치단체 .....	128
제5절 종합적 논의 및 대안의 선택 .....	131
1. 종합적 논의 .....	131

2. 대안의 선택 .....	138
참고문헌 .....	144
<부록 1> 국세소득세의 배분비율 및 징세지주의 반영결과	149
<부록 2> 국세 소득세의 광역자치단체간 배분결과 .....	151
<부록 3> 각 대안별 세수규모(기초자치단체)	156
<부록 4> 각 대안별 세수확충효과(기초자치단체)	165
<부록 5> 각 대안별 소득과세 강화 효과(기초자치단체)	174

---

## 표 목 차

<표 2-1>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양 추세 .....	13
<표 2-2> 지방세로서 인건비 미해결단체 .....	16
<표 2-3> 우리 나라 지방세체계의 성격별 분류 .....	19
<표 2-4> 지방세수의 변화추이 .....	20
<표 2-5> 지방세 주요세목의 신장성 .....	23
<표 2-6> 세출수요와 세입수단간 일치에 의한 정부간 세원배분모형 .....	26
<표 2-7> 공공재의 편익구분에 의한 정부간 세원배분모형 .....	27
<표 2-8> 지방세원칙에 입각한 세원별 분석결과 .....	29
<표 2-9> 주요국의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 .....	31
<표 2-10> 주·지방정부의 세원별 조세수입비율(연방형국가) .....	37
<표 2-11> 지방정부의 세원별 조세수입비율(단일형국가) .....	38
<표 3-1> 국세 소득과세의 세목별 규모 .....	46
<표 3-2> 국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지방자치단체별 부담규모 .....	47
<표 3-3> 국세 소득세와 법인세의 불형평성 분석결과 .....	48
<표 3-4> 지방세의 세목별 불형평성 분석결과 .....	49
<표 3-5> 소득세의 종류 및 내용 .....	51
<표 3-6> 부동산 등록세 세율인하 및 단순화에 따른 세수추계 .....	54
<표 3-7>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 .....	55
<표 3-8> 국세 소득세의 배분비율별 배분규모 .....	56
<표 3-9> 국세 소득세의 과표 및 산출세액 추계결과 .....	58

<표 3-10> 징세지주의에 의한 광역자치단체별 배분결과	66
<표 3-11> 독일 공동세의 대상세목 및 배분비율	67
<표 3-12> 광역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	69
<표 3-13> 배분공식에 의한 광역자치단체별 배분결과(1)	73
<표 3-14> 배분공식에 의한 광역자치단체별 배분결과(2)	73
<표 3-15> 절충안에 의한 광역자치단체별 배분결과(1)	77
<표 3-16> 절충안에 의한 광역자치단체별 배분결과(2)	78
<표 3-17> 주민세 소득할과	
국세 소득세 및 법인세와의 회귀분석결과	81
<표 3-18> 주민세 소득할과 국세 소득세, 법인세의 비율	82
<표 3-19> 징세지주의에 의한	
기초자치단체별 배분결과(중앙정부1)	84
<표 3-20> 징세지주의에 의한	
기초자치단체별 배분결과(중앙정부2)	85
<표 3-21> 징세지주의에 의한	
기초자치단체별 배분결과(광역)	87
<표 3-22> 배분공식에 의한	
기초자치단체별 배분결과(중앙정부1)	89
<표 3-23> 배분공식에 의한	
기초자치단체별 배분결과(중앙정부2)	90
<표 3-24> 배분공식에 의한	
기초자치단체별 배분결과(중앙정부3)	92
<표 3-25> 배분공식에 의한	
기초자치단체별 배분결과(중앙정부4)	93

<표 3-26> 배분공식에 의한 기초자치단체별 배분결과(광역1) .....	95
<표 3-27> 배분공식에 의한 기초자치단체별 배분결과(광역2) .....	96
<표 3-28> 절충안에 의한 기초자치단체별 배분결과(중앙정부1) ....	99
<표 3-29> 절충안에 의한 기초자치단체별 배분결과(중앙정부2) ...	100
<표 3-30> 절충안에 의한 기초자치단체별 배분결과(중앙정부3) ...	102
<표 3-31> 절충안에 의한 기초자치단체별 배분결과(중앙정부4) ...	103
<표 3-32> 절충안에 의한 기초자치단체별 배분결과(광역1) .....	105
<표 3-33> 절충안에 의한 기초자치단체별 배분결과(광역2) .....	106
<표 4-1> 각 대안별 세수규모(광역자치단체) .....	108
<표 4-2> 각 대안별 세수확충효과(광역자치단체) .....	111
<표 4-3> 각 대안별 세수규모(기초자치단체) .....	116
<표 4-4> 각 대안별 세수확충효과(기초자치단체) .....	118
<표 4-5> 국세와 지방세의 규모비교 .....	120
<표 4-6> 지방소득세의 도입에 따른 세수이전효과 .....	121
<표 4-7> 지방소득세의 도입에 따른	
대안별 형평화 효과(광역자치단체) .....	122
<표 4-8> 지방소득세의 도입에 따른	
대안별 형평화 효과(기초자치단체) .....	124
<표 4-9> 지방세체계내 소득과세의 규모 .....	126
<표 4-10> 시·도의 소득과세 강화효과 .....	128
<표 4-11> 기초자치단체별 소득과세의 강화효과 .....	129
<표 4-12> 기초자치단체의 대안별 세수확충효과 .....	134

---

##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모형 .....	11
<그림 2-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 .....	13
<그림 2-2> 우리나라 지방세수의 성격별 규모 .....	17
<그림 3-1> 세원의 배분유형 .....	40
<그림 3-2> 지방소득세의 도입을 위한 배분방식 .....	64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목적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즉 주민의 행정수요가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전보다 많아졌으며 향후 더욱 많아질 것인 바,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중앙집권 하에서 수행하였던 기능보다 훨씬 많은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의의가 지역주민들의 선호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서비스 및 지역공공재를 공급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즉,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개발을 통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후생을 증진하여야 할 1차적인 책임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능의 양적·질적 증가현상으로 인하여 재정수요의 증가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재정에 대한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수요에 비례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들 수 있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지원체계하에서 부동산거래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방세체계에서 대략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래과세의 수입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실업률의 증가, 기업의 감량경영에 따른 고용감축, 정리해고, 집단감원으로 소득이 감소되어 국세의 소득세가 감소되며, 이로 인하여 소득세할 주민세 및 사업소세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증가되고 있는 지방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현행 지방세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서 발생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지방세체계는 재산과세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세수를 확충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sup>1)</sup> 즉 재산과세위주의 지방세 체계 하에서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재산가액평가라는 행정과정을 수반하여야 하는 바, 이때 납세의무자의 조세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과표인상을 통한 세수증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종종 논의되고 있는 것은 지방세체계에 소득과세의 비중을 높이자는 것이다.<sup>2)</sup> 소득과세의 비중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들중 대표적인 예가 지방소득세의 도입이다.

지방소득세의 도입을 통하여 지금까지 국가경쟁력 및 지역경제력의 성장에 따른 소득의 증가가 직접적으로 지방세원으로 확충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드러낸 지방세체계에 일대 변환을 가져오자는 것이다.

- 
- 1) 지방재정력의 확충을 위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중앙정부의 재원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이양하여 지방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이고,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운영의 자주성·독립성을 강화시켜주자는 것이다(박종구, "지방재정력 향상을 위한 국세·지방세의 재배분,"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8년 제1호, pp. 21). 첫 번째의 예로는 국세소득세원과 소비세원, 구체적으로는 산림소득, 부동산소득, 유류관련 소비 등을 지방 세원화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의 예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과세자주권·기채 자주권의 강화 등으로 나타난다.
  - 2) 재산과세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지방소득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비세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방소득세에 한정하여 연구하는 것이므로 논의의 초점을 지방소득세로 한정하고자 한다.

지방소득세의 도입은 살펴본 바와 같이 매우 중요한 지방세부문의 개혁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지방소득세의 도입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언급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자는 논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입목적은 재산과세위주로 되어 있는 지방세체계에 소득과세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재정확충을 꾀하자는 것이며, 이는 지방소득세의 도입을 주장하는 모든 학자 및 실무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학자와 실무자들간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방소득세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학자 및 실무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지방소득세의 도입유형을 구분하여 보면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지방세체계내 소득과세를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이 경우 주민세 소득할, 사업소세 종업원할 및 농지세가 통합 대상이 된다.

둘째, 국세 소득과세중 지방세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일부의 세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하자는 주장이다. 이 주장에 의할 경우 이양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지역개발의 산물인 양도소득세, 1차산업 관련소득중 국지적인 생산소득인 산림소득, 사업소득세 중 임업, 축산업, 수산업관련 소득 등이다.

셋째, 지방세체계내 소득과세를 통합하고 국세의 소득과세중 일부를 이양받고 그리고 신세원을 개발하여 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추가하자는 주장이다. 이 방안은 첫째 방안과 둘째 방안을 모두 종합한 것이다.

넷째, 국세 소득과세의 세원을 공동이용하는 방안에 의하여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첫째안에 의하여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지방세목이 단순화된다 는 측면에서는 그 효과가 있으나 재정의 확충차원에서는 실익이 없는 대안으로서 문제가 있다. 또한 둘째안에 의하여 지방소득세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중앙정부가 세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주어야 하나 이는 실제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가능하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접근하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안은 첫째안과 둘째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다가 신세원개발시 나타날 수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중복과세금지규정에 위배되어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넷째안인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에 의한 지방소득세의 도입은 선진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조세행정상 나타날 수 있는 징세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확충 등의 차원에서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에 입각하여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는 세원을 공동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방향만 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세목을 공동이용세원으로 할 것인지,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배분비율은 어떻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간에는 어떠한 기준에 입각하여 배분할 것인가 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국세의 세원을 공동이용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실한 지방소득세의 도입형태가 무엇인가를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이용할 수 있는 국세의 세목은 무엇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별로 세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배분방식으로서는 징

세지주의, 배분공식, 그리고 양자를 혼합한 절충안의 3가지 형태를 제시한 후 각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실한 지방소득세의 도입 형태를 제시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국세의 세원을 공동이용하여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3가지 형태로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실한 지방소득세의 도입형태를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충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는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되 세원배분유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세원의 배분유형에는 세원의 분리방식과 공동이용방식이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각각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하여 세원배분유형을 선정하였다.

둘째는 국세의 세원 중 공동이용이 가능한 대상세목이 무엇인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므로 국세의 세원 중 소득과세를 대상으로 하였다. 국세 중 소득과세는 소득세, 법인세,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등이 있으나 자산재평가세와 부당이득세의 경우 세수규모가 크지 않아 전액을 지방으로 이양한다고 하더라도 재원확충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세수가 형평하게 배분되어 있어야 한다는 지방세의 보편성원칙에 입각하여 2개의 세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불형평성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현행 지방세 세목의 불형평성정도와 비교하였다.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이론적 측면을 검토하여 대상세목의 선정시 활용하였다.

불형평성을 판정하기 위한 분석방법은 기수적(cardinal)인 방법과 서수적(ordinal)인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배의 상태를 대표하는 하나의 수치를 계산하고 이 수치에 근거하여 비교하는 기수적인 분석방법을 택하였다. 기수적인 분석방법중 본 연구에서는 변이계수(<식 1> 참조), Entropy지수(<식 2> 참조), Atkinson지수(<식 3> 참조) 등을 사용하였다.<sup>3)</sup>

$$C = \frac{\sigma}{\mu}$$

$\sigma$  = 표준편차     $\mu$  = 평균

<식 1>

3) 불형평성을 측정하는 지수는 가장 균등하게 배분된 상태를 출발점으로 하여 현실의 분배상태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측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이준구,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서울 : 다산출판사, 1993년, pp. 231~232).

이러한 불형평성을 측정하는 지수들중 하나의 지수를 선정하여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의 지수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유는 지수상의 특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즉 각 지수는 일정부분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처럼 가중치를 부여하는 부분이 다른으로 인하여 분석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격차분석이나 불형평성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변이계수는 어느 특정부분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채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Atkinson지수는  $\epsilon$  값을 변화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 하나의 지수로서 여러 가지 지수를 사용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Entropy지수는 계산과정은 복잡하지만 상위의 큰 값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T = \sum s_i \log n - \sum s_i \log \frac{1}{s_i}$$

$s_i$   
s<sub>i</sub> = 각 사람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몫

.....<식 2>

$$A = 1 - \left( \sum \frac{Y_i}{Y} \right)^{1-\varepsilon} [1/n]^{1/(1-\varepsilon)}$$

$Y_i$   
 $Y$

$Y_i$  = i번째 소득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평균소득  
 $n$  = 관찰치의 수  
 $\varepsilon$  = 분배매개변수

.....<식 3>

대상세목이 선정되면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세목전체를 공동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중의 일부를 공동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으며,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갑종근로소득, 갑종퇴직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어 그 종류가 다양하다. 이러한 종류를 모두 공동세원화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일부의 종류에 대해서만 공동세원화 할 것인지 등이 결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일부의 세원만을 공동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복잡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전체를 공동세원으로 이용하는 방안만을 다루었다.

셋째는 세원을 공동이용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별 배분방식과 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배분방식은 징세지주의, 배분공식, 그리고 양자를 혼합한 절충안에 대한 논의로 요약될 수 있으

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3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각각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다음에 검토하여야 하는 것은 배분비율의 문제이다. 배분비율은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다. 먼저 독일의 공동세처럼 연방정부가 42.5%, 주정부가 42.5% 그리고 지방정부가 15%를 배분받는 것과 같이 획일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일본의 지방소비세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소득세액의 일정부분을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고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배분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sup>4)</sup>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로 배분되는 규모를 일본의 지방소비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설정하였다. 즉 중앙정부에 배분되는 규모를 국세 소득세액의 75%로 하였으며, 광역자치단체로 배분되는 규모를 소득세액의 12.5%로 하였고,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되는 규모를 12.5%로 하였다. 징세지주의, 배분공식, 그리고 양자를 혼합한 절충안 등 세가지 모두 동일한 규모를 배분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이유는 배분비율을 동일하게 하여야 어떠한 도입형태가 우리나라에 적실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로는 배분비율이 정해지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의 배분기준은 징세지주의에 의한 대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소득세 부담비율(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세 소득할의 부담비율)을 기준으로 하였고, 배분공식에 의하여 배분할 경우에는 재정력환산지수와 역재정력배분지수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양자를 혼합한 절충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 소득세 부담비율(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세 소득할의 부담

4) 일본의 지방소비세는 소비세액의 25%, 소비세율로 환산할 경우 1%를 각 도·도·부·현의 소비(연간 소매판매액의 일정서비스)에 근거하여 배분하며, 각 도·도·부·현간 청산후의 금액의 1/2상당액을 인구와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시·정·촌에 교부하고 있다.

비율)에 의하여 50%를 배분하고 재정력환산지수와 역재정력배분지수에 의하여 50%를 배분하는 방식을 택하였다.<sup>5)</sup>

마지막으로는 각 대안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실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적실한 대안의 판정기준은 세수확충효과, 세수 이전효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불형평성 완화 효과, 소득과세 강화 효과 등에 근거하였다.

### 제3절 연구의 모형

본 연구는 국세의 세원을 공동이용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3가지 형태로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실한 지방소득세의 도입형태가 무엇인가를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충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의 모형에 입각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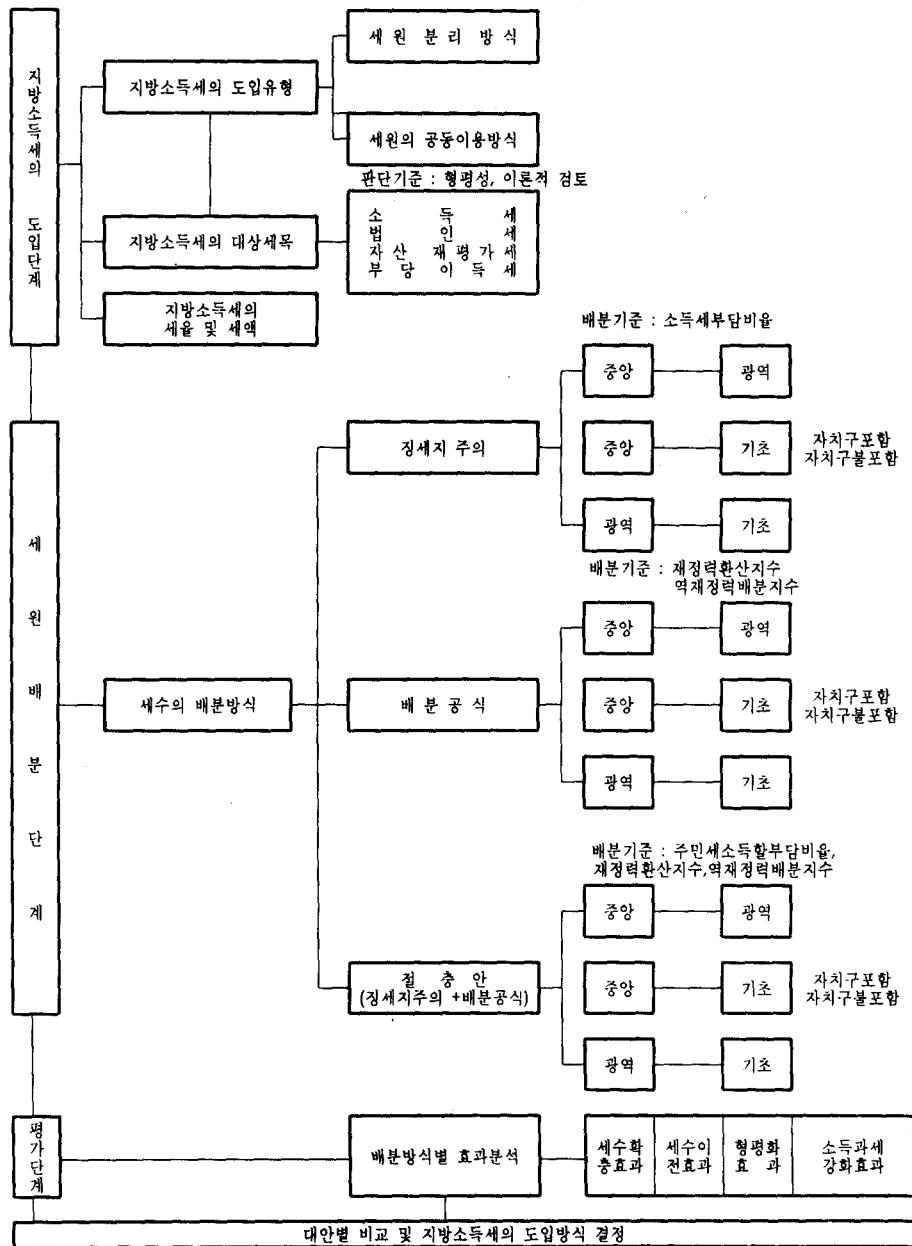
먼저 지방소득세의 도입단계에서는 지방소득세의 도입유형, 대상세목, 세율 및 세액을 살펴보았으며, 세원배분단계에서는 징세지주의, 배분 공식, 그리고 이 2가지 대안을 혼합한 절충안을 제시하였으며, 각 대안에 대한 세원배분방식을 살펴보았다. 배분기준은 징세지주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소득세 부담비율, 배분공식의 경우 재정력환산지수와 역재정력 배분지수이다. 그리고 절충안은 징세지주의에 입각하여 50%를 배분하고

---

5) 재정력지수는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누어 구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이다. 재정력환산지수와 역재정력배분지수는 재정력지수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적은 뜻이 배분되고 재정력지수가 낮은 지방자치 단체에게 많은 뜻이 배분될 수 있도록 환산 및 역산한 것을 말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제3장 제4절 1. 지방소득세의 배분방식을 참고하기 바람.

재정력환산지수와 역재정력배분지수에 의하여 50%를 배분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각각의 대안은 중앙정부가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경우,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경우, 그리고 중앙정부가 광역자치단체에만 배분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에 배분된 규모중 50%를 기초자치단체로 배분하는 방식을 검토하였다. 배분규모는 중앙정부 75%, 광역자치단체 12.5%, 기초자치단체 12.5%가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요약하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의 모형



## 제2장 지방소득세 도입의

### 필요성과 타당성

#### 제1절 지방소득세 도입의 필요성

##### 1.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부족재원확보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양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표 2-1> 참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점차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표 2-1>에 의하면 1991년부터 1996년사이에 2,549건의 사무가 지방이양사무로 검토되었으며, 이중에서 1,126건의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이러한 이양건수는 매년 188건의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양과정에서는 기능에 상응하는 재원이 양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능이양에 따른 중앙정부 재원의 지방이양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그림 2-1> 참조).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은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중앙정부는 수행하고 있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였으므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었던 재원만큼의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에 따른 중앙정부재원의 여유분만큼 지방자치단체로 그 재원이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이양받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여 이러한 재원을 이양받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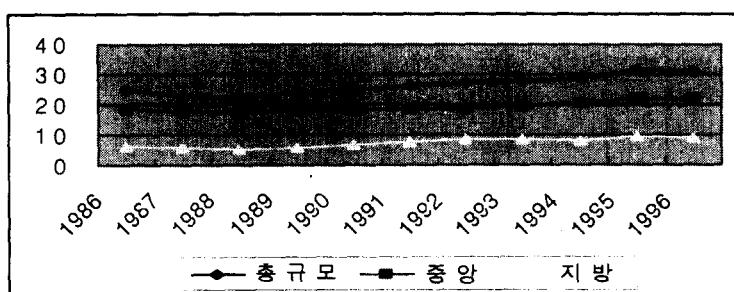
<표 2-1>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양 추세

(단위 : 건수)

연도	대상건수	이양동의	이양부동의
1991	398	241	157
1992	245	115	130
1993	185	116	69
1994	1,122	449	673
1995	284	123	161
1996	315	82	233
계	2,549	1,126	1,423

자료 : 오희환, “중앙·지방정부간 사무재배분,” 「지방자치」, 현대사회연구소, 1997. 2.

<그림 2-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



## 2. 지방세수감소의 보전대책

### 가. 경제상황의 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1997년말에 불어닥친 외환위기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는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경제성장률의 둔화로 실업율이 높아지고 금융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각각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원자재가격의 인상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인 여건은 정부의 세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여건의 변화는 정부의 세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정부의 세수감소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경제위기가 지방세수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보면 세수감소현상이 나타날 것이 명확해진다. 먼저 거래관련 지방세의 세수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부동산시장의 경우 기업의 도산과 국제통화기금 지원체제에 따른 산업구조조정 등과 관련하여 기업보유부동산의 매각부진, 건설관련사의 부도증가, 내수부족에 따른 주택공급 및 매입감소 등으로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동시감소가 예상된다. 둘째,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1,000만대를 넘어선 상태에서 국내시장에 대한 내수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건설·토목의 경우 경기침체와 원화환율의 인상에 따른 외국 기계장비도입기피로 기계장비 거래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선박·항공기 부문의 경우 1997년 사상 최대치의 조선수주를 기록하였으나 금년에는 저가수주로 채산성이 약화되고 수요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많은 이유들이 존재할 수 있으나 제시한 바와 같은 대표적인 몇가지의 사례를 통해서도 거래관련 취득세·등록세가 감소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득부문을 살펴보면 실업률의 증가, 기업의 감량경영에 따른 고용감축, 정리해고, 집단감원으로 소득감소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소득세의 감소현상을 초래하며 소득세액의 감소는 부가세형식의 주민세 소득세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인부도, 기업의 휴폐업 등으로 인한 법인수감소 및 경영악화에 따른 법인소득 감소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법인세의 감소를 초래하고, 따라서 여기에 부가하고 있는 주민세 법인세활의 감소가 예상된다.

다음으로는 소득감소에 따른 불요불급한 가계지출 억제 및 근검절약 분위기확산으로 담배소비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외국산 담배의 소비가 격감되어 전반적인 담배소비세 감소를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각종 인·허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면허 건수가 감소되고 이에 따라 면허세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인 내수부족으로 인하여 오락적이고 소비지향적인 현상이 줄어들게 되어 경주·마권세의 감소도 예상할 수 있다.

현재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열악하여 지방세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 지방자치단체의 62.4%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수의 감소는 지방자치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표 2-2> 참조). 따라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재정확충방법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그리고 이전재원에 의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으나, 지방재정의 수요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자치기반을 구축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재원이며 자주재원인 지방세에 의한 확충 방안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인 의사 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에 의한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sup>6)</sup>

<표 2-2> 지방세로서 인건비 미해결단체

구분	계	시	군	자치구
단체 수	234	71	94	69
미해결단체	146	18	81	47
구성비	62.4	25.4	86.2	68.1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1998년.

지방세에 의한 재정확충방법은 지방세체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과세의 비중을 높여야 하나 재산과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은 세율이나 과표의 인상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세율이나 과표의 인상은 많은 조세저항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 따라서 새로운 방식의 재정확충방법이 필요하다. 새로운 방식의 재정확충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소득세의 도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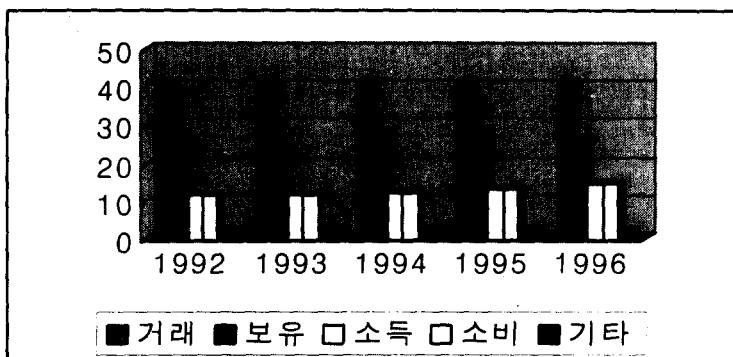
#### 나. 지방세개편논의에 따른 세수감소

우리나라의 지방세에서 재산관련 지방세는 전체세수의 약 7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2-2> 참조). 이 중에서 특히 거래과세인 취득·등록세가 전체세수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어떤 세목들보다도 그 비중이 높다. 이처럼 높은 거래세는 지방세제의 개편을 논할 때마

6) 곽재기, “자치단체 계층간 세원배분체계의 조정방안,”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8년 제1호. pp. 31-32.

다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세율인하의 압력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세목들이라고 볼 수 있다. 1998년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시작된 조세체계의 개편논의에서도 부동산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거래과세를 인하하고 보유과세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들이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그림 2-2> 우리나라 지방세수의 성격별 규모



그러나 취득·등록세의 명목 세율을 현재 5%에서 4%로 낮출 경우에 발생하는 세수의 감소효과는 비록 취득·등록세의 동결효과가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긴 해도 약 25%정도에 달한다. 이러한 세수감소분에 대한 보전은 보유과세의 인상(과표의 현실화을 인상 포함) 및 지방세에 부가되고 있는 국세부가세의 본세흡수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다.)

- 
- 7) 거래과세를 인하하고 보유과세를 강화함으로써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우리나라에서 경험적으로 검증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8) 현재 지방세에 부가되고 있는 국세부가세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2가지가 있다. 농특세는 취득세, 종합토지세, 경주·마권세에 부가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1998년 기준 2,376억원이고, 교육세는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경주·마권세, 담배소비세, 주민세에 부가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6,277억원이다. 이중에서 거래과세인 취득세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세체계에서 거래과세인 취득·등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래과세를 인하할 경우 보유과세의 강화를 통한 세수의 보전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sup>9)</sup>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세수보전차원 그리고 지방세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방소득세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의 지방세체계에서의 소득과세로는 주민세 소득할, 농지세, 사업소세 종업원할 등이 있다. 그러나 소득과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민세 소득할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액에 부가하는 부가세방식(piggy-backing)을 취하고 있어 부가세의 본세흡수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볼 경우 국세 소득세와 법인세에 흡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세체계내 소득과세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보다는 국세의 세원을 공동이용하여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 3. 지방세체계내 소득과세의 강화

#### 가. 재산과세를 통한 세수확충의 한계

우리나라의 지방세 세목을 재산과세(거래과세, 보유과세), 소득과세,

---

와 등록세에 부가되고 있는 국세부가세인 교육세와 농특세는 거래과세의 인하차원에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9) 보유과세의 강화를 통한 세수보전 방안은 주로 종합토지세 세율 또는 과표현실화율의 인상이다. 이는 재산관련세의 비중을 현재의 수준, 즉 재산과세부문이 지방세체계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정도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재산관련세를 현재의 수준에서 꼭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종합토지세는 그 자체가 지방세로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종합토지세가 앞으로 개편된다 하더라도 이로부터의 세수입이 취득·등록세의 인하시 발생하는 세수의 감소를 보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과세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2-3>과 같다.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과세에는 주민세 소득할, 농지세,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있으며, 소비과세에는 담배소비세, 경주·마권세, 도축세가 있다. 그리고 재산과세에는 거래세로서 취득세, 등록세가 있으며, 보유세로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재산할, 종합토지세, 자동차세가 있다. 기타로는 면허세, 지역개발세, 주민세 균등할이 있다.

<표 2-3> 우리나라 지방세체계의 성격별 분류

구 분		지 방 세
소득과세		주민세 소득할, 농지세, 사업소세 종업원할
소비과세		담배소비세, 경주·마권세, 도축세
재산과세	보유 과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재산할,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거래 과세	취득세, 등록세
기 타		면허세, 지역개발세, 주민세 균등할

살펴본 바와 같이 15개의 지방세목중 재산과세가 8개세목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방세수를 기준으로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의 비중을 살펴보면, <표 2-4>와 같다. <표 2-4>에 의하면 소득과세가 11.6%~11.8%, 소비과세가 16.6%~19.1%, 재산과세가 66.3%~69.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지방세체계는 재산과세위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4> 지방세수의 변화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1992	1993	1994	1995	1996
소 득 과 세		1,146,000 (11.9)	1,300,615 (11.9)	1,582,238 (12.0)	1,999,416 (13.1)	2,530,653 (14.7)
소 비 과 세		1,846,472 (19.1)	1,870,116 (17.1)	2,251,657 (17.1)	2,402,723 (15.7)	2,587,378 (15.0)
재산과세	보 유	2,525,287 (26.1)	2,952,170 (26.9)	3,600,889 (27.4)	4,181,942 (27.4)	4,606,813 (26.7)
	거 래	3,929,145 (40.6)	4,591,288 (41.9)	5,430,308 (41.3)	6,323,531 (41.4)	7,094,950 (41.1)
	소 계	6,454,432 (66.7)	7,543,458 (68.8)	9,031,197 (68.6)	10,505,474 (68.8)	11,701,762 (67.9)
기 타		223,019 (2.3)	250,614 (2.3)	297,068 (2.3)	356,279 (2.3)	425,655 (2.5)
총 계		9,669,923 (100.0)	10,964,804 (100.0)	13,162,160 (100.0)	15,263,892 (100.0)	17,245,449 (100.0)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따라서 지방세체계내에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한다면 지방세체계 내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재산과세의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산과세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산가액의 평가과정을 거쳐야 한다. 재산가액의 평가를 통한 과세표준의 인상 또는 과세표준의 현실화는 주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서 주민들의 많은 조세저항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산과세를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은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Bird는 지방소득세의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지방정부는 그들이 가장 쉽게 징수할 수 있는 세원, 즉 재산세와 그들의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

등과 같은 세원을 통해서만 세수를 확보해서는 않된다고 주장하면서, 재산세에 대한 주요한 대안으로서 지방소득세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sup>10)</sup>

#### 나. 지방세체계의 신장성 확보

지방세의 원칙중에 신장성이 있다. 신장성의 원칙은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제시된 지방세원칙으로서 충분한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정수는 우리나라 지방세의 주요세목에 대한 신장성을 디비시아지수(<식 4> 참조)를 통하여 분석하여 <표 2-5>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sup>11)</sup>

$$\log T_{(t)} = a + \mu \log Y_{(t)}$$

$$\log(D_n) = \log \frac{T_{(n)}}{T_{(0)}} - \sum_{t=1}^n \frac{T_{(t)} - T_{(t-1)}}{T_{(t)}} \times \frac{Y_{(t)}}{Y_{(t-1)}}$$

$D_n$  = 세수의 재량적 변화분을 나타내는 디비시아지수

$\sum_{t=1}^n (\dots) =$  분석기간중 국민소득이 증가하여 변동한  
자동적 세수증가분

$T_{(0)}, T_{(n)}$  = 기준연도와 n기의 조세수입  
 $t$ 와  $Y$  = 시간변수 및 설명변수인 소득수준

<식 4>

<표 2-5>의 분석결과를 보면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모든 수치가 1을 넘고 있어 지방세목의 대부분은 세수탄력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0) Bird, Richard M., "Threading the Fiscal Labyrinth: Some Issues in Fiscal Decentralization," *National Tax Journal*, Vol. XLVI, NO.2. 1993. pp. 211-215.

11) 박정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원조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7년 3월. pp. 89-92.

소득과세인 주민세는 경주마권세, 자동차세, 등록세, 취득세, 소방공동시설세 다음인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으며, 사업소세는 그보다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지방세의 신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체계내에 소득과세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서울시와 재정경제원의 요청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IMF재정자문단의 권고사항에도 들어있다. 재정자문단은 우리나라 지방세체계의 문제점으로 지방세가 소득과 관련하여 충분한 신장성을 갖지 못하고 재산세의 복잡한 체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up>12)</sup>

---

12) 서울시와 재정경제원의 요청으로 방한한 자문단은 중앙정부와 광역정부, 기초정부간의 기능분담을 투명하게 배분하고 협상의 메카니즘이 충분히 완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인식은 지방재정에 대한 권고에도 포함되어 있다. 동 권고안은 첫째, 체계적이고 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투명하고 합리적인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점, 둘째, 기능·재원배분과 권한 및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못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그리고 지방정부간 마찰조정의 메카니즘이 불충분하며 또한 재원배분이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수행비용과 공공재의 누출효과를 적절히 감안하지 못하고 있는 점, 셋째, 예산편성과 같이 이미 주어져 있는 재량권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한 점, 넷째, 지방세가 소득과 관련하여 충분한 신장성을 갖지 못하고 재산세의 복잡한 체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점, 다섯째,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한 배분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인구이동에 따른 재정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이전재원 총규모의 결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경기동향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박정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원조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7년 3월. pp. 15-16).

<표 2-5> 지방세 주요세목의 신장성

구분	신장성지표	
	부양성	탄력성
취 득 세	1.43	1.48
등 륙 세	1.66	1.67
면 허 세	1.01	1.01
주 민 세	1.35	1.40
재 산 세	1.36	1.32
담배소비세	0.62	0.67
자동차 세	1.69	1.70
마 권 세	2.16	2.01
도시계획세	1.31	1.30
공동시설세	1.46	1.46
사업소 세	1.24	1.30

자료 : 박정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세원조정에 관한 연구」, 한국 조세연구원 1997년, pp. 90~91.

또한 Bird 역시 지방세의 목적이 지역주민에게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방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소득탄력적이라면 지방소득세를 만드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에 의하면 이러한 지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국세의 소득세에 부가되어 부과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방세의 규모를 확장시키고자 하거나 국가로부터의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세 소득세에 부가하는 개인소득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3)</sup>

#### 다. 지역의 소득증가와 지방세체계의 연계장치

지방세와 지역경제의 유기적 연계 측면에서 지방소득세의 도입이유

13) Bird, Richard M., Threading the Fiscal Labyrinth: Some Issues in Fiscal Decentralization, *National Tax Journal*, Vol. XLVI, NO.2, 1993, pp. 214-215.

를 찾을 수 있다. 오연천에 의하면 현행 지방세체계내에서는 민간기업의 지역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노력의 성과가 대부분 국세수입으로 귀속되고 있어 지방세수입의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한다. 지역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증대효과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결과에 의하면 제조업의 경우 국세에 대한 세수증대효과가 지방 세에 비해 4.13배나 높고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국세에 대한 세수증대효과가 지방세의 3.27배에 이르고 있다. 또한 도소매 소비자용품업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의 활성화가 오히려 지방세수입과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sup>14)</sup> 이와 같이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지방세수입으로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로 연계되고 있어 편익과 비용부담이 일치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인한 소득의 증대에 상응하는 세원들을 지방세체계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기업활동과 관련된 소득 및 이윤과 세 관련세원을 지방세체계에 흡수 보강할 수 있는 지방세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지방소득세의 도입이다.

## 제2절 지방소득세 도입의 타당성

### 1. 이론적 타당성

#### 가. 세출수요와 세입수단의 일치

Musgrave와<sup>15)</sup> King<sup>16)</sup> 등은 세원배분의 기준으로서 세출수요와 세

---

14) 오연천, “21세기 지방세의 역할과 전망,”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8년 제1호. pp. 19. 진영환, 산업기지개발의 지역파급효과분석, 국토개발연구원, 1989년. 12월.

입수단의 일치라는 측면과 균등한 조세부담과 징세비용의 최소원칙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배분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누진적인 재분배목적의 조세는 중앙정부가 담당하여야 한다. 둘째, 경기안정화 목적에 적합한 조세는 중앙정부에 할당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세는 경기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적게 받는 세목이 바람직하다. 셋째, 조세의 과표가 지역적으로 심하게 편재되어 있는 세목은 중앙정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이동성이 있는 세원은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것보다 더 낫다. 다섯째, 정주(residence)에 관련된 세원, 즉 최종적인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단계에 부과되는 매상세(sales tax)나 물품세 등은 지방자치단체, 특히 시·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전적으로 이동성이 없는 요소에 대한 과세는 기초단위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응의세와 사용료 등은 모든 단위의 정부에 적합할 수 있다.<sup>17)</sup>

이러한 원칙에 입각할 경우 정부간 세원의 배분을 <표 2-6>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2-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세는 지방세로서 가능하다.

- 
- 15) Musgrave, Richard A., "Who should Tax, Where and What," in C.E.McLure, Jr.(ed.), *Tax Assignment in Federal Countries*, Canberra: Centre for Research on Federal Financial Relation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983.
  - 16) King, David, *Fiscal Tiers: The Economics of Multi-Level Government*.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84.
  - 17) 박정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3년, pp. 56-59.

그외 McLure는 Gordon, Brennan, Buchanan, Musgrave, Mathews 등의 견해를 종합하여 세원배분의 기준으로서 다섯가지 결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중에는 “개인소득세, 소매매상세와 기타 간접세와 같은 주거기준세원이 부가가치세, 법인소득세와 같은 원천기준세원보다 지방자치단체의 배분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소득과세의 지방세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McLure, Charles(ed.), *Tax Assignment in Federal Countries*, Australia: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Press, 1993.).

<표 2-6> 세출수요와 세입수단간 일치에 의한 정부간 세원배분모형

구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세목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자원세	소득세, 소비세 자원세	재산세 근로소득세

## 나. 공공재의 편익범위

공공재의 편익범위를 기준으로 할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은 <표 2-7>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sup>18)</sup> 먼저 공공재는 편익을 기준으로 할 때, 간접편익인 공공재와 직접편익인 공공재로 구분할 수 있다. 간접편익인 공공재에는 도로, 항만 국방, 치안 등의 공공재가 있으며, 직접편익의 공공재에는 상수도, 인감증명, 전화, 전기, 오물수거 등의 공공재가 있다. 이러한 직접편익의 공공재와 간접편익의 공공재의 비용부담은 다시 소비재형 공공재와 중간재형 공공재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재의 편익구분에 의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배분하면 <표 2-7>과 같다.

<표 2-7>에 의하면 소비재형 공공재이면서 간접적으로 편익을 미치는 공공재중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개인소득세이며,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간재형 공공재이면서 간접적으로 편익을 미치는 공공재중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소득형 기업과세와 소득형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리고 직접편익의 공공재는 목적세와 사용세 또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합하며, 과세주체는 중앙정부이든 지방자치단체이든 별 다른 문제가 없다.

18) 김이태,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재배분,” 「지방재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84년. 3월호. 김대영, 「지방소득과세의 확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년 10월. pp. 45-47.

<표 2-7> 공공재의 편익구분에 의한 정부간 세원배분모형

구분	공공재						
	소비재형공공재			중간재형공공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간접편익 의 공 공 재		광역	기초		광역	기초	
간접편익 의 공 공 재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재산세	제조 · 도매 단계매상세	소매단계 매 상 세	재산세형 기업과세	
	사치성소비세	개인소득세 비 혜 분			소득세형 기업과세	소득세형부가가치세	
직접편익 의 공 공 재	목적세						
	사용세, 수수료(독립채산에 의한 것)						

자료 : 김이태, “국세와 지방세간 세원재배분,” 「지방재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84년 3월호., 김대영, 「지방소득과세의 확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년 10월. pp. 46.

살펴본 바와 같이 편익범위를 기준으로 한 구분에서도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무리가 없다는 사실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다. 지방세원칙과의 부합여부

조세는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과세의 정도나 방법은 주민의 생활이나 경제사회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세를 어떻게 부과·징수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가 하는 세제 또는 징세상의 원리·원칙을 조세의 법칙이라고 한다.<sup>19)</sup> 이러한 조세제도는

19) 내무부, 「외국의 지방세제도」 1991년. pp. 11~12.

각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 등을 배경으로 하여 성립된 역사적 산물이다.

지방세도 조세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이기 때문에 몇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일반적 조세원칙과 다른 관점에 근거하여 지방세로서 필요한 독자적인 원칙이 있다.

지방세의 본래적인 특성 및 그 특성으로부터 도출되는 지방세의 원칙은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행정서비스의 재원이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에는 안정성의 원칙과 용익성의 원칙이 해당된다. 또한 과세단체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보편성의 원칙이 이에 해당된다. 과세주체가 독자의 자치권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여기에는 부담분임의 원칙이 포함된다. 이러한 원칙들은 특히 지방세의 특색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지방세는 이러한 원칙만을 만족시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조세의 원칙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원칙은 개별 세목에서 모두 만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 각 세목의 복합구조인 지방세체계 전체로서 또는 지방세의 구조 전체로서 만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방세원칙에 입각하여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 등을 평가한 결과는 <표 2-8>과 같다. <표 2-8>에 의하면 지방세로서 가장 명확한 것은 재산과세이며, 소득과세(개인소득세)는 신축성과 보편성의 원칙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자치자주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세원임을 알 수 있다.

<표 2-8> 지방세원칙에 입각한 세원별 분석결과

구분	세수			공평성 용익성	중립성	남세협력	자치 자주성
	안정성	신축성	보편성				
개인소득과세	△	○	○	△	△	△	○
기업소득과세	×	○	×	×	×	△	×
소비과세	○	△	○	×	○	○	×
재산과세	○	△	○	○	△	○	○

자료 : 이필우, “지방소득과세제의 발전방향,”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6년 제3호. pp.41.

따라서 소득과세가 지방세원화 되는 것에는 별다른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대 세원배분이론에 의하면 지방세는 재산과세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과거의 이론과는 달리 소득과세와 소비과세도 지방세원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 2. 현실적 타당성

### 가. 지방소득세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그 형태에 따라서는 국민의 조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즉 세율인상을 통하여 지방소득세의 재원을 확보한다면, 국민의 조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조세부담이 증가할 경우 다음과 같은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Feldstein에 의하면 개인 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할 경우 가용재원의 감소로 인하여 소비지출이 감소하며, 따라서 GDP가 감소한다고 한다. 결국 이러한 GDP의 감소는 세수의 감소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득세율의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자본공급의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역시 과세가능한 노동과 자본의 공급을 감소시키게 되어 세수의 감소가 초래될 수 있다. 노동의 공급은 노동력의 참여와 평균 노동시간 뿐만 아니라 직업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반응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소득세율의 인상은 개인의 보상형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노동에 대한 높은 한계세율은 과세되지 않는 부가이익(untaxed fringe benefits)으로 대체를 유도하며, 과세가능한 소득관련업무에 대해서는 작업조건을 살피게 한다. 이러한 변화의 정도는 소득 뿐만 아니라 대체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 이유는 순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부가이익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소시장과 보상형태외에 높은 한계세율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에 더 많은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과세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20)</sup>

반면 Kaplow<sup>21)</sup>는 공공재의 최적공급과 소득과세의 교란비용(distortionary cost)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소득세율의 변화는 공공재의 편익으로부터 상쇄될 것이기 때문에 그의 노동공급과 효용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도 하였으나 경험적인 분석결과에 의하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sup>22)</sup>

20) Feldstein, Martin, How Big Should Government Be, *National Tax Journal*, Vol. L, NO.2, 1997, June, pp. 200~201.

21) Kaplow, Louis, The Optimal Supply of Public Goods and The Distortionary Cost of Taxation, *National Tax Journal*, Vol. XLIX, NO.4, December, 1996.

22) 대표적인 연구로는 Browning & Liu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또한 Kaplow의 연구결과를 반박하기도 하였다(Browning, Edgar K & Liu, Liqun, The Optimal Supply of Public Goods and The Distortionary Cost of Taxation: Comment, *National Tax Journal*,

소득세율의 인상은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효과를 미치게 된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을 인상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준거기준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주요 외국의 소득세율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및 법인세의 최고세율과 주요국의 소득세 및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비교하면 <표 2-9>와 같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소득세의 세율이 0.4%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미국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소득세부담이 평균적으로 연방정부 소득세부담의 1/3수준이어서 전체적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50%를 초과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10%이상이나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소득세 수준이 외국에 비하여 낮다고 볼 수 있다. 이 기준에 의할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를 10%정도 인상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표 2-9> 주요국의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1995년)

구분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한국
소득세	39.6	50.0	56.8	53.0	40.0
법인세	35.0	37.5	33.0	45.3	28.0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 1996년.

#### 나. 지방세체계내 소득과세와의 관계

현재 지방세체계내의 소득과세로는 <표 2-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세 소득할, 농지세, 사업소세 종업원할 등이 있다. 이러한 환경적 여건하에서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지방세 소득과세와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소득세의 도입형태가 결정되어야 한다. 즉 지방소득세를 지방세목화할 것인지 아니면 재정조정재원으로 사용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지방재정조정재원으로서 지방소득세의 재원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지방세체계내 소득과세와의 관계를 검토할 실익이 없으며 다음에서 살펴볼 지방교부세와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소득세를 지방세목화할 경우에는 지방세체계내 소득과세와의 관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지방소득세를 도입한 후 지방세체계내 소득과세, 즉 주민세 소득할, 사업소세 종업원할, 농지세를 통합하여 지방소득세원화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sup>23)</sup>

또 하나의 고려사항으로는 조세체계의 개편논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조세체계개편논의에 의하면 현재 부가세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세의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이 지방세에 흡수되거나 폐지되고, 국세에 부가하고 있는 주민세 소득할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은 더욱 더 열악해질 수 밖에 없다. 1996년 현재 주민세 소득할은 약 2조 2,363억원으로 전체 지방세수의 12.9%를 차지하고 있다.

주민세 소득할은 현재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의 관계에서는 특별시·광역시세이며, 도와 시·군과의 관계에서는 시·군세이다. 따라서 주민세 소득할이 폐지되면 특별시, 광역시의 세수와 시·군의 세수가 감소한다. 특별시·광역시세로서 주민세 소득할은 약 1조 3,308억원이며,

23) 현재 주민세 소득할의 경우 도와 시·군 간의 관계에서는 시·군세이며,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와의 관계에서는 특별시·광역시세이다. 또한 농지세와 사업소세 종업원할의 경우에는 시·군·구세이다. 지방소득세에 통합한다고 할 경우 과세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제4장 제5절 2. 대안의 선택을 참조하기 바람.

시·군세로서 주민세 소득률은 약 9,055억원이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로서 이러한 감소분을 보전한다고 할 때 특별시·광역시와 시·군세를 보전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지방소득세의 배분시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로 배분하는 규모중 자치구의 배분규모를 줄이고 특별시·광역시의 배분규모를 늘리는 것이며, 도와 시·군의 관계에서는 도의 배분규모를 줄이고 시·군의 배분규모를 늘리는 것이다.

#### 다. 지방교부세와의 관계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를 시정하고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때 교부세와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즉 지방소득세의 도입형태를 지방세목화하지 않고 지방재정조정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지방교부세와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만 한다. 또한 지방소득세를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에 의하여 도입한다고 하면 지방소득세의 재원으로서 일정부분이 이양될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13.27%가 이전되어야 함으로 충복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득세의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3.27%를 재원으로 하여 지방재정수요액과 지방재정수입액을 계산하여 그 부족분의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소득과세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원을 보

전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성격이 다를 수 있다. 특히 지방소득세는 사전조정제도로서 활용할 수 있어 지방교부세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지방교부세는 배분공식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형평화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배분공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방소득세를 사전조정제도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독일을 들 수 있다. 현재 독일에서는 수직적 재정조정과 수평적 재정조정을 위한 제도를 운영중에 있다. 먼저 수직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수평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세재원중 부가가치세의 배분방식을 소득세와 법인세의 배분방식과 구별하여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부가가치세의 배분방식을 보면, 주정부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입액의 75%는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하고 나머지 25%는 사전재정조정제도로서 활용하고 있다. 또한 2차적으로 재정력이 모든 주의 평균치 이하에 있는 주의 경우 평균치 이상인 주가 제공하는 재정조정기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재정조정교부금을 받게 된다. 그리고 연방정부는 부가가치세수입의 2%를 재원으로 하여 재정력이 취약한 주에 연방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다. 즉 특정 주의 특별재정수요를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주와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제고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때의 재원은 공동세의 주정부 몫과 주정부의 일정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독일의 제도들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적인 재정조정제도로서 공동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에서 사전재정조정제도로서 지방소득세를 운영하는 것 역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재정의 열악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으나 이 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확보이므로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여 과세자주권을 확보한 후 보완대책으로서 지방교부세율의 인상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세 소득세의 재원을 지방소득세의 재원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중복해서 활용한다는 지적이 일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여러 가지의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나 가장 단순한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소득세의 재원을 지방교부세의 대상재원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감소되어 더 적은 배분액을 받게 되나 지방소득세에 의하여 더 많은 규모를 배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론적·현실적 여건하에서 많은 국가들은 지방세 체계 내에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표 2-10>, <표 2-11> 참조). 각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방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는 스위스는 소득과세가 주정부 세입의 77.6%, 지방정부 세입의 86.9%, 독일은 주정부 세입의 56.6%, 지방정부 세입의 81.1%,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경우 주정부 세입의 50.5%,

지방정부 세입의 40.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단일형 국가인 핀란드는 지방정부의 세입중 소득과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95.2%, 덴마크는 92.2%, 아이슬란드는 76.8%, 그리고 우리와 유사한 지방세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도 57.5%를 소득과세에 의하여 확보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국가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은 재산과세의 비중이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재산과세가 지방세수입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표 2-10> 주·지방정부의 세원별 조세수입비율(연방형국가)

(단위 : %)

구분	호주		오 스 트리아		캐나다		독일 <sup>1)</sup>		스위스		미국	
	주	지방	주	지방	주	지방	주	지방	주	지방	주	지방
소득세	1975	-	-	44.2	38.9	43.6	-	62.8	69.4	77.7	86.5	31.6 4.3
	1985	-	-	52.9	39.4	44.9	-	62.9	80.9	76.9	87.1	37.7 5.6
	1993	-	-	50.5	40.9	50.4	-	56.6	81.1	77.6	86.9	38.6 5.7
급여 소득세	1975	35.3	-	-	11.5	-	-	-	9.0	-	-	-
	1985	31.3	-	4.6	11.0	-	-	-	-	-	-	-
	1993	24.0	-	-	11.3	-	-	-	-	-	-	-
재산세	1975	26.6	100.0	1.8	11.2	2.3	88.3	6.2	20.3	14.3	13.2	4.1 81.9
	1985	25.7	99.6	1.0	10.1	4.0	84.8	5.4	18.1	15.5	12.6	3.7 74.2
	1993	31.5	99.5	0.9	9.6	5.9	85.1	6.0	17.8	15.4	12.7	3.9 75.4
일반 소비세	1975	-	-	33.9	19.7	19.6	0.2	21.8	-	-	-	30.8 7.1
	1985	-	-	29.7	22.7	20.3	0.2	24.8	-	-	-	32.3 10.9
	1993	-	-	34.5	20.5	22.9	0.2	30.2	-	-	-	32.5 10.2
개별 소비세	1975	16.1	-	13.5	14.1	16.8	0.2	2.8	0.5	1.5	0.2	23.6 3.6
	1985	16.6	-	5.1	10.7	15.5	0.2	2.1	0.4	1.3	0.2	16.7 4.7
	1993	16.1	-	5.6	9.6	14.8	-	1.9	0.5	1.0	0.4	16.9 4.6
수익자 부담세	1975	22.0	-	4.4	1.0	17.8	2.1	6.4	0.4	6.4	0.1	10.0 3.1
	1985	26.4	0.4	3.8	1.5	15.4	1.3	4.8	0.4	6.4	0.1	9.7 4.3
	1993	28.5	0.5	4.3	2.0	6.0	1.2	5.3	0.3	5.9	0.1	8.0 4.2
기타2)	1975	-	-	2.2	3.7	-	9.2	-	0.4	-	-	-
	1985	-	-	2.8	4.5	-	13.6	-	0.2	-	-	-
	1993	-	-	4.3	6.1	-	13.5	-	0.3	-	-	-

주 : 1) 유럽연합에 대한 납부금은 제외하였음.

2) 주·지방정부에 속하는 사회보장기금(오스트리아)과 사업상 발생하는  
임여세 포함(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of OECD Member Countries 1965-1994,  
1995."

<표 2-11> 지방정부의 세원별 조세수입비율(단일형국가)

(단위 : %)

구 분	덴마크	핀란드	아 이 슬란드	이탈 리아	일 본	룩 셈 부르크	노르 웨이	스웨덴	한국
소득세	1975	86.4	99.8	65.1	80.0	54.8	76.7	91.9	99.6
	1985	93.5	99.0	63.5	66.7	58.0	84.1	90.2	99.7
	1993	92.1	95.2	76.8	30.1	57.5	94.0	87.9	99.6 11.6
개 인 소득세	1975	84.8	91.5	62.0	48.0	26.3	37.2	86.3	91.5
	1985	90.9	90.5	55.3	16.0	28.9	-	83.4	98.3
	1993	90.6	88.9	74.5	2.4	33.8	-	81.4	99.6 6.2
법 인 소득세	1975	1.6	8.3	3.1	32.0	28.5	39.5	5.7	8.2
	1985	2.5	8.5	8.2	10.7	29.2	84.1	6.8	1.4
	1993	1.5	6.3	2.3	1.6	23.8	94.0	6.6	- 5.4
재산세	1975	13.2	-	15.3	17.5	24.9	4.9	5.2	-
	1985	6.4	1.0	15.3	-	23.7	7.3	6.4	-
	1993	7.8	4.7	17.3	23.0	28.3	5.5	8.8	- 68.3
일 반 소비세	1975	-	-	-	-	-	9.0	-	-
	1985	-	-	-	-	-	-	-	-
	1993	-	-	-	-	-	9.0	-	-
개 별 소비세	1975	0.2	0.1	7.9	-	15.1	0.2	-	0.3
	1985	0.1	-	5.5	10.2	12.4	0.4	-	0.2
	1993	0.1	-	5.9	8.8	8.4	0.4	-	0.4 16.9
수익자 부담세	1975	0.1	0.1	-	2.5	4.9	1.1	-	0.1
	1985	-	0.1	-	0.3	4.8	-	0.5	0.1
	1993	-	0.1	-	19.7	4.7	-	0.6	- 1.7
기 타	1975	-	-	11.7	-	0.2	8.0	2.9	-
	1985	-	-	15.7	22.7	1.0	8.2	2.9	-
	1993	-	-	-	18.5	1.1	-	2.6	- 1.3.

주: 순부유세(노르웨이), 상속세(핀란드)와 사업상 발생하는 잉여세(덴마크·이탈리아·노르웨이) 포함. 유럽연합에 대한 납부금은 제외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of OECD Member Countries 1965-1994', 1995년.

# 제3장 지방소득세의 도입방안

## 제1절 지방소득세의 도입유형

### 1. 지방소득세 도입유형의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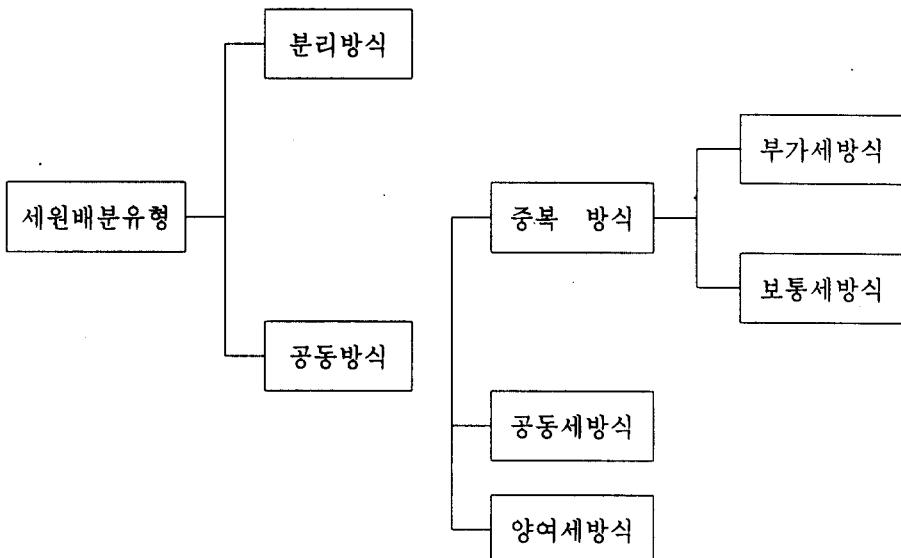
지방소득세의 도입유형은 세원의 배분유형을 살펴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즉, 이론적으로는 세원의 배분유형별로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원의 배분유형을 살펴보면, <그림 3-1>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그림 3-1>에서 세원의 분리방식(tax base separation system)이란 동일한 세원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시에 과세권을 가질 수 없으며, 다른 세원에 대해서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독립된 과세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세원분리방식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이용하고 있다.

세원의 공동이용방식(tax base sharing system)은 동일한 세원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세원공동이용방식은 정부계층간 세원의 편재를 시정하기 위하여 많은 나라에서 이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에는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복방식(tax overlapping), 공동세방식(tax sharing), 양여세방식(tax transfer) 등이 있으며, 중복방식에는 다시 부가세방식과 보통세방식이 있

다. 중복방식중 부가세방식은 중앙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과표에 지방정부가 부가(piggy backing)하여 일정세율을 징수하는 방식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1966년 국세부가세폐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그동안 부가되어 오던 국세부가세 6개세목이 폐지되었고 1976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부가되어오던 도세부가세 19개세목이 모두 폐지되었다. 현재는 유일하게 주민세 소득할 만이 국세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지방세 농지세에 부가하여 징수되고 있다.<sup>24)</sup>

<그림 3-1> 세원의 배분유형



자료 : 박정수, 「공동세제도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3년, pp. 66-67.

24) 반대로 국세가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사례도 있다. 국세중 교육세는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경주·마권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등에 부가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종합토지세, 경주·마권세에 부가하여 징수하고 있다.

종복방식중 보통세방식은 과세표준의 통일방식을 의미하며 중앙과 지방이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 지방세의 세율은 지방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지만 과세표준은 중앙정부의 과세표준과 일치 시키는 것이다.

공동세방식은 중앙과 지방이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통일된 방식으로 과세한 후 중앙과 지방간의 일정한 합의기준에 입각하여 배분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양여세방식은 특정 지방정부에서 징수된 국세의 수입중 일부를 징세지주의에 입각하여 당해 지방정부에 양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sup>25)</sup>

## 2. 지방소득세 도입유형의 선택

세원의 분리방식과 공동이용방식중 어느 유형을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것인가를 판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세원배분유형별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원의 분리방식은 지방정부가 세율체계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일부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을 결정할 권한도 가진다. 이러한 방식은 지방 정부가 그들의 조세가격(Tax Prices)을 선택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산물을 낳을 수 있으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진다.<sup>26)</sup>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중 종복과세방세방식은 부가세방식과 보통세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지방정부의 징세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세무행정이 간편해진다는 장점과 지방정부가

25) 박정수, 「공동세제도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3년. pp. 66~67.

26) Bahl, Roy W. "The Decentralization of Government," 광복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재정 50년의 회고와 전망」 1995년 10월. pp. 49~50.

독자적으로 과세하고자 하나 과세가 어려울 경우에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대표적인 부가세방식의 사례로는 우리나라의 주민세 소득할을 들 수 있으며, 보통세방식은 미국의 소득세를 들 수 있다.

공동세방식과 양여세방식은 세원분리방식에 의하여 과세할 경우 지방정부간 재정력의 격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를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 활용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공동세의 경우 독일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영업세를 들 수 있으며, 양여세방식은 일본의 지방도로세, 석유가스세, 자동차중량세, 항공기연료세, 특별톤세, 소비세 등을 들 수 있다.

세원배분유형별 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느 하나의 배분유형이 완벽하지는 않다. 어느 하나의 배분유형이 완벽하여 모든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면 세원조정은 훨씬 쉬워질 것이나 각 배분유형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으로 인하여 어느 하나의 배분유형만을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예들은 많은 나라에서 발견되고 있으나 대표적인 사례로서 일본을 들 수 있다. 일본은 「샤우프 사절단 일본세제 보고서」(이하 샤우프 권고)를 지방세체계형성의 토대로 삼았다. 샤우프 권고에서는 일본지방재정이 안고 있는 문제를 크게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방독립세주의를 지향하는 가운데 중앙정부, 도·도·부·현, 시·정·촌간에 세원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동 권고에 따라 전후 일본에서는 부가세중심의 지방세제를 독립세원칙의 지방세제로 개편하였다. 그러나 그후 지방세제의 변화과정에서 세원분리방식과 독립세원칙은 점차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sup>27)</sup>

이러한 제측면들을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의 지방소득세는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에 의하여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sup>28)</sup> 그 이유는

i) 분리방식과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통해서 확보될 수 있다. 먼저 세원의 분리방식을 고수할 경우 중앙정부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대규모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와 같이 세수신장성 등이 낮은 세목을 가지고 있어 재정확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을 택할 경우 그러한 위험성은 작아진다.

ii)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정부가 대부분의 세원을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일부의 세목을 할당하는 경우 분리방식을 고수할 때 보다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을 택하면 초과부담(excess burden)을 최소화하면서 지방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분리방식보다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이 효율성 측면에서 우월할 수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공공재의 추가적인 공급을 위하여 추가적인 세수확보( $\Delta R$ )가 필요할 경우를 상정해보자. 현재 국세에는 소득세(I), 부가가치세(V), 특별소비세(S), 지방세에는 취득세(A), 재산세(P)가 배분되어 있다고 하자.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관광세(T)와 광고세(AD)와 같은 신세원에 눈을 돌리게 된다. 분리방식에 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할 수 있는 제약조건은 A, P, T, AD이나,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I, V, S, A, P, T, AD 등이 된다. 따라서 제약조건이 더 많은 분리방식보다는 제약조건이 더 적은 세원의 공동이용

27) 곽채기, “자치단체 계층간 세원배분체계의 조정방안,”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8년 제1호. pp. 34.

28) 이 부분에서는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중 어떤 형태가 타당한지를 결정하여야 하나 이론적인 접근에 의하여 결정하기 보다는 실제적인 효과까지도 고려하여 그 형태를 판단하기 위하여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방식이 초과부담을 더 적게 발생시킬 것이다. 물론 현재의 조세체계를 유지한 채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의 세원을 공동이용할 경우에는 현재 부과되고 있는 국세 세목의 조세부담수준과 추가분에 대한 부담수준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sup>29)</sup>

iii)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지방소득세도입의 반대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소득세의 지방세 부적합성을 주장하는 논거는 첫째, 조세수출이나 세원의 이동성 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소득세의 과세행정이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고 있어 지방단위의 부과가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소득세의 경우 소득재분배정책과 경제안정화정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좋은 세목인데 이를 지방소득세로 할 경우 과연 지방정부가 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방소득세를 분리과 세형식으로 독립된 지방세목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국세의 세원을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sup>30)</sup> 따라서 Bird와 같은 학자는 재산세의 보완 대책으로서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에 입각하여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sup>31)</sup>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에 의한 지방소득세의 도입이 결정되었으므로 다음에는 국세 세목중 무엇을 공동세원으로 이용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29) 김정훈, 「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2.

30) Bird, "Threading the Fiscal Labyrinth: Some Issues in Fiscal Decentralization," *National Tax Journal*, 1993. June Volume XLVI, No. 2. pp. 215.

31) 자세한 내용은 제3장 제4절 지방소득세의 배분방식 및 배분결과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기 바람.

## 제2절 지방소득세의 공동이용세원

### 1. 지방소득세 대상세목의 제시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에 의하여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것은 어떠한 세원을 공동이용할 것이나를 결정하는 것이다. 지방소득세의 도입이므로 소득과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세의 소득과세는 소득세, 법인세,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등 4개 세목이 있다. 이러한 4개의 세목이 모두 지방소득세의 공동이용 세원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현재 국세 소득과세의 세수를 제시한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세 소득과세중 소득세가 전체의 60.7%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인세가 38.4%를 차지하고 있고 자산재평가세는 전체의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당이득세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자산재 평가세와 부당이득세를 지방소득세의 공동이용세원으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액수가 크지 않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만 가지고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동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 세목들이 공동이용대상세목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있어야 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세수가 형평하게 배분되어 있어야 한다는 지방세의 보편성원칙을 판단기준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불형평성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지표로서 현재 지방세목의 불형평성을 분석하여 각각에 대한 분석결과를 상호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가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를

만드는데 있기 때문에 가급적 기존의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소득세를 도입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표 3-1> 국세 소득과세의 세목별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2	1993	1994	1995	1996
소 득 세	8,008,357 (57.1)	9,462,850 (61.4)	11,207,767 (60.0)	13,618,190 (60.9)	14,766,882 (60.7)
법 인 세	5,941,051 (42.4)	5,862,329 (38.0)	7,387,568 (39.5)	8,662,631 (38.7)	9,356,104 (38.4)
자산재평가세	68,876 (0.5)	98,505 (0.6)	86,406 (0.5)	89,105 (0.4)	216,674 (0.9)
부당 이득세	0 (0.0)	0 (0.0)	0 (0.0)	1 (0.0)	0 (0.0)
계	14,018,284 (100.0)	15,423,684 (100.0)	18,681,741 (100.0)	22,369,927 (100.0)	24,339,660 (100.0)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2. 지방소득세 대상세목의 선택

### 가. 국세소득과세의 지방자치단체별 규모

소득세와 법인세의 불형평성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러나 1995년이전의 데이터는 세무서별로 집계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분석기간을 1995년 이전으로 확장하는 것은 어렵다.

<표 3-2>는 지방자치단체별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담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표 3-2> 국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지방자치단체별 부담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1995년		1996년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
서울	6,827,808	5,977,381	7,361,639	6,167,806
부산	1,108,947	318,544	1,182,321	430,574
대구	665,989	155,344	672,424	161,213
인천	465,669	161,473	658,599	254,134
광주	303,394	76,125	295,767	61,634
대전	279,662	126,965	305,681	230,608
경기	1,463,574	949,079	1,476,495	1,049,423
강원	212,927	42,633	231,046	32,603
충북	234,392	164,434	251,261	191,362
충남	234,670	62,257	264,414	64,330
전북	276,614	76,152	289,930	63,183
전남	193,181	33,286	256,626	50,506
경북	488,602	210,567	534,143	321,106
경남	765,312	287,320	879,455	261,498
제주	97,449	21,071	107,081	16,124
계	13,618,190	8,662,631	14,766,882	9,356,104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나. 국세소득과세에 대한 형평성분석 결과

국세 소득과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배분결과를 토대로 변이계수, Atkinson지수, Entropy지수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별 불형평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구변수에 의하여 불형평성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1인당 부담비율을 구한 후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3-3>과 같다.

<표 3-3>에 의하면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불형평

성이 점차로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별로 소득간 격차가 줄어든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비교할 경우 소득세가 법인세에 비하여 훨씬 더 형평한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표 3-3> 국세 소득세와 법인세의 불형평성 분석결과

구분	변이계수	Atkinson지수				Entropy지수	
		0.5	1.5	2.0	3.0		
소득세	1995	0.5760589	0.0570452	0.1422087	0.1754768	0.2320550	0.0549242
	1996	0.5758374	0.0552118	0.1335284	0.1619728	0.2065794	0.0538387
법인세	1995	1.2998168	0.1990896	0.4189127	0.4881036	0.5922991	0.2108973
	1996	1.2173153	0.2056971	0.4570383	0.5305823	0.6202298	0.2063368

소득세와 법인세의 불형평성을 지방세의 개별세목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불형평성을 보이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방세의 각 세목에 대한 불형평성을 측정한 결과는 <표 3-4>와 같다.

<표 3-4>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간 가장 형평한 세목은 담배소비세이며 가장 불형평한 것은 경주마권세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국세의 소득세, 법인세의 분석결과와 비교하면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형평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의 경우 지방세목중 도축세와 유사한 불형평성정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불형평성을 심화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sup>32)</sup>

32) 불형평성의 심화문제는 지방소득세의 도입에서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배분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이러한 불형평성의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제3장 제4절 지방소득세의 배분방식 및 배분결과, 제4장 제3절 형평화효과를 참고하기 바람.

<표 3-4> 지방세의 세목별 불형평성 분석결과(1996년)

구분	변이계수	Atkinson지수				Entropy지수
		0.5	1.5	2.0	3.0	
담배소비세	0.1055814	0.0028390	0.0086378	0.0115972	0.0176314	0.0024484
자동차 세	0.1525119	0.0060194	0.0185432	0.0250470	0.0385217	0.0051588
취득세	0.1717556	0.0077511	0.0241599	0.0328125	0.0509237	0.0066040
공동시설세	0.1817313	0.0079180	0.0231481	0.0304401	0.0443410	0.0069601
재산세	0.1892204	0.0086735	0.0255481	0.0337204	0.0494660	0.0075957
등록세	0.2495286	0.0149762	0.0438025	0.0575236	0.0833667	0.0131373
주민세	0.3230884	0.0207598	0.0550610	0.0694591	0.0944479	0.0192747
도시계획세	0.3479864	0.0302042	0.0902474	0.1191121	0.1723012	0.0260966
사업소세	0.3504777	0.0286088	0.0822121	0.1069156	0.1518527	0.0252811
종합토지세	0.3697529	0.0311948	0.0879621	0.1131634	0.1571021	0.0277738
면허세	0.3967196	0.0397789	0.1180760	0.1545495	0.2186935	0.0342686
도축세	0.5683422	0.0876891	0.2646234	0.3400090	0.4489983	0.0732369
농지세	1.9419115	0.5637477	0.9992826	0.9999280	0.9999812	0.5310562
지역개발세	3.0824628	0.7044749	0.9518970	0.9682785	0.9814759	0.8536841
경주마권세	-	-	-	-	-	-
지방세 계	0.2038911	0.0102143	0.0304975	0.0405622	0.0605012	0.0088930

#### 다. 지방소득세 대상세목의 선택

세원의 보편성을 기준으로 할 경우 분석결과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더 형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법인세는 소득세에 비하여 그 세수 규모가 작아 지방소득세의 공동세원으로 할 경우 보다 많은 비율이 지방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제2장 제2절 지방소득세의 타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의 세원으로서는 개인소득세가 법인소득세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법인세의 경우 소득세에서 나타나지 않는 조세전가(Tax

Shifting)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조세전가현상은 크게 두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첫째는 법인세를 부과할 경우 기업은 법인세액에 상당하는 만큼 생산하는 상품의 가격을 높이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서 실제적인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 조세전가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는 법인세를 부과할 경우 기업은 노동의 고용량을 줄이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의 부담자는 실직한 노동자와 법인이 나누어지게 됨으로서 결국에는 일부분이나마 조세 전가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sup>33)</sup>

이러한 사실은 실제로 법인소득세를 도입하여 사용한 미국의 경험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 미국의 41개주에서 법인소득세를 부과징수하였으나 높은 순용비용이 발생하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비효율적인 관행의 정착현상을 발생시켰다.

반면 개인소득세는 근로소득세(payroll tax)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정부의 과세표준과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징수가 용이하다. 또한 개인소득세는 거주와 관련된 세이기 때문에 그 부담이 대체로 그 지역과 일치한다.<sup>34)</sup> 즉 조세를 납부하는 지역과 조세수입에 의하여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수혜지역이 일치한다.<sup>35)</sup> 이론적인 측면에 대한 검토결과 법인세 보다는 소득세가 더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를 공동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33) 본 연구에서 제시한 법인세의 전가는 장기적으로 자본의 완전이동성과 저축의 변화까지를 가정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이 전혀 이동할 수 없는 단기의 경우 법인세의 부담은 법인의 주주가 지게되며, 전체 자본량은 고정되어 있지만 법인과 비법인간에 자본의 이동성을 가정하는 경우 법인세의 부담은 법인과 비법인 모두 자본소유자가 지게 된다.

34) 조세납부와 공공서비스의 편익을 받는 지역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체로 다른 도시로 출근하는 경우 거주지와 편익수혜지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35) Bahl, Roy W. "The Decentralization of Government," 광복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재정 50년의 회고와 전망」, 1995년 10월 pp. 51~52.

한다.<sup>36)</sup>

소득세를 지방소득세의 공동이용세원으로 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다음에 결정하여야 할 것은 소득세의 전체를 공동이용세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소득세의 일정부분만을 공동이용세원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소득세의 종류 및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소득세의 종류 및 내용은 <표 3-5>와 같다.

<표 3-5> 소득세의 종류 및 내용

소득의 종류		소득의 내용
종합소득	이자 소득	예금, 유가증권 등의 이자
	배당 소득	주식,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
	부동산소득	건물 등의 임대료
	사업 소득	개인사업 및 자유직업소득 등
	근로 소득	월급 등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소득
	기타 소득	원고료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퇴직소득	퇴직금	
양도소득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	
산림소득	조림기간이 5년이상인 임목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는 세부담자의 담세력을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응능원칙(ability to pay principle)에 접근할 수 있는 전형적인 조세이다. 또한 소득세는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가 재원확보로 용이하게 연결된다는 점

36) 본 연구에서는 단 하나의 세목만을 공동이용세원으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연구된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보다는 소득세를 선정하였으나 배분비율을 크게 할 경우에도 법인세를 공동이용세원화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에서 세수의 소득탄력성이 높은 조세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에 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지금까지 도출되었던 지방세체계내의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득세액 전부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소득세의 종류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현재 지방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일부의 대상만을 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데 이는 대체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지방소득세의 신설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학자들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이들은 지역개발의 산물인 양도소득세, 1차산업 관련소득, 즉 국지적인 생산소득인 산림소득, 사업소득세 중 임업, 축산업, 수산업 관련 소득 등을 지방세로 이양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의 과세대상만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를 도입한다면 세수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세행정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세 소득세액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되 일정부분을 지방세로 배분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 제3절 지방소득세의 배분비율

#### 1.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재원

지방소득세의 배분규모는 중앙정부의 기능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

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관점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역할조정 맥락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지방세 체계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세제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적정한 수준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하에서 배분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또 다른 연구주제로서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예시적인 차원에서 지방세체계 개편(안)에 따른 세수감소분과 지방재정부족액을 이용하여 배분비율을 결정하고자 한다.

### 가. 지방세체계 개편(안)에 따른 세수 감소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세체계개편논의에 의한 경우 지방세수의 감소가 예상된다. 먼저 거래과세중 등록세의 세율을 인하할 경우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안에 의한 경우 1조 4천억원, 2안에 의한 경우 9천억원이 감소되며, 3안에 의한 경우 6천억원이 증가한다. 또한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하여 지방세는 단일세율로 하고 누진분에 대해서는 국세이양을 한다고 할 경우 약 5,5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sup>37)</sup> 여기에다 세목간 소화가 진행된다고 할 때 감소분은 더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sup>38)</sup> 이러한 지방세체계조정에 따른 감소분은 등록세율인하에 따른 감소분과 종합토지세 이원화에 따른 감소분을 합칠 경우 약 2조원이 되며, 등록세율인하분과 세목간소화를 위하여 제기되고 있는 4개세목을 고려할 경우

37) 종합토지세의 경우 지방세로서 토지분재산세를 신설하여 0.3%의 세율로 과세하고 나머지 누진분은 국세로 이양한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액수이며, 과표현실화율 인상 등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다.

38) 현재 학자들의 논의에 의한 경우 농지세와 경주·마권세의 국세이양, 도축세와 면허세의 폐지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세수감소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개 세목의 규모는 약 9,500억정도이다.

에 약 2조 3천억원 정도가 된다.

**<표 3-6> 부동산 등록세 세율인하 및 단순화에 따른 세수추계**  
(단위 : 억 원)

등기의 종류	세율		세수증감추계			비고
	현행	개편안	현행	개편안	증감	
계			44,502	1) 36,385 2) 44,094 3) 48,693	△ 8,117 △ 408 + 4,191	△ 14,127 △ 9,085 + 6,069
소유권 이전	3%	1) 2% 2) 2.5% 3) 2.8%	24,072	1) 16,032 2) 20,060 3) 22,467	△ 8,040 △ 4,012 △ 1,605	△ 8,040 △ 4,012 △ 1,605
보 존 등 기	0.8%	1) 2% 2) 2.5% 3) 2.8%	3,573	1) 8,933 2) 11,166 3) 12,506	+ 5,359 + 7,593 + 8,933	(현행존치)
무상 · 상속등기	0.3~1.5% (평균 1.2%)	1) 2% 2) 2.5% 3) 2.8%	975	1) 1,625 2) 2,032 3) 2,275	+ 650 + 1,056 + 1,300	(현행존치)
자동차 등록	1%~5%	1) 0.4%~2% 2) 0.5%~2.5% 3) 0.7%~2.8%	10,146	1) 4,059 2) 5,073 3) 5,682	△ 6,087 △ 5,073 △ 4,465	△ 6,087 △ 5,073 △ 4,464
기타등기 · 등 록		현행유지	5,736	5,735	-	-

자료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 나. 지방재정부족액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은 <표 3-7>과 같다.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정부족액은 7조 4,055억원이며 이중에서 6조 2,619억원이 교부세에 의하여 보전되고 있다. 이러한 보전에도 불구하고 1조 1,436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표 3-7>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

(단위 : 억 원)

단체별	기준재정 수 요 액	기준재정 수 입 액	재정부족액 (A)	교부세 (B)	A-B
계	147,646	73,591	74,055	62,619	11,436
광역시	26,022	24,903	1,119	946	173
도 분	29,616	16,245	13,671	11,560	2,111
시 분	49,562	23,081	26,481	22,391	4,090
군 분	42,146	9,362	32,784	27,722	5,062

자료 : 내무부, 「1997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pp. 8.

## 2. 지방소득세의 배분비율

국세 소득세액을 지방소득세의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한다고 할 때 각 배분비율별 배분규모는 <표 3-8>과 같다.

<표 3-8>에 의하면 1996년을 기준으로 할 때 배분비율을 10%로 할 경우 약 1조 5,000억 원으로서 지방세 중 등록세, 취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보다는 작지만 여타의 세목보다는 많은 규모이다. 배분비율을 20%로 했을 경우 약 3조 원이 되며, 이 규모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제외한 어떠한 지방세 목보다도 큰 규모이다. 배분비율을 30%로 했을 경우 4조 4,000억 원, 40%로 했을 경우 5조 9,000억 원, 그리고 50%로 했을 경우 약 7조 4,000억 원이 되어, 지방세의 개별 세목 중에서는 가장 크다.

이러한 배분비율별 배분규모 중에서 <표 3-6>과 <표 3-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지방세 감소분과 재정부족액을 보전한다고 할 경우 약 25%정도가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출근거를 보면, 지방세 감소분 2조원과 지방재정부족액 1조 1,436억원을 합할 경우 3조 1,436억원정도가 된다. 따라서 약 25%정도의 배분비율이 결정된다.

<표 3-8> 국세 소득세의 배분비율별 배분규모

(단위 : 천원)

구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0%	800,835,700	946,284,997	1,120,776,700	1,361,819,003	1,476,688,193
15%	1,201,253,550	1,419,427,495	1,681,165,050	2,042,728,505	2,215,032,289
20%	1,601,671,401	1,892,569,994	2,241,553,400	2,723,638,007	2,953,376,385
25%	2,002,089,251	2,365,712,492	2,801,941,750	3,404,547,508	3,691,720,481
30%	2,402,507,101	2,838,854,991	3,362,330,100	4,085,457,010	4,430,064,578
35%	2,802,924,951	3,311,997,489	3,922,718,450	4,766,366,512	5,168,408,674
40%	3,203,342,801	3,785,139,988	4,483,106,800	5,447,276,013	5,906,752,770
45%	3,603,760,651	4,258,282,486	5,043,495,150	6,128,185,515	6,645,096,866
50%	4,004,178,501	4,731,424,985	5,603,883,750	6,809,095,017	7,383,440,963

### 3. 지방소득세 재원의 확보방법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여 국세 소득세액의 25%를 지방자치단체로 배분할 경우 국세의 감소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의 소득세율을 인상하여 인상된 규모를 지방자치단체로 배분할 것이다. 이 경우 어느 정도의 세율인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방소득세의 재원을 국세 소득세액의 25%로 할 경우 이 규모는 국세소득세 총과표의 2.2%정도에 해당된다. 이러한 사실은 지방소득세를

지방세목화하여 도입할 경우 지방소득세의 세율이 과표대비 2.2%가 된다는 의미이다.<sup>39)</sup> 이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의 총과표가 나타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통계연보에는 이러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대체적인 수준만을 산출할 수 있을 뿐이다. 2.2%가 산출된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총과표를 대략적으로 집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표 3-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소득중 통계연보에 과표가 수록되어 있는 것은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이다. 따라서 종합소득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갑),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을 추계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종합소득의 경우 총소득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부분을 과표로 설정하였으며, 원천징수부분은 근로소득세가 1996년 기준 원천징수부과액 9조 8,524억원중 5조 9,783억원으로 전체의 60.7%를 차지하고 있어 근로소득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총액수를 합산하여 총과표로 하였으며 이를 소득세액으로 나누어 평균세율을 구하였다. 이렇게 할 경우 <표 3-9>가 완성된다<sup>40)</sup>.

<표 3-9>에 의할 경우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13.8%가 된다. 따라서 국세 소득세의 지방소득세분 25%(3조 6,917억원)는 국세 소득세의 2.2% 이하가 될 것이다.

39) 2.2%는 세율의 인상이 100% 세수로 반영된다는 가정하에서 추계된 것이다. Feldstein 등은 의할 경우 실제로는 노동공급의 변화, 보상형태, 투자, 세액공제행위 등에 영향을 받아 세율인상분이 100% 세수효과로 연계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는 이러한 영향요인들을 고려하여 세수가 추계되어야 하나 이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상세한 분석은 피하고자 한다(Feldstein, Martin, "The Effect of Marginal Tax Rate on Taxable Income: A Panel Study of the 1986 Tax Reform Ac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3, No.3 1995, June).

40) <표 3-9>에 나타나있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수치는 산출세액이므로 실제 부과액인 5조 9,783억원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표 3-9> 국세 소득세의 과표 및 산출세액 추계결과(1996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과표	산출세액
신고분	79,458,839	13,561,644
종합소득	18,135,206	3,981,860
근로소득	52,598,866	5,823,300
양도소득	8,725,767	3,756,484
산림소득	-	-
원천분	84,264,447	8,973,955
이자소득	-	-
배당소득	-	-
사업소득	-	-
근로소득	84,264,447	8,973,955
기타소득	-	-
퇴직소득	-	-
비거주자	-	-
계	163,723,286	22,535,599

주 : \*는 추정치, -는 추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추정치는 성명재, 「근로소득세 세수추계와 세수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7.4. pp. 61.

<표 IV-2>를 참조하여 계산하였음.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1997년.

## 제4절 지방소득세의 배분방식<sup>41)</sup> 및 배분결과

### 1. 지방소득세의 배분방식

#### 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배분방식

##### 1) 배분방식의 제시

지방소득세의 배분방식은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에서의 배분기준이며, 둘째는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에서의 배분기준이다.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에서 배분기준을 검토하고자 한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배분방식을 결정한다는 것은 Bahl에 의할 경우 재원의 이양방식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직적 관계(vertical balance)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재원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은 중앙정부가 세수를 통제하여 지방정부간 형평화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조세의 부담과 지출편익간 연계고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효율성측면은 약하다. 공유방식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뜻을 얼마나 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수직적 관계에서 살펴보면 크게 일정액(specified share)적 접근방법, 임의적 접근방법(ad hoc decision), 지출비용상환(reimbursement)적 접근방법 등이 있다.

일정액적 접근방법은 정수된 세입중 일정부분을 지방정부에 양여하

41) 이 부분은 1995년 10월에 발표한 Bahl의 "The Decentralization of Government," 「한국재정 50년의 회고와 전망」을 요약·정리한 것임.

는 방식을 의미하며, 임의적 결정에 따른 접근방법은 지방정부가 얼마나 많은 양을 받아야 하는지를 의회(parliament)가 매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 접근방법인 비용상환(cost reimbursement)적 접근방법은 지방정부가 그들 스스로의 재원에 의해서는 특별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없다는 인식에 근거해 있다. 이 접근방법에 의하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한 재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순하게 지방정부에 상환하는 것이다.

## 2) 배분방식의 선택

배분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각 배분방식의 장단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일정액적 접근방법은 지방정부가 지출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규모와 실제로 배분되는 재원규모가 배분되는 국세의 뜻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첫째, 지방정부에 재정수입이 발생할 것이라는 확실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더 나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이 방법은 배분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수 없다. 만약 중앙정부가 신축적인 재정정책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지방정부와 타협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임의적 결정에 따른 접근방법은 의회(parliament)가 정확한 수요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경우 수직적 불형평성의 문제를 잠재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의회는 지방단위의 신규사업에 대한 이전 재원을 축소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재정규모가 매우 불안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이 접근방법은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가장 많

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출비용상환적 접근방법은 중앙정부의 관점으로부터 볼 때 재원을 구체적인 목적에 지출하도록 용도를 지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기준을 설정할 수도 있다.<sup>42)</sup> 이 접근방법은 일부의 기능에 대해서는 수직적 불형평성을 해소할 수 있지만 일부의 기능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직적 불형평성의 문제가 남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3가지의 접근방법중 지방정부수입의 안정성을 가장 확실히 보장하고 있는 일정액적 접근방법을 택하고자 한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방식을 일정액적 접근방법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다음에 고려하여야 할 것은 지방정부간에 어떻게 배분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 나. 지방자치단체간 배분방식

### 1) 배분방식의 제시

지방자치단체간 배분방식을 결정한다는 것은 Bahl에 의할 경우 재원의 배분방식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관계(horizontal balance)를 의미한다. 즉 지방정부간 분배의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수평적 관계에서 살펴보면 크게 4가지가 있다. 첫째는 징세지원칙(derivation principle)을 적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획일적인 공식(formula), 셋째는 임의적(ad hoc), 넷째는 비용상환(reimbursing costs)이다.

42) 예를 들면 도로와 다리의 건설양, 교실의 규모, 병원의 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징세지원칙이란 중앙정부가 징수한 세입을 각 지방정부의 부담액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되돌려주는 방식을 의미한다. 일정한 공식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은 배분을 위한 획일적인 공식을 설정해두고 그 공식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용상환적 교부는 지방정부의 지출액을 중앙정부가 이전해주는 것을 의미하며, 임의적인 접근방법은 중앙정부가 주관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배분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2) 배분방식의 선택

지방자치단체간 배분방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각 접근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징세지원칙에 의한 배분은 가장 순수한 배분방법이다. 지방정부로서는 징세비용을 절감하면서 일정액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하에서의 지방정부는 세율과 과표를 결정할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는 지방세라기 보다는 정부간 이전재원이라 볼 수 있다. 지방세목으로서 존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징세능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이를 담당하여 배분한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직적 불형평성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공식에 의한 배분이나 임의적 배분에 비하여 지방정부에 대한 이전재원의 양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많은 이점을 가질 수 있다. 둘째는 지방정부

에 의하여 증가된 소득이나 소비가 세수와 밀접히 연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셋째는 만약 이전재원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지방 정부의 과세자주권이 확보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정부간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정한 공식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은 수평적 형평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열악한 지방정부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 방법의 핵심은 형평한 배분을 위한 운영척도(operational measure)를 만드는 것이다. 선진국가들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척도로서 개인소득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러한 데이터는 개발도상국이나 전이 국가에서는 이용하기 어렵다. 일부 국가에서는 지방세징세노력을 이 공식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비용상환적 교부는 지방정부의 지출액을 중앙정부가 이전해주는 것으로서 주된 문제는 전체를 이전하느냐 아니면 부분을 이전하느냐이다. 완전한 비용을 상환해주는 것은 지방정부가 지역공공재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인센티브를 줄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진다. 게다가 완전한 상환은 중앙정부의 엄격한 승인과정에 의하여 수반되는 것 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선택권이 최소화된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비용의 100%이하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유인책을 제공하고자 한다.

임의적 교부는 집권화의 극단적인 예이다. 이 방법은 중앙정부가 교부금액을 주관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전하는 것으로서 상한이 없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중앙정부의 재량에 의하여 세입을 배분해주는 형, 특별목적을 위하여 배분하는 보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중앙정부의

신축성을 최대로 확보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그림 3-2>와 같다.

<그림 3-2> 지방소득세의 도입을 위한 배분방식

구분	수직적 관계(재원의 이양방식)		
	일 정 액	임의적 결정	승인된 지출의 상환
수평적 관계 (재원의 배분방식)	징세지주의	전 체	프로젝트별 무상한
	공식에 의한 이전		재 량 권
	비 용 상 환	부 분	특 별 목 적 형
	임 의 적 이 전		

본 연구에서는 징세지주의와 징세지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인 지방자치단체간 불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배분공식에 의한 배분방식을 동시에 고려하고자 한다.

## 2. 지방소득세의 배분결과

### 가. 광역자치단체간 배분결과

#### 1) 징세지주의에 의한 배분

##### 가) 배분기준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지방소득세를 배분한다는 의미는 지방자치단체별 국세 소득세의 부담비율에 따라 배분한다는 의미이다. 이 방식은 일본의 지방소비세 배분방식과 유사하다. 일본의 지방소비세는 과세주체가 도·부·현이며, 납세의무자는 소비세와 동일하고, 과세표준은 소비세액

이며, 세율은 소비세액의 25%이다. 도·도·부·현간 청산절차는 소비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시·정·촌의 경우에는 도·도·부·현간 청산 후의 금액의 1/2상당액을 인구·종업원수로 안분하고 있다. 동일한 방식을 우리나라 지방소득세에 적용하면 과세주체는 광역자치단체가 되며, 납세의무자는 소득세와 동일하고 과세표준은 소득세액이며, 세율은 소득세액의 25%가 된다. 광역자치단체간 청산은 국세 소득세의 부담비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기초자치단체의 교부는 각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수의 1/2을 기초자치단체에 안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분기준에 의할 경우 결국에는 광역자치단체가 12.5%를 배분받게 되며, 기초자치단체가 12.5%를 배분받게 된다. 기초자치단체의 배분문제는 다음의 나. 기초자치단체간 배분결과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광역자치단체별 배분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 나) 배분결과

지방소득세를 도입한 후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지방소득세액을 배분한 결과는 <표 3-10>과 같다.

<표 3-10>의 징세지주의에 의한 배분결과에 의하면, 국세 소득세액의 12.5%인 1조 8,459억원중 서울에 9,202억원이 배분되어 전체의 49.9%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제주도에는 불과 1,339억원(7.3%)만이 배분된다.

<표 3-10> 징세지주의에 의한 광역자치단체별 배분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1995년		1996년		
	소득세액	배분액	소득세액	배분액(1)	배분액(2)
서울	6,827,808	1,706,952	7,361,639	920,205	1,840,410
부산	1,108,947	277,237	1,182,321	147,790	295,580
대구	665,989	166,497	672,424	84,053	168,106
인천	465,669	116,417	658,599	82,325	164,650
광주	303,394	75,849	295,767	36,971	73,942
대전	279,662	69,916	305,681	38,210	76,420
경기	1,463,574	365,894	1,476,495	184,562	369,124
강원	212,927	53,232	231,046	28,881	57,762
충북	234,392	58,598	251,261	31,408	62,815
충남	234,670	58,668	264,414	33,052	66,104
전북	276,614	69,154	289,930	36,242	72,483
전남	193,181	48,295	256,626	32,079	64,157
경북	488,602	122,151	534,143	66,768	133,536
경남	765,312	191,328	879,455	109,931	219,862
제주	97,449	24,362	107,081	13,385	26,770
계	13,618,190	3,404,548	14,766,882	1,845,861	3,691,721

주 : 배분액(1)은 소득세의 지방자치단체별 부담액의 12.5%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한 것임. 배분액(2)은 소득세의 지방자치단체별 부담액의 25%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한 것임.

## 2) 배분공식에 의한 배분

### 가) 배분기준

배분공식에 의하여 배분한다는 의미는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세의 배분방식에 의하여 지방소득세액을 배분한다는 의미와 유사하다. 독일의 공동세는 연방과 주정부 수입의 균등한 발전이라는 목표하에 1969년 세제개혁시 도입된 제도로 공동세 대상세목중 소득세와 법인세는

헌법규정에 따라 일정율로 연방, 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할당하나 부가가치세는 연방과 주에만 배분되는데 그 비율은 일정하지 않고 연방과 주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주정부 귀속분을 각 주정부에 배분하는 방식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각 주에서 징수된 세수에 비례하여 배분하지만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우선 75%를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나머지 25%는 재정력이 빈약한 주에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이 25%의 배분을 부가가치세를 통한 사전재정조정이라고 부르며 주간 재정의 수평적 조정 1차단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독일의 공동세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영업세, 법인세를 대상으로 하여 <표 3-11>과 같은 배분비율에 의하여 배분하고 있다.<sup>43)</sup>

<표 3-11> 독일 공동세의 대상세목 및 배분비율

(단위 : %)

대상세목	연방	주	기초
부 가 가 치 세	50.5	49.5	-
소득세(원천분 및 연말정산분)	42.5	42.5	15.0
소 득 세(분 리 과 세 분)	50.0	50.0	-
법 인 세	50.0	50.0	-
영 업 세	7.5	7.5	85.0

자료 : 김유찬, 「독일의 재정」, 한국조세연구원, 1997.11

이러한 배분비율을 가지고 있는 독일의 공동세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와 독일의 기존세제상의 차이로 인하여 배분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중앙정부의 조세수입이 급감하는 반면 지방의 조세수입은 급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

43) 김유찬, 「독일의 재정」, 한국조세연구원, 1997. 11.

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세율의 인상폭을 크게 하여야 하는바 여기에는 많은 조세저항이 야기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지방소득세는 독일의 공동세와는 달리 하나의 세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살펴본 바와 같이 4개의 세목을 대상으로 하면서 소득세를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하고 부가가치세를 지방자치단체간 형평화기능을 수행하는 세목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는 1개의 세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독일과는 달라질 필요가 있다.

본 대안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소득세의 경우 독일의 부가가치세 배분 방식, 즉 사전재정조정의 장치로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징세지주의, 배분공식, 그리고 절충안에 의하여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어느 유형이 우리나라에 적실한 가를 평가하는데 연구목적이 있으므로 여타의 방식과 동일한 방식에 입각하여 배분비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의 배분비율을 중앙 75%, 광역 12.5%, 그리고 기초 12.5%로 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방식에 입각하여 배분하고자 할 경우 기준은 무엇인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재정력지수를 이용한 방식을택하고자 한다. 재정력지수는 지방교부세의 배분시 참고자료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재정수입액을 지방재정수요액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재정력지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정도를 표시하고 있는 유용한 지표로서 판단된다. 이러한 재정력지수를 이용하여 재정력이 튼튼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적은 규모를,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에는 많은 규모를 배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따라서 재정력지수를 변용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크게 2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하나는 재정력환산지수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역재정력배분지수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이다.

재정력환산지수는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하여 도출하였다.

먼저 재정력지수를 FCI(Fiscal Capacity Index)라고 할 때 광역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는 <표 3-12>와 같다. FCI를 환산하여 FCI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적은 비율을 그리고 FCI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많은 비율을 배분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 FCI<sub>i</sub>를 환산할 필요가 있다.

<표 3-12> 광역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

단체명	기준재정수요	기준재정수입	재정력지수
서울	3,345,313	3,726,296	1.113886
광역시계	3,493,051	3,395,396	0.972043
부산	1,149,538	1,158,220	1.007553
대구	756,193	751,538	0.993844
인천	720,813	718,193	0.996365
광주	431,104	351,259	0.814789
대전	435,403	416,186	0.955864
도계	3,774,961	3,128,776	0.828823
경기	1,092,233	1,641,428	1.502819
강원	289,746	112,939	0.389786
충북	272,970	135,820	0.497564
충남	298,687	141,352	0.473245
전북	339,691	181,415	0.534059
전남	355,046	151,410	0.426452
경북	441,460	244,326	0.553450
경남	539,527	442,552	0.820259
제주	145,601	77,534	0.532510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를 전부 더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식 5>와 같다. 이때  $n$ 은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의미한다.

$$S = \sum_{i=1}^n FC I_i \quad \dots \quad <\text{식 } 5>$$

이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i)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여야 하는바 그 결과는 <식 6>과 같다.

<식 6>을 통하여 계산된 값을 환산, 즉 비중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뜻을 배분하고 비중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적은 뜻을 배분하기 위해서  $(1 - X^{\frac{1}{n}})$ 를 하고 이를 다시 더하면

$$\bar{S} = \sum_{i=1}^n (1 - FC_i I_i) \quad \dots \quad <\text{식 } 7>$$

이를 토대로 하면 <식 8>과 같은 징세지주의에 의한 i자치단체의 배분규모  $X_i^2$ 가 결정된다.

$$X_i^2 = \frac{(1 - FC\ I_i)}{\sum_{i=1}^n (1 - FC\ I_i)} \quad \dots \quad <\text{식 } 8>$$

따라서  $i$ 자치단체에 배분되는 배분공식에 의한 규모는 <식 9>와 같다. 여기서  $(1 - K_i)$ 는 배분공식에 의한 배분비율을 의미한다.

$$A_i = \frac{(1 - FC\ I_i)}{\sum_{i=1}^n (1 - FC\ I_i)} \cdot (1 - K_i) \quad \dots \quad <\text{식 } 9>$$

또 하나의 배분지수인 역재정력배분지수는 재정력지수에 역수를 취한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지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재정력의 차이를 보다 극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역재정력배분지수를 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를 역수화하며 그 결과는 <식 10>과 같다.

$$X_{RFCI} = \frac{1}{FCI_i} \quad \dots \quad <\text{식 } 10>$$

<식 10>에 의하여 역수화되었으므로 <식 10>에 입각하여 배분을 하면 되나 이 경우 1을 초과하므로 전체에서 개별자치단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식 11>과 같다. 즉 각 지

방자치단체의 역재정력지수를 전부 더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재정력지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여 배분공식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n$ 은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의미한다.

$$X_i^{RFCI} = \frac{\frac{1}{FCI_i}}{\sum_{i=1}^n \frac{1}{FCI_i}} \dots \text{<식 11>$$

#### 나) 배분결과

배분공식에 의하여 배분하고자 할 경우 본 연구에서는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력환산지수와 역재정력배분지수를 사용하였다. 먼저 재정력환산지수에 의하여 배분한 결과는 <표 3-13>과 같다. <표 3-13>에 의하면 강원이 1,274억원으로 가장 많은 규모를 배분받게 되며,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할 경우 가장 많은 규모를 배분받았던 서울의 경우에는 1,192억원으로 경기(1,148억원) 다음으로 적은 규모를 배분받게 된다.

배분공식에 의하여 배분할 때 배분지수를 재정력환산지수가 아닌 역재정력배분지수에 의하여 배분한 결과는 <표 3-14>와 같다. <표 3-14>에 의할 경우 강원이 2,091억원으로서 가장 많으며 이는 재정력환산지수에 의하여 배분된 배분액 1,274억원보다 약 1.64배가 커진 규모이다.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지방소득세액을 배분할 경우 가장 많은 배분액을 받게 되는 서울의 경우 역재정력배분지수에 의하여 배분할 경우에는 732억원을 배분 받게되어 경기(542억원) 다음으로 적은 규모를 배분받게 된다. 또한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지방소득세를 배분할 경우 가장 적은 규모를 배분받던 제주가 역재정력배분지수에 의하여 배분할 경우에는

1,530억원으로서 강원, 전남, 충북 다음으로 많은 규모를 배분받게 된다.

<표 3-13> 배분공식에 의한 광역자치단체별 배분결과(1)

(단위 : 백만원)

구분	배분액(1)	배분액(2)	구분	배분액(1)	배분액(2)
서울	119,200	238,400	충북	126,198	252,396
부산	120,407	240,814	충남	126,474	252,948
대구	120,563	241,126	전북	125,783	251,566
인천	120,534	241,068	전남	127,005	254,010
광주	122,596	245,192	경북	125,563	251,126
대전	120,994	241,988	경남	122,534	245,068
경기	114,784	229,568	제주	125,801	251,602
강원	127,422	254,844	계	1,845,860	3,691,720

주 : 재정력환산지수에 의하여 광역자치단체별로 배분한 결과임.

배분액(1)은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절반인 12.5%를 배분하였을 경우를 계산한 것이며, 배분액(2)은 광역자치단체에 25%전부를 배분하였을 경우를 계산한 것임.

<표 3-14> 배분공식에 의한 광역자치단체별 배분결과(2)

(단위 : 백만원)

구분	배분액(1)	배분액(2)	구분	배분액(1)	배분액(2)
서울	73,167	146,334	충북	163,798	327,596
부산	80,889	161,778	충남	172,215	344,430
대구	82,005	164,010	전북	152,605	305,210
인천	81,797	163,594	전남	191,111	382,222
광주	100,026	200,052	경북	147,258	294,516
대전	85,263	170,526	경남	99,358	198,716
경기	54,231	108,462	제주	153,048	306,096
강원	209,089	418,178	계	1,845,861	3,691,720

주 : 역재정력배분지수에 의하여 광역자치단체별로 배분한 결과임.

배분액(1)은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절반인 12.5%를 배분하였을 경우를 계산한 것이며, 배분액(2)은 광역자치단체에 25%전부를 배분하였을 경우를 계산한 것임.

### 3) 절충안

#### 가) 배분기준

절충안이란 일정액은 소득세의 부담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일정액은 배분공식(재정력환산지수와 역재정력배분지수)에 입각하여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간단한 모형을 설정해보자.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i$ 라고 하고 세목을  $j$ 라고 하면 국세의 수입  $R$ 은 <식 12>와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m$ 은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의미하며,  $n$ 은 세목의 수를 의미한다.

$$R = \sum_{i=1}^m \sum_{j=1}^n X_{ij} \quad \text{.....<식 12>}$$

<식 12>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공유방식에 입각하여 징수된 세액을 의미하며, 따라서 일정비율( $a$ )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고 할 때 <식 13>과 같이 된다.

$$\Delta R = R \cdot a \quad \text{.....<식 13>}$$

이를 징세지주의( $K_i$ )와 배분공식( $1 - K_i$ )에 의하여  $i$ 자치단체에  $\beta$  비율만큼 배분한다고 하면 <식 14>, <식 15>와 같다.

$$\Delta R_{ij} = \Delta R \cdot K_i \cdot \beta_j \quad \text{<식 14>$$

$$\Delta R_{ij} = \Delta R \cdot (1 - K_i) \cdot \beta_j \quad \text{<식 15>$$

따라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가분은 <식 16>과 같다.

$$\Delta R_{ij} = \Delta R \cdot K_i \cdot \beta_j + \Delta R \cdot (1 - K_i) \cdot \beta_j \quad \text{<식 16>$$

결국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가분은  $a$ ,  $K_i$ 와  $\beta_j$ 를 결정함으로써 알 수 있다. 여기에서  $\beta_j$ 는 각 개별자치단체의 소득세부담비율을 사용하고자 하며, 따라서 이 값은 결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K_i$ 는 다양한 수치를 대입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K_i$ 의 비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지방자치단체간 불형평성의 정도는 심화될 것이며,  $(1 - K_i)$ 의 비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은 증진되는 반면, 효율성은 감소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배분비율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K_i = 50\%$ 로 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하며, 그 이유는  $K_i$ 와  $(1 - K_i)$ 의 비율을 동일하게 할 경우 다른 비율로 분석한 결과와 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a$ 인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체계조정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과 지방재정부족액을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25%로 하고자 한다.<sup>44)</sup>

---

44)  $a = 10\%$ 에서 50%,  $K_i = 10\%$ 에서 100%로 했을 경우의 분석결과를 <부록 1>에 정리하였으므로 참고하기 바람.

## 나) 배분결과

절충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소득세의 부담비율에 의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배분액을 배분하고 난 후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식에 의하여 배분하는 방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의 기준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력환산지수와 역재정력배분지수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기준에 근거하여 분석해보면, 먼저  $K_i$ 의 비율을 10%에서 100%까지로 할 경우의 분석결과는 <부록 2>와 같다. 이러한 분석결과중  $\alpha = 12.5\%, 25\%$ ,  $K_i = 50\%$ ,  $(1 - K_i) = 50\%$ ,  $\beta_i =$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세 부담비율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3-15>와 같다.<sup>45)</sup> <표 3-15>에 의할 경우 서울이 5,197억원으로 가장 많은 규모를 배분받게 되며, 그 다음은 경기도의 1,497억원이다.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할 경우 서울이 많은 규모를 배분받기 때문에 배분공식에 의하여 경기 다음으로 적은 규모를 배분받는다 하더라도 가장 많은 규모를 배분받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절충안에 의하여 배분할 경우에 가장 적은 규모를 배분받는 제주는 696억원을 배분받게 되는데 이는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할 경우 너무 적은 액수를 배분받기 때문에 배분공식에 의하여 보다 많은 배분규모를 배분받는다 하더라도 역시 가장 적은 규모를 배분받게 된다.

---

45)  $\alpha = 12.5\%$ 와  $25\%$ 로 한 이유는 광역자치단체의 배분규모를 다른 형태의 도입방안과 비교하기 위해서이다.

<표 3-15> 절충안에 의한 광역자치단체별 배분결과(1)

(단위 : 백만원)

구분	$\alpha = 12.5\%$			$\alpha = 25\%$		
	Ki = 50%	(1-Ki) = 50%	계	Ki = 50%	(1-Ki) = 50%	계
서울	460,103	59,600	519,703	920,205	119,200	1,039,405
부산	73,895	60,204	134,099	147,790	120,407	268,197
대구	42,027	60,282	102,309	84,053	120,563	204,616
인천	41,163	60,267	101,430	82,325	120,534	202,859
광주	18,486	61,298	79,784	36,971	122,596	159,567
대전	19,105	60,497	79,602	38,210	120,994	159,204
경기	92,281	57,392	149,673	184,562	114,784	299,346
강원	14,441	63,711	78,152	28,881	127,422	156,303
충북	15,704	63,099	78,803	31,408	126,198	157,606
충남	16,526	63,237	79,763	33,052	126,474	159,526
전북	18,121	62,892	81,013	36,241	125,783	162,024
전남	16,039	63,503	79,542	32,078	127,005	159,083
경북	33,384	62,782	96,166	66,768	125,563	192,331
경남	54,966	61,267	116,233	109,932	122,534	232,466
제주	6,693	62,901	69,594	13,385	125,801	139,186
계	922,934	922,932	1,845,866	1,845,861	1,845,860	3,691,721

주 : 재정력환산지수에 의하여 광역자치단체별로 배분한 결과임.

동일한 방식에 입각하여 배분하되 공식에 의한 배분을 역재정력배분지수에 의하여 배분한 결과는 <표 3-16>과 같다. <표 3-16>에 의할 경우 서울이 4,967억원을 배분받게 되어 가장 많은 배분규모를 배분받게 되나 이 규모는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받게 되는 규모보다 작으며, 배분공식에 의하여 배분하는 경우보다는 많은 규모이다. 또한 이 규모는 절충안중 재정력환산지수에 의하여 배분되는 규모인 5,197억원에 비하여 작은 규모인데, 이는 역재정력지수가 재정력환산지수에 비하여 재정력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배분규모를 낮게 계산하기 때문이다.

<표 3-16> 절충안에 의한 광역자치단체별 배분결과(2)

(단위 : 백만원)

구분	$\alpha = 12.5\%$			$\alpha = 25\%$		
	Ki = 50%	(1-Ki) = 50%	계	Ki = 50%	(1-Ki) = 50%	계
서울	460,103	36,584	496,687	920,205	73,167	993,372
부산	73,895	40,445	114,340	147,790	80,889	228,679
대구	42,027	41,003	83,030	84,053	82,005	166,058
인천	41,163	40,899	82,062	82,325	81,797	164,122
광주	18,486	50,013	68,499	36,971	100,026	136,997
대전	19,105	42,632	61,737	38,210	85,263	123,473
경기	92,281	27,116	119,397	184,562	54,231	238,793
강원	14,441	104,545	118,986	28,881	209,089	237,970
충북	15,704	81,899	97,603	31,408	163,798	195,206
충남	16,526	86,108	102,634	33,052	172,215	205,267
전북	18,121	76,303	94,424	36,241	152,605	188,846
전남	16,039	95,556	111,595	32,078	191,111	223,189
경북	33,384	73,629	107,013	66,768	147,258	214,026
경남	54,966	49,680	104,646	109,932	99,359	209,291
제주	6,693	76,524	83,217	13,385	153,048	166,433
계	922,934	922,936	1,845,870	1,845,860	1,845,861	3,691,721

주 : 역재정력배분지수에 의하여 광역자치단체별로 배분한 결과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배분규모를 배분받는 이유는 정세지주의에 의하여 이미 많은 배분규모를 배분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장 적은 규모를 배분받게 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여타의 배분결과와는 달리 대전이 되며, 약 617억원을 배분받게 된다.

## 나. 기초자치단체간 배분결과

기초자치단체로의 재원배분문제는 징세지주의, 배분공식, 그리고 양자를 혼합한 절충안의 3가지 대안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재원을 배분하는 것인가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느냐의 문제 역시 고려하여야만 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구를 포함하여 배분하느냐 아니면 시·군에만 배분하느냐를 고려하여야만 한다.

배분공식에 의하여 배분할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와 관계없이 기초자치단체의 몫이 결정되므로 이 문제를 논의할 실익이 없으나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하는 경우와 절충안에 의하여 배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든 점에 대한 각각의 시뮬레이션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시뮬레이션을 하고자 할 경우 사용하는 기준은 재정력지수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와의 관계이다. 현재 자치구는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정력지수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서 현재 자치구는 특별시·광역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받고 있으며, 조정교부금 교부금액의 산정을 위하여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고 있어 재정력지수를 계산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교부세의 배분시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하는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과의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sup>46)</sup>.

---

46) 조정교부금제도란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여 기준재정수입액이 수요액에 미달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부족재원을 교부율에 의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1) 징세지주의에 의한 배분

### 가) 배분기준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한다는 의미는 소득세의 부담비율에 따라 배분규모를 배분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 소득세액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별 소득세 부담비율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발간되고 있는 통계자료에는 기초자치단체별 소득세 부담비율을 계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별 소득세 부담비율을 추계하여야 한다.<sup>47)</sup>

먼저 국세 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주민세 소득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주민세 소득할의 경우 소득세 할, 법인세할, 농지세할로 구분되어 국세 소득세, 법인세 및 지방세 농지세에 부가되고 있는 지방세목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 소득세 부담액을 추계할 수 있는 대용변수(proxy)로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소득세할의 경우 국세 소득세액의 7.5%이며, 법인세할의 경우 법인세액의 7.5%, 그리고 농지세할의 경우 농지세액의 7.5%였으나, 1995년 8월 지방세법 부칙 제7조의 개정에 의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0%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주민세 소득할이 국세 소득세 및 법인세에 부가세 형식으로 부과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주민세 소득세할과 법인세할은 국세 소득세 및 법인세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47)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연보에 국세징수액이 수록되어 있으나 이 역시 정확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하나의 세무서가 A자치단체 전체와 B자치단체의 일부를 관리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연보에는 B자치단체에서 징수한 금액이 A자치단체에 합산되기 때문이다.

이 가설이 검증될 경우 주민세 소득할 지표를 기준으로 국세 소득세 및 법인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상관관계분석 및 회귀분석이 필요하다.

1981년부터 1996년까지의 주민세 소득세할, 법인세할, 그리고 국세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3-17>과 같다.

<표 3-17>에 의하면 주민세 소득세할과 국세 소득세는 거의 동일변수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값이 도출되었으며, 주민세 법인세할과 국세 법인세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는 주민세 소득세할과 법인세할은 국세 소득세 및 법인세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국세 소득세와 법인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주민세 소득할을 사용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 3-17> 주민세 소득할과 국세 소득세 및 법인세와의 회귀분석결과

주민세 소득세할과 국세 소득세			주민세 법인세할과 국세 법인세		
상관계수	결정계수	유의수준	상관관계	결정계수	유의수준
0.98119	0.9627 (0.9601)	0.0001	0.99303	0.9861 (0.9851)	0.0001

주 : ( )는 조정된 결정계수의 값을 의미함.

주민세 소득할을 이용한 지방자치단체별 국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배분기준은 먼저 주민세 소득세할 · 법인세할과 국세 소득세 · 법인세의 비율을 구한 후 이를 평균세율로 사용하는 것이다.<sup>48)</sup> 이에 대한 분석결

48) 배분방식을 상세히 살펴보면 먼저 주민세 소득세할로 국세소득세를 나누어 평균세율을 구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세 소득세할로 나누어주는 것이다. 이 방법은 주민세 소득할 총액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세 소득할이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여 이를

과는 <표 3-18>과 같다. 이러한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별 국세 소득세 부담액을 <식 17>과 같은 방식에 의하여 도출한다는 의미와 동일하다.

<표 3-18> 주민세 소득할과 국세 소득세, 법인세의 비율

(단위 : %)

구분	소득세	법인세
1992년	0.071145482	0.068260646
1993년	0.072072201	0.074670132
1994년	0.075883528	0.071583552

$$IT_i^E = R T_i \times \frac{100}{ATR} \quad \dots \dots \dots \quad <\text{식 } 17>$$

$IT_i^E$ 는 지역  $i$ 의 추정 소득세 수입,  $R T_i$ 는 지역  $i$ 의 주민세 소득세할 부과액, 그리고  $ATR$ 은 주민세 소득할의 평균세율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1995년말까지 소득세액, 법인세액, 그리고 농지세액의 각각 7.5%였으며, 1996년에는 10%였으므로 국세 소득세의 통계와 지방세인 주민세 소득할의 통계가 일치된다면 <표 3-18>의 분석결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5%(1996년의 경우는 10%)와 유사하여야 한다. <표 3-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세와 주민세 소득세할의 경우는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데, 이러한 차이는 첫째, 통계상의 불일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일수도 있고, 둘째, 부가세가 가진 특징때문일 수 있

---

국세 소득세와 법인세에 적용하여 배분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는 데, 그것은 국세 소득세, 법인세와 지방세인 농지세의 부과가 철회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주민세 소득할도 취소되어야 하지만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부과가 취소되는 경우 주민세 소득할이 당연히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 등의 취소사유가 주민세 소득할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재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차이일 수도 있다. 그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추계할 경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별 배분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은 기초자치단체별 주민세 소득할의 비중을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배분주체가 어디이느냐에 따라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 구분되며, 중앙정부는 다시 자치구를 포함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가 아니면 자치구를 제외하고 시·군에만 배분하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 나) 배분결과

##### ① 중앙정부가 직접 배분하는 경우

각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세부담액이 전체 주민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중심으로 지방소득세액을 배분한 결과는 <표 3-19>, <표 3-20>과 같다.<sup>49)</sup> <표 3-19>은 자치구를 제외한 상태에서 시·군에만 배분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표 3-20>은 자치구를 포함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49) 사례로서 경기도만을 본문에 제시하였으며 다른 도의 경우는 <부록 3>을 참고하기 바람.

<표 3-19> 징세지주의에 의한 기초자치단체별 배분결과(중앙정부1)

경기	주민세액 (단위 : 천원)	비중 (단위 : %)	배분액 (단위 : 백만원)
수원	49,915,867	0.053018860	97,865
성남	29,629,902	0.031471829	58,093
의정부	7,343,147	0.007799630	14,397
안양	23,939,652	0.025427847	46,936
부천	26,163,997	0.027790468	51,297
광명	8,505,921	0.009034687	16,677
동두천	1,759,030	0.001868379	3,449
안산	27,318,240	0.029016463	53,560
고양	17,536,081	0.018626202	34,381
과천	6,900,964	0.007329959	13,530
구리	4,737,320	0.005031813	9,288
평택	16,315,706	0.017329963	31,989
남양주	6,208,222	0.006594153	12,172
오산	3,726,294	0.003957937	7,306
시흥	7,633,548	0.008108083	14,966
군포	8,766,298	0.009311250	17,187
의왕	5,596,238	0.005944125	10,972
하남	3,170,174	0.003367246	6,215
양주	3,766,241	0.004000367	7,384
여주	3,625,734	0.003851126	7,109
화성	10,302,769	0.010943235	20,200
파주	5,629,605	0.005979566	11,037
광주	4,603,166	0.004889319	9,025
연천	1,031,919	0.001096068	2,023
포천	3,546,861	0.003767350	6,954
가평	1,352,028	0.001436076	2,651
양평	2,283,929	0.002425908	4,478
이천	20,131,539	0.021383005	39,470
용인	31,395,407	0.033347085	61,554
안성	3,993,769	0.004242039	7,830
김포	4,561,751	0.004845330	8,944

주 : 자치구를 제외한 상태에서 중앙정부에서 징수된 12.5%가 모두 시·군으로 배분된다는 가정에 의하여 계산한 결과임.

<표 3-20> 징세지주의에 의한 기초자치단체별 배분결과(중앙정부2)

경기	주민세액 (단위 : 천원)	비중 (단위 : %)	배분액 (단위 : 백만원)
수원	49,915,867	0.02270406	41,909
성남	29,629,902	0.01347706	24,877
의정부	7,343,147	0.00334000	6,165
안양	23,939,652	0.01088887	20,099
부천	26,163,997	0.01190060	21,967
광명	8,505,921	0.00386889	7,141
동두천	1,759,030	0.00080009	1,477
안산	27,318,240	0.01242560	22,936
고양	17,536,081	0.00797622	14,723
과천	6,900,964	0.00313888	5,794
구리	4,737,320	0.00215475	3,977
평택	16,315,706	0.00742114	13,698
남양주	6,208,222	0.00282379	5,212
오산	3,726,294	0.00169489	3,129
시흥	7,633,548	0.00347209	6,409
군포	8,766,298	0.00398732	7,360
의왕	5,596,238	0.00254543	4,699
하남	3,170,174	0.00144194	2,662
양주	3,766,241	0.00171306	3,162
여주	3,625,734	0.00164915	3,044
화성	10,302,769	0.00468618	8,650
파주	5,629,605	0.00256061	4,727
광주	4,603,166	0.00209373	3,865
연천	1,031,919	0.00046936	866
포천	3,546,861	0.00161328	2,978
가평	1,352,028	0.00061497	1,135
양평	2,283,929	0.00103884	1,918
이천	20,131,539	0.00915676	16,902
용인	31,395,407	0.01428009	26,359
안성	3,993,769	0.00181655	3,353
김포	4,561,751	0.00207490	3,830

주 : 자치구에도 배분된다는 가정하에 중앙정부에서 징수된 12.5%를 배분한 결과임.

## ② 광역자치단체가 배분하는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배분하는 경우란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중앙정부로부터 광역자치단체로 배분된 배분액중 50%를 광역자치단체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앙정부가 직접 배분하는 경우와 광역자치단체가 배분하는 경우의 차이점은 광역자치단체의 존재의의를 찾을 수 있다는데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분석된 결과는 <표 3-21>과 같다.

### 2) 배분공식에 의한 배분

#### 가) 배분기준

독일의 공동세방식에 의하면 대상세목중 소득세만이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되고 있다. 소득세 기초자치단체의 뜻을 배분하는 기준은 주민의 소득세 납부실적으로 근거로 하고 있다. 소득세의 납세실적에 대한 통계를 기초로 하여 매 3년마다 배분비율을 결정하게 된다. 이 역시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할 수 있는 근거는 소득세 배분액이 주거지위주의 기초자치단체가 근무지위주의 대도시보다 더 많은 배분몫을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영업세의 경우에는 대도시가 작은 도시보다 많은 수입을 받을 수 있어 어느정도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할 경우 기초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배분공식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표 3-21> 징세지주의에 의한 기초자치단체별 배분결과(광역)

경 기	주민세액 (단위 : 천원)	비중 (단위 : %)	배분액 (단위 : 백만원)
수 원	49,915,867	0.1420521	26,217
성 남	29,629,902	0.0843217	15,563
의정부	7,343,147	0.0208973	3,857
안 양	23,939,652	0.0681282	12,574
부 천	26,163,997	0.0744583	13,742
광 명	8,505,921	0.0242064	4,468
동두천	1,759,030	0.0050059	924
안 산	27,318,240	0.0777431	14,348
고 양	17,536,081	0.0499047	9,211
과 천	6,900,964	0.0196390	3,625
구 리	4,737,320	0.0134816	2,488
평 택	16,315,706	0.0464317	8,570
남양주	6,208,222	0.0176675	3,261
오 산	3,726,294	0.0106044	1,957
시 흥	7,633,548	0.0217238	4,009
군 포	8,766,298	0.0249474	4,604
의 왕	5,596,238	0.0159259	2,939
하 남	3,170,174	0.0090218	1,665
양 주	3,766,241	0.0107181	1,978
여 주	3,625,734	0.0103182	1,904
화 성	10,302,769	0.0293199	5,411
파 주	5,629,605	0.0160209	2,957
광 주	4,603,166	0.0130998	2,418
연 천	1,031,919	0.0029367	542
포 천	3,546,861	0.0100938	1,863
가 평	1,352,028	0.0038476	710
양 평	2,283,929	0.0064997	1,200
이 천	20,131,539	0.0572909	10,574
용 인	31,395,407	0.0893460	16,490
안 성	3,993,769	0.0113656	2,098
김 포	4,561,751	0.0129820	2,396

주 : 광역자치단체로 배분된 배분액 중 50%규모를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한다는 가정에 의하여 계산된 것임.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가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기 위하여 사용한 배분공식과 동일한 재정력환산지수와 역재정력배분지수를 이용하여 기초자치단체에도 배분하고자 한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광역시와 자치구와의 관계이다. 즉, 현재 자치구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정력지수를 구할 수 없다. 다만 자치구는 조정교부금을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고 있는데 이때 지방재정수요액과 지방재정수입액을 산출하므로 이 자료를 통하여 재정력지수를 산출한 후 사용하고자 한다.<sup>50)</sup>

#### 나) 배분결과

##### ① 중앙정부가 직접 배분하는 경우

현재 자치구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배분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시·광역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자치구를 제외한 상태에서 시·군에 12.5%를 모두 배분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계산한 결과는 <표 3-22>, <표 3-23>과 같다. <표 3-22>는 재정력환산지수에 의하여 계산한 결과이며, <표 3-23>은 역재정력배분지수에 의하여 배분한 결과이다.

---

50) 조정교부금의 배분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계산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교부세계산에 사용하는 방법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치한다는 가정하에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한다.

<표 3-22> 배분공식에 의한 기초자치단체별 배분결과(중앙정부1)

(단위 : 백만원)

경 기	재정력지수	비중	역순	재정력환산지수	소득세
수 원	1.184454145	0.018851896	0.981148104	0.006132176	11,319
성 남	1.345982447	0.021422797	0.978577203	0.006116108	11,289
의정부	0.846121015	0.013466950	0.986533050	0.006165832	11,381
안 양	1.373958146	0.021868061	0.978131939	0.006113325	11,284
부 천	1.119885746	0.017824219	0.982175781	0.006138599	11,331
광 명	0.771746628	0.012283200	0.987716800	0.006173230	11,395
동두천	0.387386783	0.006165689	0.993834311	0.006211464	11,465
안 산	1.338073340	0.021296915	0.978703085	0.006116894	11,291
고 양	1.685582754	0.026827911	0.973172089	0.006082326	11,227
과 천	2.869319510	0.045668389	0.954331611	0.005964573	11,010
구 리	0.817024863	0.013003853	0.986996147	0.006168726	11,387
평 택	0.695966709	0.011077079	0.988922921	0.006180768	11,409
남양주	0.606175779	0.009647957	0.990352043	0.006189700	11,425
오 산	0.612957557	0.009755896	0.990244104	0.006189026	11,424
시 흥	0.709261871	0.011288686	0.988711314	0.006179446	11,406
군 포	1.035285155	0.016477707	0.983522293	0.006147014	11,347
의 왕	0.689755436	0.010978220	0.989021780	0.006181386	11,410
하 남	0.602800875	0.009594242	0.990405758	0.006190036	11,426
양 주	0.610275580	0.009713210	0.990286790	0.006189292	11,425
여 주	0.557795635	0.008877934	0.991122066	0.006194513	11,434
화 성	0.796142814	0.012671492	0.987328508	0.006170803	11,390
파 주	0.581732797	0.009258920	0.990741080	0.006192132	11,430
광 주	0.791584117	0.012598935	0.987401065	0.006171257	11,391
연 천	0.23394787	0.003723539	0.996276461	0.006226728	11,494
포 천	0.554995566	0.008833367	0.991166633	0.006194791	11,435
가 평	0.264085508	0.004203213	0.995796787	0.006223730	11,488
양 평	0.252479358	0.004018488	0.995981512	0.006224884	11,490
이 천	0.745887972	0.011871631	0.988128369	0.006175802	11,400
용 인	1.464539134	0.023309758	0.976690242	0.006104314	11,268
안 성	0.434924571	0.006922305	0.993077695	0.006206736	11,457
김 포	0.647062101	0.010298708	0.989701292	0.006185633	11,418

주 : 자치구에는 배분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시·군에 12.5%를 모두 배분하고, 재정력환산지수를 기준으로 배분한 결과임.

<표 3-23> 배분공식에 의한 기초자치단체별 배분결과(중앙정부2)

(단위 : 백만원)

경기	재정력지수	역수	역재정력배분지수	소득세
수원	1.184454145	0.844270759	0.001115619	2,059
성남	1.345982447	0.742951739	0.000981736	1,812
의정부	0.846121015	1.181864038	0.001561715	2,883
안양	1.373958146	0.727824209	0.000961747	1,775
부천	1.119885746	0.892948235	0.001179941	2,178
광명	0.771746628	1.295762060	0.001712219	3,161
동두천	0.387386783	2.581399377	0.003411060	6,296
안산	1.338073340	0.747343191	0.000987539	1,823
고양	1.685582754	0.593266630	0.000783942	1,447
과천	2.869319510	0.348514690	0.000460527	850
구리	0.817024863	1.223952961	0.001617331	2,985
평택	0.695966709	1.436850336	0.001898653	3,505
남양주	0.606175779	1.649686502	0.002179895	4,024
오산	0.612957557	1.631434329	0.002155777	3,979
시흥	0.709261871	1.409916479	0.001863063	3,439
군포	1.035285155	0.965917453	0.001276363	2,356
의왕	0.689755436	1.449789227	0.001915751	3,536
하남	0.602800875	1.658922608	0.002192100	4,046
양주	0.610275580	1.638603989	0.002165251	3,997
여주	0.557795635	1.792771290	0.002368967	4,373
화성	0.796142814	1.256056052	0.001659752	3,064
파주	0.581732797	1.719002274	0.002271489	4,193
광주	0.791584117	1.263289622	0.001669310	3,081
연천	0.233947870	4.274456522	0.005648265	10,426
포천	0.554995566	1.801816198	0.002380919	4,395
가평	0.264085508	3.786652314	0.005003681	9,236
양평	0.252479358	3.960719832	0.005233694	9,661
이천	0.745887972	1.340683907	0.001771579	3,270
용인	1.464539134	0.682808658	0.000902263	1,665
안성	0.434924571	2.299249264	0.003038227	5,608
김포	0.647062101	1.545446717	0.002042153	3,770

주 : 자치구에는 배분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시·군에 12.5%를 모두 배분하되 역재정력배분지수에 의하여 배분한 결과임.

다음으로는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배분하되 자치구에도 배분한다는 가정하에 배분한 결과이며 이는 <표 3-24>, <표 3-25>와 같다.

<표 3-24>는 재정력환산지수를 이용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한 결과를 의미하며, <표 3-25>는 역재정력배분지수를 이용한 것이다.

<표 3-24> 배분공식에 의한 기초자치단체별 배분결과(중앙정부3)

(단위 : 백만원)

경 기	재정력지수	비중	역순	재정력환산지수	배분액
수 원	1.184454145	0.012314838	0.987685162	0.004331952	7,996
성 남	1.345982447	0.013994257	0.986005743	0.004324587	7,983
의정부	0.846121015	0.008797169	0.991202831	0.004347381	8,025
안 양	1.373958146	0.014285122	0.985714878	0.004323311	7,980
부 천	1.119885746	0.011643517	0.988356483	0.004334897	8,002
광 명	0.771746628	0.008023894	0.991976106	0.004350772	8,031
동두천	0.387386783	0.004027683	0.995972317	0.004368300	8,063
안 산	1.338073340	0.013912026	0.986087974	0.004324947	7,983
고 양	1.685582754	0.017525101	0.982474899	0.004309100	7,954
과 천	2.869319510	0.029832480	0.970167520	0.004255121	7,854
구 리	0.817024863	0.008494655	0.991505345	0.004348708	8,027
평 택	0.695966709	0.007236006	0.992763994	0.004354228	8,037
남양주	0.606175779	0.006302445	0.993697555	0.004358323	8,045
오 산	0.612957557	0.006372955	0.993627045	0.004358013	8,044
시 흥	0.709261871	0.007374237	0.992625763	0.004353622	8,036
군 포	1.035285155	0.010763919	0.989236081	0.004338755	8,009
의 왕	0.689755436	0.007171427	0.992828573	0.004354511	8,038
하 남	0.602800875	0.006267355	0.993732645	0.004358477	8,045
양 주	0.61027558	0.006345070	0.993654930	0.004358136	8,045
여 주	0.557795635	0.005799433	0.994200567	0.004360529	8,049
화 성	0.796142814	0.008277543	0.991722457	0.004349660	8,029
파 주	0.581732797	0.006048309	0.993951691	0.004359437	8,047
광 주	0.791584117	0.008230146	0.991769854	0.004349868	8,029
연 천	0.233947870	0.002432369	0.997567631	0.004375297	8,076
포 천	0.554995566	0.005770321	0.994229679	0.004360656	8,049
가 평	0.264085508	0.002745712	0.997254288	0.004373922	8,074
양 평	0.252479358	0.002625042	0.997374958	0.004374452	8,075
이 천	0.745887972	0.007755040	0.992244960	0.004351952	8,033
용 인	1.464539134	0.015226898	0.984773102	0.004319180	7,973
안 성	0.434924571	0.004521936	0.995478064	0.004366132	8,059
김 포	0.647062101	0.006727542	0.993272458	0.004356458	8,041

주 :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한다는 가정 하에 12.5%를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 단체에 배분하되 재정력환산지수에 의하여 배분한 결과임

<표 3-25> 배분공식에 의한 기초자치단체별 배분결과(중앙정부4)

(단위 : 백만원)

경 기	재정력지수	역수	역재정력배분지수	배분액
수 원	1.184454145	0.844270759	0.000902176	1,665
성 남	1.345982447	0.742951739	0.000793908	1,465
의정부	0.846121015	1.181864038	0.001262923	2,331
안 양	1.373958146	0.727824209	0.000777743	1,436
부 천	1.119885746	0.892948235	0.000954192	1,761
광 명	0.771746628	1.295762060	0.001384633	2,556
동두천	0.387386783	2.581399377	0.002758446	5,092
안 산	1.338073340	0.747343191	0.000798600	1,474
고 양	1.685582754	0.593266630	0.000633956	1,170
과 천	2.869319510	0.348514690	0.000372418	687
구 리	0.817024863	1.223952961	0.001307899	2,414
평 택	0.695966709	1.436850336	0.001535398	2,834
남양주	0.606175779	1.649686502	0.001762831	3,254
오 산	0.612957557	1.631434329	0.001743327	3,218
시 흥	0.709261871	1.409916479	0.001506617	2,781
군 포	1.035285155	0.965917453	0.001032166	1,905
의 왕	0.689755436	1.449789227	0.001549224	2,860
하 남	0.602800875	1.658922608	0.001772701	3,272
양 주	0.610275580	1.638603989	0.001750989	3,232
여 주	0.557795635	1.792771290	0.001915730	3,536
화 성	0.796142814	1.256056052	0.001342203	2,478
파 주	0.581732797	1.719002274	0.001836901	3,391
광 주	0.791584117	1.263289622	0.001349933	2,492
연 천	0.233947870	4.274456522	0.004567623	8,431
포 천	0.554995566	1.801816198	0.001925395	3,554
가 평	0.264085508	3.786652314	0.004046362	7,469
양 평	0.252479358	3.960719832	0.004232368	7,812
이 천	0.745887972	1.340683907	0.001432636	2,644
용 인	1.464539134	0.682808658	0.000729640	1,347
안 성	0.434924571	2.299249264	0.002456945	4,535
김 포	0.647062101	1.545446717	0.001651442	3,048

주 :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한다는 가정하에 12.5%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 단체에 배분하되 역재정력배분지수에 의하여 배분한 결과임

## ② 광역자치단체가 배분하는 경우

이 방식은 광역자치단체가 중앙으로부터 배분받은 배분액의 50%를 기초자치단체에 배분공식에 의하여 배분한다는 의미를 말한다. 이때의 배분공식은 재정력환산지수와 역재정력배분지수이다.

먼저 재정력환산지수를 사용하여 광역자치단체 배분액의 50%를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할 경우 그 결과는 <표 3-26>과 같다.

그리고 동일한 방식에 의하되 재정력환산지수가 아닌 역재정력배분지수를 사용하여 배분한 결과는 <표 3-27>과 같다.

<표 3-26> 배분공식에 의한 기초자치단체별 배분결과(광역1)

(단위 : 백만 원)

경 기	재정력지수	비중	역순	재정력환산지수	소득세
수 원	1.184454145	0.044482879	0.955517121	0.031850571	3,656
성 남	1.345982447	0.050549170	0.949450830	0.031648361	3,633
의 정 부	0.846121015	0.031776577	0.968223423	0.032274114	3,705
안 양	1.373958146	0.051599814	0.948400186	0.031613340	3,629
부 천	1.119885746	0.042057974	0.957942026	0.031931401	3,665
광 명	0.771746628	0.028983403	0.971016597	0.032367220	3,715
동 두 천	0.387386783	0.014548541	0.985451459	0.032848382	3,770
안 산	1.338073340	0.050252139	0.949747861	0.031658262	3,634
고 양	1.685582754	0.063303061	0.936696939	0.031223231	3,584
과 천	2.869319510	0.107758998	0.892241002	0.029741367	3,414
구 리	0.817024863	0.030683854	0.969316146	0.032310538	3,709
평 택	0.695966709	0.026137443	0.973862557	0.032462085	3,726
남 양 주	0.606175779	0.022765291	0.977234709	0.032574490	3,739
오 산	0.612957557	0.023019985	0.976980015	0.032566000	3,738
시 흥	0.709261871	0.026636751	0.973363249	0.032445442	3,724
군 포	1.035285155	0.038880749	0.961119251	0.032037308	3,677
의 왕	0.689755436	0.025904175	0.974095825	0.032469861	3,727
하 남	0.602800875	0.022638545	0.977361455	0.032578715	3,740
양 주	0.610275580	0.022919262	0.977080738	0.032569358	3,738
여 주	0.557795635	0.020948346	0.979051654	0.032635055	3,746
화 성	0.796142814	0.029899616	0.970100384	0.032336679	3,712
파 주	0.581732797	0.021847321	0.978152679	0.032605089	3,743
광 주	0.791584117	0.029728412	0.970271588	0.032342386	3,712
연 천	0.233947870	0.008786051	0.991213949	0.033040465	3,793
포 천	0.554995566	0.020843188	0.979156812	0.032638560	3,746
가 평	0.264085508	0.009917888	0.990082112	0.033002737	3,788
양 평	0.252479358	0.009482012	0.990517988	0.033017266	3,790
이 천	0.745887972	0.028012266	0.971987734	0.032399591	3,719
용 인	1.464539134	0.055001637	0.944998363	0.031499945	3,616
안 성	0.434924571	0.016333851	0.983666149	0.032788872	3,764
김 포	0.647062101	0.024300801	0.975699199	0.032523307	3,733

주 : 광역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배분받은 배분규모의 50%를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한다는 가정에 입각하여 계산한 것임. 재정력환산지수에 의하여 배분한 결과임.

<표 3-27> 배분공식에 의한 기초자치단체별 배분결과(광역2)

(단위 : 백만원)

경 기	재정력지수	역수	역재정력배분지수	배분액
수 원	1.184454145	0.844270759	0.017320445	939
성 남	1.345982447	0.742951739	0.015241858	827
의 정 부	0.846121015	1.181864038	0.024246264	1,315
안 양	1.373958146	0.727824209	0.014931513	810
부 천	1.119885746	0.892948235	0.018319077	993
광 명	0.771746628	1.295762060	0.026582913	1,442
동 두 천	0.387386783	2.581399377	0.052958114	2,872
안 산	1.338073340	0.747343191	0.015331950	831
고 양	1.685582754	0.593266630	0.012171027	660
과 천	2.869319510	0.348514690	0.007149874	388
구 리	0.817024863	1.223952961	0.025109730	1,362
평 택	0.695966709	1.436850336	0.029477377	1,599
남 양 주	0.606175779	1.649686502	0.033843769	1,835
오 산	0.612957557	1.631434329	0.033469321	1,815
시 홍	0.709261871	1.409916479	0.028924822	1,569
군 포	1.035285155	0.965917453	0.019816061	1,075
의 왕	0.689755436	1.449789227	0.029742822	1,613
하 남	0.602800875	1.658922608	0.034033251	1,846
양 주	0.610275580	1.638603989	0.033616409	1,823
여 주	0.557795635	1.792771290	0.036779193	1,995
화 성	0.796142814	1.256056052	0.025768333	1,397
파 주	0.581732797	1.719002274	0.035265801	1,912
광 주	0.791584117	1.263289622	0.025916732	1,405
연 천	0.233947870	4.274456522	0.087691644	4,756
포 천	0.554995566	1.801816198	0.036964752	2,005
가 평	0.264085508	3.786652314	0.077684207	4,213
양 평	0.252479358	3.960719832	0.081255250	4,407
이 천	0.745887972	1.340683907	0.027504497	1,492
용 인	1.464539134	0.682808658	0.014008006	760
안 성	0.434924571	2.299249264	0.047169727	2,558
김 포	0.647062101	1.545446717	0.031705262	1,719

주 : 광역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배분받은 배분규모의 50%를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한다는 가정에 입각하여 계산한 것임. 역재정력배분지수에 의하여 배분한 결과임.

### 3) 절충안

#### 가) 배분기준

절충안이란 일부는 소득세 부담비율에 의하여 배분하고 일부는 배분 공식에 의하여 배분하는 대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별 소득세 부담비율을 알 수 없으므로 대용변수(Proxy)로서 각 개별자치단체의 주민세 소득할 부담비율을 사용하여 징세지주의에 입각하여 배분을 하고, 배분공식은 재정력환산지수와 역재정력배분지수를 사용하고자 한다.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배분하되 배분규모는 소득세액의 12.5%이다. 이때 자치구는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도 자치구에 배분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자치구를 포함하여 배분하는 경우와 자치구를 포함하지 않고 배분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 자치구의 포함여부는 시·군에 대한 배분규모에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적 판단이 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배분규모 12.5%중 6.25%는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하고 나머지 6.25%는 배분공식에 의하여 배분하되, 본 연구의 배분공식은 재정력환산지수와 역재정력배분지수의 두가지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경우의 수는 크게 4가지가 가능하다.

#### 나) 배분결과

##### ① 중앙정부가 직접 배분하는 경우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배분하되 자치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자치구가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고 특별시·광역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자치구에는 특별시·광역시가 배분할 수도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자치구를 포함하지 않고 배분할 경우 다른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경우 자치구를 포함하여 배분할 경우보다 많은 규모를 배분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배분하되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 배분규모인 12.5%의 절반인 6.25%를 배분하고, 나머지 6.25%는 배분공식에 의하여 배분한 결과는 <표 3-28>, <표 3-29>와 같다. <표 3-28>은 징세지주의(기초자치단체별 주민세 부담비율)에 의하여 6.25%를 배분하고 나머지 6.25%는 재정력환산지수에 의하여 배분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으며 <표 3-29>는 징세지주의(기초자치단체별 주민세 부담비율)에 의하여 6.25%를 배분하고 나머지 6.25%는 역재정력배분지수에 의하여 배분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3-28> 절충안에 의한 기초자치단체별 배분결과(중앙정부1)

(단위 : 백만원)

경 기	징세지	재정력환산지수	배분액
수 원	48,933	5,660	54,592
성 남	29,046	5,645	34,691
의정부	7,199	5,691	12,889
안 양	23,468	5,642	29,110
부 천	25,649	5,666	31,314
광 명	8,338	5,698	14,036
동두천	1,724	5,733	7,457
안 산	26,780	5,646	32,426
고 양	17,191	5,614	22,804
과 천	6,765	5,505	12,270
구 리	4,644	5,694	10,338
평 택	15,994	5,705	21,699
남양주	6,086	5,713	11,798
오 산	3,653	5,712	9,365
시 흥	7,483	5,703	13,186
군 포	8,594	5,674	14,267
의 왕	5,486	5,705	11,191
하 남	3,108	5,713	8,821
양 주	3,692	5,713	9,405
여 주	3,554	5,717	9,271
화 성	10,100	5,695	15,795
파 주	5,519	5,715	11,234
광 주	4,512	5,696	10,208
연 천	1,012	5,747	6,759
포 천	3,477	5,718	9,195
가 평	1,325	5,744	7,069
양 평	2,239	5,745	7,984
이 천	19,735	5,700	25,435
용 인	30,777	5,634	36,411
안 성	3,915	5,729	9,644
김 포	4,472	5,709	10,181

주 : 자치구에는 배분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시·군에 12.5%를 모두 배분하도록 정세지주의에 의하여 6.25%를 배분하고 나머지 6.25%는 재정력환산지수에 의하여 배분한 결과임.

<표 3-29> 절충안에 의한 기초자치단체별 배분결과(중앙정부2)

(단위 : 백만원)

경 기	정세지	역재정력배분지수	배분액
수 원	48,933	1,030	49,962
성 남	29,046	906	29,952
의 정 부	7,199	1,442	8,640
안 양	23,468	888	24,356
부 천	25,649	1,089	26,738
광 명	8,338	1,581	9,919
동 두 천	1,724	3,148	4,872
안 산	26,780	912	27,692
고 양	17,191	724	17,914
과 천	6,765	425	7,190
구 리	4,644	1,493	6,137
평 택	15,994	1,753	17,747
남 양 주	6,086	2,012	8,098
오 산	3,653	1,990	5,642
시 흥	7,483	1,720	9,203
군 포	8,594	1,178	9,772
의 왕	5,486	1,768	7,254
하 남	3,108	2,023	5,131
양 주	3,692	1,999	5,691
여 주	3,554	2,187	5,741
화 성	10,100	1,532	11,632
파 주	5,519	2,097	7,615
광 주	4,512	1,541	6,053
연 천	1,012	5,213	6,225
포 천	3,477	2,198	5,675
가 평	1,325	4,618	5,943
양 평	2,239	4,831	7,069
이 천	19,735	1,635	21,370
용 인	30,777	833	31,610
안 성	3,915	2,804	6,719
김 포	4,472	1,885	6,357

주 : 자치구에는 배분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시·군에 12.5%를 모두 배분하도록 정세지주의에 의하여 6.25%를 배분하고 나머지 6.25%는 역재정력배분지수에 의하여 배분한 결과임.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배분하되, 자치구를 포함하여 배분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세지주의(기초자치단체별 주민 세 소득할 부담비율)와 재정력환산지수를 사용하여 배분한 결과는 <표 3-30>과 같다. 또한 동일한 방식에 의하여 배분하되 역재정력배분지수를 사용하여 배분한 결과는 <표 3-31>과 같다.

<표 3-30> 절충안에 의한 기초자치단체별 배분결과(중앙정부3)

(단위 : 백만원)

경 기	징세지	재정력환산지수	계
수 원	20,954	3,998	24,952
성 남	12,438	3,992	16,430
의정부	3,083	4,013	7,095
안 양	10,050	3,990	14,040
부 천	10,983	4,001	14,984
광 명	3,571	4,016	7,586
동두천	738	4,032	4,770
안 산	11,468	3,992	15,459
고 양	7,362	3,977	11,339
과 천	2,897	3,927	6,824
구 리	1,989	4,014	6,002
평 택	6,849	4,019	10,868
남양주	2,606	4,023	6,629
오 산	1,564	4,022	5,586
시 흥	3,204	4,018	7,222
군 포	3,680	4,005	7,685
의 왕	2,349	4,019	6,368
하 남	1,331	4,023	5,353
양 주	1,581	4,023	5,604
여 주	1,522	4,025	5,547
화 성	4,325	4,015	8,340
파 주	2,363	4,024	6,387
광 주	1,932	4,015	5,947
연 천	433	4,038	4,471
포 천	1,489	4,025	5,513
가 평	568	4,037	4,605
양 평	959	4,038	4,996
이 천	8,451	4,017	12,468
용 인	13,180	3,987	17,166
안 성	1,677	4,030	5,706
김 포	1,915	4,021	5,935

주 :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한다는 가정 하에 12.5%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 단체에 배분하되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6.25%를 배분하고 나머지 6.25%는 재정력환산지수에 의하여 배분한 결과임.

<표 3-31> 절충안에 의한 기초자치단체별 배분결과(중앙정부4)

(단위 : 백만원)

경 기	징세지주의	역재정력배분지수	계
수 원	20,954	833	21,787
성 남	12,438	733	13,171
의정부	3,083	1,166	4,249
안 양	10,050	718	10,768
부 천	10,983	881	11,864
광 명	3,571	1,278	4,849
동두천	738	2,546	3,284
안 산	11,468	737	12,205
고 양	7,362	585	7,947
과 천	2,897	344	3,241
구 리	1,989	1,207	3,196
평 택	6,849	1,417	8,266
남양주	2,606	1,627	4,233
오 산	1,564	1,609	3,173
시 흥	3,204	1,391	4,595
군 포	3,680	953	4,633
의 왕	2,349	1,430	3,779
하 남	1,331	1,636	2,967
양 주	1,581	1,616	3,197
여 주	1,522	1,768	3,290
화 성	4,325	1,239	5,564
파 주	2,363	1,695	4,058
광 주	1,932	1,246	3,178
연 천	433	4,216	4,649
포 천	1,489	1,777	3,266
가 평	568	3,735	4,303
양 평	959	3,906	4,865
이 천	8,451	1,322	9,773
용 인	13,180	673	13,853
안 성	1,677	2,268	3,945
김 포	1,915	1,524	3,439

주 :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한다는 가정하에 12.5%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 단체에 배분하되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6.25%를 배분하고 나머지 6.25%는 재정력환산지수에 의하여 배분한 결과임.

## ② 광역자치단체가 배분하는 경우

다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경우를 의미 한다. 이러한 방식은 일본의 지방소비세의 배분방식과 유사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환경적 여건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지방소득세의 일정규모를 배분할 때 많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되는 규모는 중앙정부가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중앙정부가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해 되, 절충안에 의하여 배분하는 방식은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국세 소득세 부담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배분공식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배분공식은 다시 재정력환산지수와 역재정력배분지수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식 역시 재정력환산지수와 역재정력배분지수에 따라 달라진다.

<표 3-32>는 광역자치단체의 배분액중 50%를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식으로서 주민세 소득할 부담비율에 따라 50%를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배분공식중 재정력환산지수에 의하여 배분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표 3-33>은 동일한 방식에 의하여 배분하되 배분공식을 역재정력배분지수에 의하여 배분한 경우이다.

<표 3-32> 절충안에 의한 기초자치단체별 배분결과(광역1)

(단위 : 백만원)

경기	정세지	재정력환산지수	배분액
수원	10,631	2,384	13,014
성남	6,310	2,368	8,679
의정부	1,564	2,415	3,979
안양	5,098	2,366	7,464
부천	5,572	2,390	7,962
광명	1,812	2,422	4,234
동두천	375	2,458	2,833
안산	5,818	2,369	8,187
고양	3,735	2,337	6,071
과천	1,470	2,226	3,695
구리	1,009	2,418	3,427
평택	3,475	2,429	5,904
남양주	1,322	2,438	3,760
오산	794	2,437	3,231
시흥	1,626	2,428	4,054
군포	1,867	2,398	4,265
의왕	1,192	2,430	3,622
하남	675	2,438	3,113
양주	802	2,437	3,239
여주	772	2,442	3,214
화성	2,194	2,420	4,614
파주	1,199	2,440	3,639
광주	980	2,420	3,401
연천	220	2,473	2,692
포천	755	2,443	3,198
가평	288	2,470	2,758
양평	486	2,471	2,957
이천	4,287	2,425	6,712
용인	6,686	2,357	9,044
안성	851	2,454	3,304
김포	972	2,434	3,405

주 : 광역자치단체가 중앙으로부터 배분받은 배분규모의 50%를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한다는 가정에 입각하여 계산한 것임. 정세지주의에 의하여 6.25%를 배분하고 나머지 6.25%는 재정력환산지수에 의하여 배분한 결과임.

<표 3-33> 절충안에 의한 기초자치단체별 배분결과(광역2)

(단위 : 백만원)

경 기	징세지	역재정력배분지수	배분액
수 원	8,480	1,034	9,514
성 남	5,034	910	5,944
의정부	1,248	1,447	2,695
안 양	4,067	891	4,959
부 천	4,445	1,094	5,539
광 명	1,445	1,587	3,032
동두천	299	3,162	3,460
안 산	4,641	915	5,556
고 양	2,979	727	3,706
과 천	1,172	427	1,599
구 리	805	1,499	2,304
평 택	2,772	1,760	4,532
남양주	1,055	2,020	3,075
오 산	633	1,998	2,631
시 흥	1,297	1,727	3,024
군 포	1,489	1,183	2,672
의 왕	951	1,776	2,726
하 남	539	2,032	2,570
양 주	640	2,007	2,647
여 주	616	2,196	2,812
화 성	1,750	1,538	3,289
파 주	956	2,105	3,062
광 주	782	1,547	2,329
연 천	175	5,235	5,410
포 천	603	2,207	2,809
가 평	230	4,638	4,867
양 평	388	4,851	5,239
이 천	3,420	1,642	5,062
용 인	5,334	836	6,170
안 성	679	2,816	3,494
김 포	775	1,893	2,668

주 : 광역자치단체가 중앙으로부터 배분받은 배분규모의 50%를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한다는 가정에 입각하여 계산한 것임.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6.25%를 배분하고 나머지 6.25%는 역재정력배분지수에 의하여 배분한 결과임.

# 제4장 지방소득세의 도입을 위한 대안별 평가

## 제1절 세수확충효과

### 1. 광역자치단체

#### 가. 대안의 요약

세원을 공동이용하여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지방소득세의 재원으로 배분되는 규모만큼 지방재정은 확충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세 소득세액의 25%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시뮬레이션을 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국세 소득세액의 25%인 3조 6,920억 원 만큼의 세수확충효과가 발생한다. 물론 국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되는 만큼 세율을 인상(소득세 총과표 대비 2.2%인상)하여 징수한 후 이를 지방자치단체로 배분하는 것이므로 세수의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각 대안별 세수규모를 요약하면 <표 4-1>과 같다.

<표 4-1> 각 대안별 세수규모(광역자치단체)

(단위 : 10억 원)

구분	$\alpha = 12.5\%$					$\alpha = 25\%$				
	정세지 (A)	배분공식		절충		정세지 (F)	배분공식		절충	
		(1)(B)	(2)(C)	(1)(D)	(2)(E)		(1)(G)	(2)(H)	(1)(I)	(2)(J)
서울	920	119	73	519	497	1,840	238	146	1,039	993
부산	148	120	81	134	114	296	241	162	268	229
대구	84	121	82	102	83	168	241	164	205	166
인천	82	121	82	101	82	165	241	164	203	164
광주	37	123	100	80	68	74	245	200	160	137
대전	38	121	85	80	62	76	242	171	159	123
경기	185	115	54	150	119	369	230	108	299	239
강원	28	127	209	78	119	58	255	418	156	238
충북	31	126	164	79	98	63	252	328	158	195
충남	33	126	172	80	103	66	253	344	160	205
전북	36	126	153	81	94	72	252	305	162	189
전남	32	127	191	80	112	64	254	382	159	223
경북	67	126	147	96	107	134	251	295	192	214
경남	110	123	99	116	105	220	245	199	232	209
제주	13	126	153	70	83	27	252	306	139	166
계	1,846	1,846	1,846	1,846	1,846	3,692	3,692	3,692	3,692	3,692

주 : (1)은 재정력환산지수에 의한 배분을 의미하며, (2)는 역재정력배분지수에 의한 배분을 의미함.

먼저 정세지주의에 의하여 지방소득세를 도입한 후 광역자치단체에 만 재원을 배분하고 기초자치단체에는 배분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의 세수규모는 <표 4-1>의 F와 같다. F에 의하면 1996년을 기준으로 할 때 서울이 1조 8,404억원의 세수증가현상이 발생하며, 그 다음이 경기로서 3,691억원, 그리고 가장 적은 세수증가현상이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주로서 약 267억원이다. 또한 지방소득세 세수를 기초자치단체에도 배분한다고 하면(A 참조), 서울의 경우 9,202억원의 세수증가현상이 발생하고, 경기가 1,846억원, 그리고 가장 적은 세수증가현상이 나타나는 제주

의 경우에는 134억원의 세수증가 현상이 발생한다.

배분공식에 의하여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경우에는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하는 경우와는 다른 형태의 세수증가효과가 발생한다. 먼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되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에 25% 모두가 배분된다. 이 경우 재정력환산지수에 의하여 배분할 경우 강원이 가장 많은 2,548억원의 세수증가현상이 발생하며, 그 다음은 전남으로서 2,540억원, 그리고 가장 적은 세수증가효과가 나타나는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로서 2,296억원의 세수증가효과가 발생한다(G 참조). 그리고 역재정력배분지수에 의하여 배분할 경우에는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인 강원과 전남 등에 더 많은 세수증가효과가 발생한다. 즉 강원의 경우에는 4,182억원, 전남의 경우에는 3,822억원의 세수증가현상이 발생하며, 가장 적은 세수증가현상이 나타나는 경기의 경우에는 1,084억원의 세수증가현상이 발생한다(H 참조). 기초자치단체도 배분한다고 하면, 재정력환산지수에 의하여 배분할 경우 강원이 가장 많은 1,274억원의 세수증가현상이 발생하며, 그 다음은 전남으로서 1,270억원, 그리고 가장 적은 세수증가효과가 나타나는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로서 1,148억원의 세수증가효과가 발생한다(B 참조). 그리고 역재정력배분지수에 의하여 배분할 경우에는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인 강원과 전남 등에 더 많은 세수증가효과가 발생한다. 즉 강원의 경우에는 2,091억원, 전남의 경우에는 1,911억원의 세수증가현상이 발생하며, 가장 적은 세수증가현상이 나타나는 경기의 경우에는 542억원의 세수증가현상이 발생한다(C 참조).

절충안에 의하여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며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배분공식을 재정력환산지수로 하면, 서울이 1조 395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경기로서 2,993억원이다. 가장 적은 자치

단체는 제주로서 1,392억원이다(I 참조). 배분공식을 역재정력배분지수로 할 경우 여전히 서울이 9,934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경기로서 2,388억원이 되며, 가장 적은 지방자치단체는 대전으로서 1,235억원이 된다(J 참조). 기초자치단체에도 배분하며, 배분공식을 재정력환산지수로 할 경우 서울이 5,197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경기로서 1,497억원이다. 가장 적은 지방자치단체는 제주로서 696억원이 된다(D 참조). 배분공식을 역재정력배분지수를 사용할 경우 서울이 4,967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경기로서 1,194억원이며, 가장 적은 지방자치단체는 대전으로서 617억원이다(E 참조).

보다 명확한 이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수를 100으로 하였을 경우 세수확충효과를 계산하면 <표 4-2>와 같다. <표 4-2>에 의하면 총계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12.5%가 광역자치단체로 배분되면 115.2정도의 세수확충효과가 있으며, 25%가 광역자치단체로 배분될 경우에는 130.4정도의 세수확충효과가 있다.

이를 대안별로 비교하면 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할 경우 서울이 120.0으로서 가장 많은 증가효과가 발생하며, 가장 적게 증가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경기의 109.3이다. 경기의 경우 세수의 배분액은 서울 다음으로 많으나 지방세의 규모가 너무 커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배분공식에 의하여 배분하되 재정력환산지수를 사용하여 배분하면 제주가 264.8로서 가장 많은 증가효과가 발생하며, 가장 적은 증가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서울로서 102.6이다. 배분공식을 역재정력배분지수로 할 경우에는 제주가 300.1로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하여 월등히 크며, 가장 적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로서 101.6이다. 절충안에 의할 경우에는 제

주가 191.5, 208.5로서 가장 크며 가장 적은 지방자치단체는 경기의 107.6, 106.0이다.

25%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할 경우에는 12.5%를 배분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2배정도의 증가효과가 발생한다.

**<표 4-2> 각 대안별 세수확충효과(광역자치단체)**

구분	정세지	배분공식		절충		정세지	배분공식		절충	
		(1)	(2)	(1)	(2)		(1)	(2)	(1)	(2)
서울	120.0	102.6	101.6	111.3	110.8	139.9	105.2	103.2	122.5	121.6
부산	112.2	109.9	106.7	111.1	109.4	124.5	119.9	113.4	122.1	118.9
대구	110.7	115.4	110.5	113.0	110.6	121.4	130.7	120.9	126.1	121.2
인천	111.6	117.1	111.6	114.2	111.6	123.3	134.0	123.1	128.6	123.1
광주	110.5	135.0	128.4	122.7	119.3	121.0	169.6	156.8	145.5	138.9
대전	109.4	130.0	121.1	119.8	115.4	118.8	160.0	142.4	139.4	130.5
경기	109.3	105.8	102.7	107.6	106.0	118.6	111.6	105.5	115.1	112.1
강원	114.3	164.7	206.4	139.7	160.6	129.5	229.8	312.8	179.4	221.2
충북	115.7	164.0	183.3	140.1	149.8	132.0	228.0	266.6	180.3	199.1
충남	112.8	148.9	166.8	131.1	140.0	125.6	198.2	233.5	162.1	179.6
전북	117.4	161.0	174.1	139.2	145.5	134.9	222.1	247.7	178.5	191.5
전남	115.0	159.7	189.8	137.6	152.7	130.1	219.4	279.6	174.8	204.9
경북	118.6	135.1	140.9	126.7	129.8	137.3	169.8	182.1	153.4	159.5
경남	118.1	120.3	116.3	119.1	117.3	136.3	140.4	132.8	138.2	134.4
제주	117.0	264.8	300.1	191.5	208.5	135.3	429.5	500.1	281.8	317.1
계	115.2	115.2	115.2	115.2	115.2	130.4	130.4	130.4	130.4	130.4

주 : (1)은 재정력환산지수에 의한 배분을 의미하며, (2)는 역재정력배분지수에 의한 배분을 의미함.

## 나. 대안별 비교

각 대안을 총계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모두 동일한 세수확충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어떤 대안이 선택되느냐에

따라 세수증가효과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할 경우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등이 많은 세수증가효과를 보이는 반면, 배분공식에 의하여 배분할 경우에는 강원, 전남, 충남, 충북, 전북, 제주, 경북 등에서 세수증가현상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절충안에 의한 경우에는 서울, 경기, 강원, 부산, 전남, 경북, 경남 등에서 세수증가현상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가 발생하는 이유는 배분시 소득세의 부담비율에 따라 배분하느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재정력을 기준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어떠한 방식을 선택하느냐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문제이다. 즉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문제에 대한 해결은 기존의 지방교부세에 일임하고 지방소득세를 지방세목화할 것인지, 아니면 사전적 조정제도로서 지방소득세를 활용할 것인지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니면 이러한 두가지의 판단이 곤란할 경우 양자를 조화시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지방소득세 도입의 일차적인 목적이 지방세의 확충에 있다고 할 때 지방소득세를 지방세목화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형태가 되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에 주안점을 둘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일 지방세로서 지방세법하에 규정하기를 원한다면 정세지주의에 입각한 배분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반면 재정조정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배분공식에 의하여 배분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새로운 방식으로서 제안한 절충안은 이러한 두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대안에 의하여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지방소득세를 지방세목화 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 기초자치단체

### 가. 대안의 요약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여 그 재원을 기초자치단체에 12.5%만큼 배분한다고 할 경우 기초자치단체 역시 세수증감효과가 발생한다.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식은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배분하는 방식, 광역자치단체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경기만 요약하여 정리하면 <표 4-3>과 같다.<sup>51)</sup> 먼저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하되, 중앙정부가 자치구를 제외한 전체 시·군에 배분한다고 하면 경기에 배분되는 총규모는 6,870억원이며, 이중에서 수원이 980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용인으로 620억원이다. 가장 적게 배분되는 기초자치단체는 연천의 20억원이다. 자치구까지 포함한 상태에서 중앙정부가 배분할 경우에는 경기에 배분되는 규모가 2,950억원이며, 이 중에서 수원이 420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용인의 260억원이다. 그리고 가장 적게 배분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연천, 가평, 동두천으로서 약 10억원정도의 규모이다. 중앙정부가 25%전부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고 기초자치단체는 각 광역자치단체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하는 경우에 경기에 배분되는 총규모는 1,850억원이다. 이중에서 수원이 260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용인의 160억원이다. 가장 적게 배분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연천, 양평, 가평, 동두천으로서 약 10억원이 배분된다.

배분공식에 의하여 배분하는 경우에는 재정력환산지수와 역재정력배

---

51)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분석결과는 <부록 3>을 참고하기 바람.

분지수중 어느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며, 또한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느냐 아니면 광역자치단체가 배분하느냐, 그리고 모든 기초자치단체에도 배분할 것인가, 아니면 시·군에만 배분할 것인가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 재정력환산지수에 의하여 배분하되 중앙정부가 시·군에만 배분하는 경우에는 경기에 총 3,410억원이 배분된다. 반면 자치구까지 포함하여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할 경우에는 2,480억원이 배분되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가 도내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한다고 하면 1,230억원이 배분된다. 재정력환산지수에 의한 경우에는 110억, 80억원, 또는 4억원이 각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된다. 그러나 역재정력배분지수에 의한 경우에는 재정력환산지수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과는 달리 약간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먼저 중앙정부가 시·군에만 배분하는 경우에는 1,180억원이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되며, 자치구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940억원이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되고 경기가 도에 배분된 규모중 50%를 도내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배분규모는 550억원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석하되 중앙정부가 시·군에 역재정력배분지수에 의하여 배분할 경우에는 연천, 양평이 100억원으로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지방자치단체는 고양과 과천의 10억원이다. 도내 기초자치단체간에 10배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중앙정부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역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면 연천과 양평이 80억원으로서 가장 많으며, 성남, 안양, 안산, 고양, 과천, 용인 등이 가장 적은 10억원이다. 경기가 배분받은 규모중 50%를 도내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할 경우에는 연천이 50억원으로서 가장 많고 가평과 양평이 40억원이며, 대체로 10억원 정도를 배분받게 된다.

절충안은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50%를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배분

공식에 의하여 배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경우 배분공식을 재정력환산지수로 하느냐, 아니면 역재정력배분지수로 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 먼저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50%, 재정력환산지수에 의하여 50%를 중앙정부가 시·군에만 배분하면,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의 배분 규모는 총 5,180억원이 되며,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한다고 하면 2,720억원이다. 그리고 경기도가 배분받은 규모중 50%를 도내 기초자치 단체에 배분한다고 하면 1,490억원이 된다. 이중에서 중앙정부가 재정력 환산지수를 사용하여 시·군에만 배분할 경우에는 수원이 5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용인이 360억원, 그리고 성남이 350억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 자치단체는 동두천, 연천, 가평의 70억원이다. 중앙정부가 모든 기초자치 단체에 배분한다고 하면 수원이 250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용인의 170억원, 그리고 성남의 160억원이며, 가장 적은 지방자치단체는 연천의 40억원이다. 경기도가 도내 기초자치단체에 재정력환산지수에 근거하여 배분할 경우에는 수원이 130억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용인의 90억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동두천, 구리, 오산, 의왕, 하남, 양주, 광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안성, 김포 등의 30억원이다. 역재정력 배분지수에 의하여 중앙정부가 시·군에만 배분할 경우 수원이 5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용인의 32억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하남의 50억원이다. 중앙정부가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할 경우에는 수원이 220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용인의 140억원이며, 가장 적은 지방자치단체는 동두천, 과천, 구리, 오산, 하남, 양주, 여주, 광주, 포천, 김포의 30억원이다. 경기도가 배분받은 규모중 50%를 역재정력배 분지수에 의하여 도내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할 경우에는 수원이 1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성남, 부천, 안산, 용인의 60억원이고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과천, 구리, 광주의 20억원이다.

<표 4-3> 각 대안별 세수규모(기초자치단체)

(단위 : 10억 원)

경 기	정세지주의			배분공식						절충안					
				재정력 환산지수			역재정력 배분지수			정세지 + 재정력환산지수			정세지 + 역재정배분지수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수 원	98	42	26	11	8	4	2	2	1	55	25	13	50	22	10
성 남	58	25	16	11	8	4	2	1	1	35	16	9	30	13	6
의정부	14	6	4	11	8	4	3	2	1	13	7	4	9	4	3
안 양	47	20	13	11	8	4	2	1	1	29	14	7	24	11	5
부 천	51	22	14	11	8	4	2	2	1	31	15	8	27	12	6
광 명	17	7	4	11	8	4	3	3	1	14	8	4	10	5	3
동두천	3	1	1	11	8	4	6	5	3	7	5	3	5	3	3
안 산	54	23	14	11	8	4	2	1	1	32	15	8	28	12	6
고 양	34	15	9	11	8	4	1	1	1	23	11	6	18	8	4
과 천	14	6	4	11	8	3	1	1		12	7	4	7	3	2
구 리	9	4	2	11	8	4	3	2	1	10	6	3	6	3	2
평 택	32	14	9	11	8	4	4	3	2	22	11	6	18	8	5
남양주	12	5	3	11	8	4	4	3	2	12	7	4	8	4	3
오 산	7	3	2	11	8	4	4	3	2	9	6	3	6	3	3
시 흥	15	6	4	11	8	4	3	3	2	13	7	4	9	5	3
군 포	17	7	5	11	8	4	2	2	1	14	8	4	10	5	3
의 왕	11	5	3	11	8	4	4	3	2	11	6	4	7	4	3
하 남	6	3	2	11	8	4	4	3	2	9	5	3	5	3	3
양 주	7	3	2	11	8	4	4	3	2	9	6	3	6	3	3
여 주	7	3	2	11	8	4	4	4	2	9	6	3	6	3	3
화 성	20	9	5	11	8	4	3	2	1	16	8	5	12	6	3
파 주	11	5	3	11	8	4	4	3	2	11	6	4	8	4	3
광 주	9	4	2	11	8	4	3	2	1	10	6	3	6	3	2
연 천	2	1	1	11	8	4	10	8	5	7	4	3	6	5	5
포 천	7	3	2	11	8	4	4	4	2	9	6	3	6	3	3
가 평	3	1	1	11	8	4	9	7	4	7	5	3	6	4	5
양 평	4	2	1	11	8	4	10	8	4	8	5	3	7	5	5
이 천	39	17	11	11	8	4	3	3	1	25	12	7	21	10	5
용 인	62	26	16	11	8	4	2	1	1	36	17	9	32	14	6
안 성	8	3	2	11	8	4	6	5	3	10	6	3	7	4	3
김 포	9	4	2	11	8	4	4	3	2	10	6	3	6	3	3
계	687	295	185	341	248	123	118	94	55	518	272	149	406	195	122

주 : (1)은 중앙정부가 배분하되 자치구를 제외한 시·군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가정하에 계산한 결과이며, (2)는 중앙정부가 배분하되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한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결과임. (3)은 광역자치단체에 배분된 배분액중 50%를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한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결과임.

지방소득세의 도입으로 인하여 기초자치단체는 세수증가효과가 발생한다. 어느 정도의 세수증가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위하여 현재의 지방세수를 100으로 하고 분석한 결과는 <표 4-4>와 같다. <표 4-4>에 의하면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수규모와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된 규모를 비교할 경우 139.1, 116.8, 110.5로서 가장 많은 세수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절충안에서 재정력환산지수를 사용하였을 경우로서 129.5, 115.5, 108.5이다.<sup>52)</sup>

이를 기초자치단체별로 살펴볼 경우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할 경우에는 수원이 가장 큰 세수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배분공식에 의하여 배분할 경우에는 수원이 가장 적은 세수증가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할 경우 동두천과 함께 최하위의 세수증가현상을 보였던 연천이 가장 큰 증가효과를 보인다. 또한 절충안에 의할 경우에는 연천과 동두천이 가장 큰 세수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52)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분석결과는 <부록 4>를 참고하기 바람.

<표 4-4> 각 대안별 세수확총효과(기초자치단체)

경 기	정세지주의			배분공식			정세지 + 재정력환산지수			절충안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수 원	153.3	122.8	114.1	106.0	104.3	102.2	101.1	101.1	100.5	129.9	113.6	107.1
성 남	133.1	114.3	109.1	106.3	104.6	102.3	101.1	100.6	100.6	120.0	109.1	105.1
의정부	126.9	111.5	107.7	121.2	115.4	107.7	105.8	103.8	101.9	125.0	113.5	107.7
안 양	139.5	116.8	110.9	109.2	106.7	103.4	101.7	100.8	100.8	124.4	111.8	105.9
부 천	134.7	115.0	109.5	107.5	105.4	102.7	101.4	101.4	100.7	121.1	110.2	105.4
광 명	132.1	113.2	107.5	120.8	115.1	107.5	105.7	105.7	101.9	126.4	115.1	107.5
동두천	121.4	107.1	107.1	178.6	157.1	128.6	142.9	135.7	121.4	150.0	135.7	121.4
안 산	142.9	118.3	111.1	108.7	106.3	103.2	101.6	100.8	100.8	125.4	111.9	106.3
고 양	129.1	112.8	107.7	109.4	106.8	103.4	100.9	100.9	100.9	119.7	109.4	105.1
파 천	166.7	128.6	119.0	152.4	138.1	114.3	104.8	104.8	100.0	157.1	133.3	119.0
구 리	132.1	114.3	107.1	139.3	128.6	114.3	110.7	107.1	103.6	135.7	121.4	110.7
평 택	141.6	118.2	111.7	114.3	110.4	105.2	105.2	103.9	102.6	128.6	114.3	107.8
남양주	125.5	110.6	106.4	123.4	117.0	108.5	108.5	106.4	104.3	125.5	114.9	108.5
오 산	136.8	115.8	110.5	157.9	142.1	121.1	121.1	115.8	110.5	147.4	131.6	115.8
시 흥	136.6	114.6	109.8	126.8	119.5	109.8	107.3	107.3	104.9	131.7	117.1	109.8
군 포	136.2	114.9	110.6	123.4	117.0	108.5	104.3	104.3	102.1	129.8	117.0	108.5
의 왕	147.8	121.7	113.0	147.8	134.8	117.4	117.4	113.0	108.7	147.8	126.1	117.4
하 남	126.1	113.0	108.7	147.8	134.8	117.4	117.4	113.0	108.7	139.1	121.7	113.0
양 주	129.2	112.5	108.3	145.8	133.3	116.7	116.7	112.5	108.3	137.5	125.0	112.5
여 주	129.2	112.5	108.3	145.8	133.3	116.7	116.7	116.7	108.3	137.5	125.0	112.5
화 성	138.5	117.3	109.6	121.2	115.4	107.7	105.8	103.8	101.9	130.8	115.4	109.6
파 주	132.4	114.7	108.8	132.4	123.5	111.8	111.8	108.8	105.9	132.4	117.6	111.8
광 주	128.1	112.5	106.3	134.4	125.0	112.5	109.4	106.3	103.1	131.3	118.8	109.4
연 천	122.2	111.1	111.1	222.2	188.9	144.4	211.1	188.9	155.6	177.8	144.4	133.3
포 천	122.6	109.7	106.5	135.5	125.8	112.9	112.9	112.9	106.5	129.0	119.4	109.7
가 평	123.1	107.7	107.7	184.6	161.5	130.8	169.2	153.8	130.8	153.8	138.5	123.1
양 평	128.6	114.3	107.1	178.6	157.1	128.6	171.4	157.1	128.6	157.1	135.7	121.4
이 천	173.6	132.1	120.8	120.8	115.1	107.5	105.7	105.7	101.9	147.2	122.6	113.2
용 인	158.5	124.5	115.1	110.4	107.5	103.8	101.9	100.9	100.9	134.0	116.0	108.5
안 성	132.0	112.0	108.0	144.0	132.0	116.0	124.0	120.0	112.0	140.0	124.0	112.0
김 포	132.1	114.3	107.1	139.3	128.6	114.3	114.3	110.7	107.1	135.7	121.4	110.7
계	139.1	116.8	110.5	119.4	114.1	107.0	106.7	105.3	103.1	129.5	115.5	108.5
											123.1	111.1
												106.9

주 : (1)은 중앙정부가 배분하되 자치구를 제외한 시·군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가정하에 계산한 결과이며, (2)는 중앙정부가 배분하되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한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결과임. (3)은 광역자치단체에 배분된 배분액중 50%를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한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결과임.

## 나. 대안별 비교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떠한 대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세수증가효과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광역자치 단체와 동일하게 정책적인 판단에 의하여 대안이 선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판단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지방소득세 도입의 일차적인 목적이 지방세의 확충에 있다고 할 때 지방소득세를 지방세목화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형태가 되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에 주안점을 둘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일 지방세로서 지방세법하에 규정하기를 원한다면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이다. 반면 재정조정제도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배분공식에 의하여 배분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새로운 방식으로서 제안한 절충안은 이러한 두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대안에 의하여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지방소득세를 지방세목화 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제2절 세수이전효과

국세 소득세는 신설되는 지방소득세의 세수를 위하여 세율을 인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국세 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지방소득세에 배분한다면 국세의 세수는 감소하지 않으며, 세율인상을 하지 않고 현 세율의 틀을 유지한다면 지방소득세로 배분되는 규모만큼 국세의 세수가 지방세로 이전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이전효과로

인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달라질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이전효과에서는 먼저 국세와 지방세의 규모를 살펴보고 각 대안별로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996년을 기준으로 할 때 국세와 지방세의 규모는 <표 4-5>와 같다. <표 4-5>에 의하면 국세가 64조 9,602만원으로 전체 조세의 7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17조 3,947억원으로 전체 조세의 21.1%를 차지하고 있다. 국세소득세는 국세의 22.7%를 차지하고 있다.

<표 4-5> 국세와 지방세의 규모비교

(단위 : 억원)

구 분	중앙정부		지방	
	국세	소득세	지방세	지방소득세
규 모	649,602	147,669	173,947	36,917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두가지 계산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표 4-6>과 같다. 첫째는 국세 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인상된 만큼 지방소득세의 재원으로 할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국세의 세수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지방세수만이 3조 6,917억원이 증가한다.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78.9 : 21.1에서 75.5 : 24.5로 변화된다.

둘째 국세 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지방소득세의 재원으로 일정부분을 배분할 경우에는 국세 세수의 지방세이전효과가 나타난다. 이 경우에는 국세중에서 지방소득세로 배분되는 만큼의 세수손실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국세의 세수규모는 61조 2,685억원이 되고, 지방세는 21조 864억원이 되어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74.4 : 25.6으로 변화된다.

<표 4-6> 지방소득세의 도입에 따른 세수이전효과

(단위 : 억원, %)

구 분	세수이전 전		세수이전 후			
	국세	지방세	1안		2안	
			국세	지방세	국세	지방세
규모	649,602	173,937	649,602	210,854	612,685	210,854
비중	78.9	21.1	75.5	24.5	74.4	25.6

주 : 1안은 국세 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한 후 인상분만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2안은 국세 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하지 않은채 일정부분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경우를 의미함.

### 제3절 형평화 효과

#### 1. 광역자치단체

지방소득세의 도입으로 인하여 광역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정도는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의 두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 간접적인 측정방법은 지방소득세액과 지방세수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하여 그 결과가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날 경우 형평화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직접적인 측정방법은 불형평성을 측정하는 지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의 도입이전과 도입이후를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측정방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형평화측정지수는 변이계수, Entropy지수, Atkinson지수이다. 광역자치단체의 형평화정도를 대안별로 평가한 결과는 <표 4-7>과 같다.

<표 4-7>에 의하여 시·도세의 형평화정도와 시·도세에 지방소득세 액을 포함한 경우의 형평화정도를 비교하면 모든 대안에서 불형평성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분공식1과 배분공식2에서는 많은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시·도세 형평화정도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지방소득세의 도입에 따른 대안별 형평화 효과(광역자치단체)

구분	변이계수	Atkinson지수				Entropy지수
		0.5	1.5	2.0	3.0	
시·도 세 + 지방소득세	징세지주의	0.4735288	0.0519194	0.1457277	0.1855469	0.2498549
	배분공식1	0.3463461	0.0304504	0.0904746	0.1186149	0.1685998
	배분공식2	0.3106427	0.0241599	0.0718166	0.0945496	0.1362842
	절 총 안1	0.3898274	0.0371343	0.1081406	0.1404320	0.1962452
	절 총 안2	0.3600036	0.0314642	0.0917701	0.1195717	0.1687356
시·도세		0.4712081	0.0532624	0.1514168	0.1933470	0.2606000
지방세		0.2038911	0.0102143	0.0304975	0.0405622	0.0605012
						0.0088930

주 : 중앙정부가 광역자치단체에 12.5%를 배분한 경우를 상정하여 계산한 것임. 1은 재정력환산지수를 의미하며, 2는 역재정력배분지수를 의미함.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면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불형평성의 정도가 심화될 것이므로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많은 문헌들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즉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되 도입방식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간 불형평성의 정도를 완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2. 기초자치단체

지방소득세액을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안별로 재정력의 격차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8>과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대안별로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기존 기초세의 불형평성정도보다 더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변이계수에 의할 경우 배분공식2, 절충안1, 절충안2, 절충안3이며, Atkinson지수에 의할 경우에는 징세지주의2, 징세지주의3, 배분공식2, 배분공식3, 절충안2, 절충안3, 절충안6이며, Entropy지수에 의할 경우에는 배분공식2, 배분공식3, 절충안2, 절충안3, 절충안6이다. 분석에 사용한 모든 지수에서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 대안은 절충안2와 절충안3이다.

특이한 점은 징세지주의와 역재정력배분지수를 혼합한 절충안에 의하여 배분할 경우 예상하였던 것과는 달리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하는 경우보다 형평성의 정도가 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역재정력배분지수에 의하여 배분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편차가 너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보여진다. 이 경우 역재정력지수에 의하여 배분하되 그 배분비율을 낮출 경우 이러한 현상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표 4-8> 지방소득세의 도입에 따른 대안별 형평화 효과(기초자치단체)

구분	변이계수	Atkinson지수				Entropy지수
		0.5	1.5	2.0	3.0	
정세지주의1	0.6177947	0.0936196	0.2856267	0.3735315	0.5087136	0.0794975
정세지주의2	0.6850678	0.0745896	0.1973584	0.250027	0.3401463	0.0707664
정세지주의3	0.7682240	0.0775508	0.1947036	0.2430608	0.3254957	0.0768556
배분공식1	재정력 환산지수	0.6023505	0.1005619	0.3400768	0.4545161	0.6111889
배분공식2		0.5147449	0.0664694	0.2119614	0.286059	0.4145575
배분공식3		0.5496481	0.0665956	0.2036551	0.2733228	0.4006921
배분공식4	역재정력 배분지수	0.9804349	0.1521245	0.4212865	0.5291840	0.6669698
배분공식5		0.8832084	0.1216071	0.3280767	0.4155877	0.5468502
배분공식6		0.7874035	0.1070246	0.2935046	0.3754567	0.5066945
절충안1	정세지+ 재정력 환산지수	0.5429929	0.0870093	0.2984290	0.4042407	0.5606327
절충안2		0.5213593	0.0603854	0.1841855	0.2462798	0.3589986
절충안3		0.5145578	0.0545777	0.1572339	0.2057653	0.2941168
절충안4	정세지+ 역재정력 배분지수	0.6828889	0.1050041	0.3353532	0.4437438	0.5965220
절충안5		0.6332050	0.0785337	0.2308665	0.3042587	0.4302400
절충안6		0.5534779	0.0613775	0.1771357	0.2322321	0.3316531
기초세	0.5448842	0.0709106	0.2146874	0.2831729	0.3998575	0.0609285
지방세	0.2038911	0.0102143	0.0304975	0.0405622	0.0605012	0.0088930

주 : 기초자치단체의 세수에 지방소득세 배분액을 합산한 규모를 가지고 계산한 것임. 정세지주의는 주민세 소득할의 비중을 기준으로 배분하며, 배분공식은 재정력환산지수와 역재정력배분지수에 입각하여 배분하고, 절충안은 주민세 소득할 비중에 의하여 50%를 배분하고 배분공식에 의하여 나머지 50%를 배분하는 것을 의미함. 1과 4는 중앙정부가 시·군에만 소득세의 12.5%를 배분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2와 5는 중앙정부가 자치구를 포함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12.5%를 배분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3과 6은 광역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에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배분액인 25%의 절반을 배분하는 경우를 의미함.

## 제4절 소득과세의 강화효과

### 1. 광역자치단체

기존 지방세체계내에서 소득과세는 주민세 소득할, 농지세,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있으며, 이중 주민세 소득할과 농지세는 특별시·광역시세이자 시·군세이며, 사업소세 종업원할은 시·군·구세이다. 1996년기준 지방세체계내 소득과세의 규모를 살펴보면 <표 4-9>와 같다.

<표 4-9>에 의할 경우 우리나라 지방세의 소득과세는 총 2조 5,306 억원이다. 이중에서 주민세 소득할이 전체의 88.4%로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사업소세 종업원할로서 11.4%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볼 때 주민세 소득할의 비중이 가장 큰 곳은 부산, 대구, 제주의 91.3%이며, 가장 적은 지방자치단체는 경남의 80.5%이다.

그리고 소득과세의 지방자치단체별 비중을 살펴보면 서울이 전체의 37.9%, 그리고 경기도가 15.2%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의 53.1%이며, 여타의 지방자치단체는 2~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중을 점하고 있는 소득과세가 시·도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표 4-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4-10>에 의하면 현재 시·도세에서 소득과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8%정도이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35.3%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충북 35.0%, 경남 34.8%, 전남 31.5%이며, 가장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대구의 14.0%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각 대안에 의하여 지방소득세액을 배분한 후 이를 현재의 소득과세와 통합하여 계산하면 20.8%에서 36%가 된다.

<표 4-9> 지방세체계내 소득과세의 규모(1996년)

(단위 : 백만원)

구분	주민세 소득할	농지세	사업소세 종업원할	계(A)
서울	866,007 (38.7) [90.2]	6 (0.2) [0.0]	93,742 (32.3) [9.8]	959,755 (37.9) [100.0]
부산	173,288 (7.7) [91.3]	22 (0.6) [0.0]	16,451 (5.7) [8.7]	189,761 (7.5) [100.0]
대구	100,268 (4.5) [91.3]		9,613 (3.3) [8.7]	109,881 (4.3) [100.0]
인천	90,093 (4.0) [84.7]	25 (0.6) [0.0]	16,227 (5.6) [15.3]	106,345 (4.2) [100.0]
광주	45,476 (2.0) [88.8]		5,749 (2.0) [11.2]	51,225 (2.0) [100.0]
대전	55,656 (2.5) [88.7]		7,096 (2.4) [11.3]	62,752 (2.5) [100.0]
경기	338,686 (15.1) [88.0]	236 (6.0) [0.1]	45,891 (15.8) [11.9]	384,813 (15.2) [100.0]
강원	45,941 (2.1) [90.5]	103 (2.6) [0.2]	4,712 (1.6) [9.3]	50,756 (2.0) [100.0]
충북	61,660 (2.8) [89.1]	54 (1.4) [0.1]	7,466 (2.6) [10.8]	69,180 (2.7) [100.0]
충남	54,646 (2.4) [83.9]	2,148 (54.4) [3.3]	8,352 (2.9) [12.8]	65,146 (2.6) [100.0]
전북	50,012 (2.2) [88.7]	507 (12.9) [0.9]	5,887 (2.0) [10.4]	56,406 (2.2) [100.0]
전남	59,387 (2.7) [88.4]	215 (5.4) [0.3]	7,542 (2.6) [11.2]	67,144 (2.7) [100.0]
경북	107,498 (4.8) [84.6]	223 (5.7) [0.2]	19,302 (6.6) [15.2]	127,023 (5.0) [100.0]
경남	169,773 (7.6) [80.5]	71 (1.8) [0.0]	41,044 (14.1) [19.5]	210,888 (8.3) [100.0]
제주	17,876 (0.8) [91.3]	335 (8.5) [1.7]	1,367 (0.5) [7.0]	19,578 (0.8) [100.0]
계	2,236,267(100.0) [88.4]	3,945 (100.0) [0.2]	290,441 (100.0) [11.4]	2,530,653 (100.0) [100.0]

주 : ( )는 소득과세 총액에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소득과세가 차지하는 비중  
을 의미하며, [ ]는 개별 지방자치단체내 소득과세의 세목별 비중을 의미함.  
자료 : 내무부 「세정연감」, 1997년.

대안별로 살펴보면,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할 경우 서울이 20% 정도가 신장되어 가장 높은 신장을 보이고 있으며, 경북이 여전히 가장 높은 소득과세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배분공식에 의하여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되 재정력환산지수에 의하여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주가 현재의 지방세수보다 소득과세가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강원과 충북의 경우에도 현재의 지방세수규모와 유사한 수준까지 소득과세의 비중이 높아진다. 역재정력배분지수에 의하여 배분하는 경우에도 제주도가 현재의 지방세수의 2배정도에 달하게 되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등의 경우에도 현재의 지방세수보다 소득과세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절충안에 의하여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여 징세지원칙과 재정력환산지수에 의하여 배분할 경우에는 제주가 현재의 지방세수준과 유사한 소득과세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징세지원칙과 역재정력배분지수에 의하여 배분할 경우에도 역시 제주가 현재의 지방세수보다 많은 소득과세수준을 나타내게 되며, 강원, 충북, 전남, 전북 등의 경우에도 소득과세비중이 70 ~ 80%정도의 수준을 나타내게 된다.<sup>53)</sup>

---

53) 분석결과 소득과세의 비중이 현재의 지방세수와 유사하거나 또는 2배정도 큰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배분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표에 의할 경우 소득과세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현재의 시·도세와 지방소득세액을 합산한 규모에서 소득과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할 경우에는 200이상으로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시·도세의 67%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득과세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것은 아니다.

<표 4-10> 시·도의 소득과세 강화효과(1996년)

(단위 : %)

구분	소득과세	징세지주의	배분공식		절충안	
			(1)	(2)	(1)	(2)
서울	20.8	40.8	23.4	22.4	32.1	31.6
부산	15.7	27.9	25.6	22.4	26.8	25.1
대구	14.0	24.7	29.5	24.5	27.0	24.6
인천	15.0	26.5	32.0	26.5	29.2	26.5
광주	14.5	25.0	49.5	42.9	37.2	33.8
대전	15.6	25.0	45.6	36.7	35.4	31.0
경기	19.5	28.8	25.3	22.2	27.0	25.5
강원	26.0	40.2	90.6	132.4	65.7	86.5
충북	35.0	50.8	99.1	118.4	75.2	84.8
충남	25.2	38.0	74.1	92.0	56.3	65.2
전북	27.1	44.6	88.1	101.2	66.4	72.6
전남	31.5	46.6	91.2	121.3	69.1	84.2
경북	35.3	54.0	70.4	76.2	62.0	65.1
경남	34.8	52.9	55.0	51.1	53.9	52.1
제주	26.2	43.2	190.9	226.2	117.7	134.7
계	20.8	36.0	36.0	36.0	36.0	36.0

주 : 소득과세란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주민세+농지세+지방소득세이고, 도는 지방소득세만을 계산한 것임.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계산된 규모가 현재의 시·도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한 것임.

(1)은 재정력환산지수에 의하여 배분한 것이며, (2)는 역재정력배분지수에 의하여 배분한 것을 의미함.

## 2. 기초자치단체

지방소득세의 도입으로 인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소득과세비중이 현재 보다 높아진다. 그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4-11>과 같다. <표 4-11>에 의하면 경기도내 시·군의 소득과세가 시·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40%정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경우에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여 시·군에 배분할 경우 현재 보다 훨씬 소득과세의 비중이 높아진다.<sup>54)</sup>

<표 4-11> 기초자치단체별 소득과세의 강화효과(1996년)

(단위 : %)

경 기	현재	정세지주의			배분공식						절충안					
					재정력환산지수			역재정력배분지수			정세지+ 재정력환산지수			정세지 + 역재정력배분지수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수 원	31.5	84.9	54.4	45.8	37.7	35.9	33.5	32.7	32.5	32.1	61.3	45.1	38.6	58.8	43.4	36.7
성 남	18.6	51.7	32.8	27.5	25.0	23.2	20.7	19.6	19.4	19.1	38.4	28.0	23.6	35.7	26.1	22.0
의 정 부	16.0	43.6	27.8	23.4	37.8	31.4	23.1	21.5	20.5	18.5	40.7	29.6	23.6	32.6	24.1	21.2
안 양	23.4	62.8	40.3	34.0	32.9	30.1	26.5	24.9	24.6	24.1	47.8	35.2	29.7	43.9	32.5	27.6
부 천	20.5	55.5	35.5	29.9	28.3	26.0	23.0	22.0	21.7	21.2	41.9	30.7	26.0	38.8	28.6	24.3
광 명	19.9	51.5	33.4	28.3	41.5	35.1	26.9	25.9	24.7	22.6	46.5	34.2	27.9	38.7	29.1	25.6
동 두 천	12.5	37.1	23.1	19.1	94.2	70.0	39.4	57.4	48.8	33.0	65.7	46.5	32.7	47.3	35.9	37.2
안 산	27.2	69.7	45.4	38.6	36.2	33.5	30.1	28.7	28.4	27.9	52.9	39.5	33.7	49.2	36.9	31.6
고 양	15.9	45.4	28.5	23.8	25.5	22.7	19.0	17.1	16.9	16.5	35.4	25.6	21.1	31.3	22.7	19.1
과 천	37.4	101.4	64.8	54.5	89.4	74.5	53.5	41.4	40.6	39.2	95.4	69.6	54.8	71.4	52.7	44.9
구 리	16.8	49.8	30.9	25.6	57.2	45.3	30.0	27.4	25.4	21.6	53.5	38.1	29.0	38.6	28.1	25.0
평 택	26.6	68.4	44.5	37.8	41.5	37.1	31.5	31.2	30.3	28.7	55.0	40.8	34.3	49.8	37.4	32.6
남 양 주	15.1	40.6	26.0	21.9	39.0	32.0	22.9	23.5	21.9	18.9	39.8	29.0	23.0	32.1	24.0	21.5
오 산	25.3	64.4	42.1	35.8	86.5	68.4	45.3	46.6	42.5	35.0	75.4	55.2	42.6	55.5	42.3	39.4
시 흥	23.6	60.3	39.3	33.4	51.6	43.3	32.7	32.1	30.4	27.5	55.9	41.3	33.6	46.2	34.9	31.0
군 포	22.9	59.5	38.6	32.7	47.1	40.0	30.7	27.9	27.0	25.2	53.3	39.3	32.0	43.7	32.8	28.6
의 왕	28.2	75.1	48.3	40.7	76.9	62.5	44.1	43.3	40.4	35.1	76.0	55.4	43.7	59.2	44.3	39.8
하 남	14.0	41.4	25.7	21.3	64.4	49.5	30.5	31.9	28.4	22.1	52.9	37.6	27.7	36.6	27.1	25.3
양 주	20.1	51.1	33.4	28.4	68.2	53.9	35.8	36.9	33.7	27.7	59.7	43.7	33.7	44.0	33.5	31.2
여 주	19.6	49.5	32.4	27.6	67.8	53.5	35.4	38.0	34.5	28.0	58.7	43.0	33.1	43.8	33.5	31.5
화 성	27.6	66.4	44.2	38.0	49.4	43.0	34.7	33.4	32.3	30.2	57.9	43.6	36.4	49.9	38.2	33.9
파 주	19.7	52.4	33.7	28.5	53.6	43.6	30.8	32.1	29.8	25.4	53.0	38.6	30.5	42.3	31.7	28.8
광 주	17.4	45.3	29.3	24.9	52.7	42.2	28.9	26.9	25.1	21.7	49.0	35.8	27.9	36.1	27.2	24.6
연 천	10.9	32.3	20.1	16.6	132.4	96.3	51.0	121.1	100.0	61.2	82.4	58.2	39.4	76.7	60.1	68.1
포 천	14.5	36.8	24.1	20.5	51.1	40.3	26.5	28.6	25.9	21.0	43.9	32.2	24.8	32.7	25.0	23.5
가 평	10.1	29.8	18.5	15.4	95.7	70.3	38.3	78.9	65.8	41.5	62.8	44.4	30.6	54.4	42.2	46.4
양 평	15.8	46.7	29.0	24.0	95.1	71.5	41.9	82.5	69.7	46.2	70.9	50.3	36.2	64.6	49.4	51.9
이 천	43.7	118.3	75.6	63.7	65.2	58.9	50.7	49.9	48.7	46.5	91.8	67.3	56.4	84.1	62.2	53.3
용 인	35.3	93.5	60.2	50.9	46.0	42.9	38.7	36.9	36.6	36.0	69.7	51.5	43.9	65.2	48.4	41.1
안 성	20.2	51.9	33.8	28.7	66.6	52.8	35.4	42.9	38.6	30.6	59.3	43.3	33.6	47.4	36.2	34.4
김 포	19.9	51.9	33.6	28.5	60.8	48.7	33.3	33.4	30.8	26.1	56.3	41.1	32.1	42.7	32.2	29.5

주 : 소득과세란 시·군의 경우 주민세+농지세+사업소세+지방소득세이고, 자치구는 사업소세+지방소득세임.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계산된 규모가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지를 계산한 것임. (1)은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액을 직접 배분하되 자치구에는 배분하지 않고 시·군에만 배분한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것이며, (2)는 중앙정부가 자치구를 포함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한다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3)은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한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것임.

54) 분석결과 소득과세의 비중이 현재의 지방세수와 유사하거나 또는 큰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주 49)에서 제시한 바와 같으므로 참고하기 바람.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분석결과는 <부록 5>를 참고하기 바람.

이를 대안별로 살펴보면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하되 중앙정부가 시·군에만 배분하는 경우에는 이천이 가장 높은 118.3%의 비중을 나타내어 약 2.5배정도의 증가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대체적인 분포는 30~110%정도이다. 모든 자치구에 배분할 경우에는 과도하게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나타나지 않고 이천이 75.6%로서 가장 높으며, 대체로 20~75%정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광역자치단체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경우에는 이천이 63.7%로서 가장 높으며, 15~64%정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존의 소득과세부담액이 높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액도 많이 배분받게 되어 있다.

배분공식에 의하여 배분하는 경우에는 재정력환산지수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역재정력배분지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재정력환산지수를 사용하여 중앙정부가 시·군에만 배분하는 경우에는 연천이 132.4%로서 가장 높으며, 다음이 가평의 95.7%이다. 연천과 가평의 경우에는 현재의 소득과세비중이 10%정도로서 기타의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낮았으나 지방소득세의 도입으로 인하여 그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중앙정부가 재정력환산지수를 사용하여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한 경우에는 자치구에 배분된 규모만큼 시·군에 배분되는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군에만 배분하는 경우보다 그 비중은 낮아지기는 하나 여전히 연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가 배분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역재정력배분지수에 의하여 중앙정부가 시·군에만 배분하는 경우,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경우, 그리고 광역자치단체가 배분하는 경우 모두에서 연천이 가장 높은 121%, 100%, 61.2%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력환산지수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절충안에 의하여 재정력환산지수를 사용하여 중앙정부가 시·군에만 배분하는 경우에는 과천이 95.4%로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이천의 91.8%이다.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경우 그 규모는 줄어드나 과천과 이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가 배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역재정력배분지수에 의하여 중앙정부가 시·군에만 배분하는 경우에는 이천이 84.7%로서 가장 높으며,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경우에도 그 규모가 줄어들어 비중이 줄어들기는 하나 대체로 유사한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제5절 종합적 논의 및 대안의 선택

### 1. 종합적 논의

지방소득세의 도입을 위하여 몇 가지의 대안을 살펴보았다. 대분류 할 경우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하는 경우, 배분공식에 의하여 배분하는 경우, 그리고 이를 혼합한 절충안의 3가지 대안을 분석하였으며, 소분류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5개 대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15개 대안을 검토하였다.

먼저 지방소득세의 도입단계에서는 지방소득세의 도입유형과 대상세 목 그리고 세율 및 세액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세원의 공동이용 방식을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고, 대상세목으로서는 소득세, 법인세,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등을 검

토하였으며, 이중에서 소득세를 지방소득세의 대상세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국세 소득세의 25%정도를 상정하고 분석하였으며, 이는 일본의 지방소비세 세율과 동일한 규모이다.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지방소득세를 도입한 후에는 세원을 어떻게 배분하여야 하는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하는 대안, 배분공식에 의하여 배분하는 대안, 그리고 이 두가지를 혼합한 대안 등의 3가지를 살펴보았다.

각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배분방식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의 유형화가 가능하다. 먼저 중앙정부가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경우,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경우, 그리고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는 배분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에만 배분하고 기초자치단체에는 광역자치단체가 배분하는 경우이다.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경우는 다시 시·군에만 배분하는 경우와 자치구까지 배분하는 두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배분기준을 살펴보면,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 소득세 부담비율에 의하여 100%를 배분하며, 배분공식에 의하여 배분하는 경우에는 재정력환산지수와 역재정력배분지수에 의하여 100%를 배분하는 것이다. 절충안의 경우에는 징세지주의, 즉 지방자치단체별 소득세 부담비율에 의하여 50%를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배분공식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분방식에 의하여 배분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세수확충효과, 세수이전효과, 지방자치단체간 형평화효과, 소득과세의 강화효과 등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세수확충효과를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가 국세 소득세액의 15%를

배분받을 경우 1조 8,460억원으로서 모든 대안에서 동일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안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할 경우 서울이 가장 많은 배분을 받게 되며, 가장 적은 지방자치단체는 제주이다. 반면 배분공식에 의하여 배분하되 재정력환산지수에 의하여 배분할 경우에는 거의 유사한 규모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배분받기는 하나 강원과 전남이 가장 받은 뜻을 배분받고 서울이 가장 적은 뜻을 배분받게 된다. 역재정력배분지수에 의하여 배분할 경우에는 강원이 여타의 광역자치단체에 비하여 가장 많은 규모를 배분받으며, 서울이 가장 적은 뜻을 배분받게 된다. 절충안에 의할 경우에는 서울이 가장 많은 뜻을 배분받기는 하나 이 규모는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받은 규모의 약 절반수준이다. 즉 서울의 경우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할 경우에는 9,200억원을 배분받게 되나 절충안에 의할 경우에는 5,190억원과 4,970억 원을 배분받게 된다. 그리고 제주가 가장 적게 배분받기는 하나 이는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받을 때 보다 약 6배에서 7배정도를 더 배분받게 되는 효과가 있다. 즉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받을 경우에는 130억원을 배분받게 되나 절충안에 의하여 배분받을 경우에는 700억원과 830억 원을 배분받게 된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대안별 세수확충효과를 살펴보면, <표 4-12>와 같다. <표 4-12>는 기초자치단체별 세수확충효과를 광역별로 재집계하여 정리한 것이다.<sup>55)</sup>

<표 4-12>에 의하면 각 대안의 (1)은 자치구에는 배분하지 않는 것

55) 지면상 본문에 기초자치단체별 세수확충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모두 제시할 수는 없으므로 부록처리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별 분석결과를 광역별로 재집계하여 정리하여 본문에 제시하였으므로 구체적인 기초자치단체별 분석결과는 <부록 3>을 참고하기 바람.

이므로 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소득세액이 배분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액이 배분되는 것을 상정하고 계산하였다.

<표 4-12> 기초자치단체의 대안별 세수확충효과

(단위 : 10억 원)

구분	정세지주의			배분공식						절충안					
				재정력환산지수			역재정력배분지수			정세지 + 재정력환산지수			정세지 + 역재정력배분지수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서울	-	682	920	-	201	119	-	91	73	-	441	520	-	386	497
부산	-	137	148	-	121	120	-	90	81	-	129	134	-	114	114
대구	-	81	84	-	65	121	-	67	82	-	73	102	-	74	63
인천	-	72	82	-	81	121	-	64	81	-	76	101	-	68	82
광주	-	38	37	-	40	123	-	24	96	-	39	80	-	31	68
대전	-	45	38	-	40	121	-	18	85	-	43	80	-	32	62
경기	689	295	185	353	249	115	119	96	54	521	272	150	403	196	119
강원	95	41	29	207	145	127	224	181	209	151	93	78	160	111	119
충북	125	54	31	126	89	126	116	94	164	126	71	79	121	74	98
충남	114	49	33	172	121	126	147	119	172	143	85	80	131	84	121
전북	104	45	36	161	113	126	240	194	153	133	79	81	172	120	94
전남	121	52	32	276	194	127	398	322	191	199	123	80	260	187	112
경북	217	93	67	264	186	126	341	275	147	241	139	96	279	184	107
경남	344	147	110	241	169	123	234	189	99	292	158	116	289	168	105
제주	37	15	14	46	32	125	27	22	159	40	25	69	31	17	85
계	1,846	1,846	1,846	1,846	1,846	1,846	1,846	1,846	1,846	1,846	1,846	1,846	1,846	1,846	1,846

주 : (1)은 중앙정부가 배분하되 자치구를 제외한 시·군자치단체에 배분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한 결과이며, (2)는 중앙정부가 배분하되 모든 기초자치단체 배분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한 결과임. (3)은 광역자치단체에 배분된 배분액 중 50%를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된 결과임.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자치구에는 배분하지 않고 시·군에만 배분하면 경기가 6,890억원으로 전체의 37.3%를 차지하게 되며, 그 다음이 경남으로서 3,440억원이다. 이 규모는 전체의 18.6%이며 이 두 지방자치단체를 합칠 경우 약 55.9%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적은 지방자치단체는 제주로서 전체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할 경우에는 서울이 6,820억원으로 전체의 36.9%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가 2,950억원을 차지하여 전체의 15.9%이다. 가장 작은 지방자치단체는 제주도로서 150억원이 배분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할 경우에는 서울이 9,250억원으로 전체의 49.5%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고, 가장 적은 지방자치단체는 제주로서 130억원이다.

배분공식에 의하여 지방소득세액을 배분할 경우에는 재정력환산지수와 역재정력배분지수중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배분액이 달라진다. 먼저 재정력환산지수에 의하여 배분하되 중앙정부가 자치구를 제외한 시·군에 배분할 경우에는 역시 경기도가 3,530억원으로 가장 많으나 이 규모는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하는 경우에 비하여 약 절반정도의 규모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액을 결정할 경우 가장 적은 규모를 배분받게 되는 제주의 경우 배분공식에 의하여 배분하더라도 가장 적은 규모를 배분받기는 하나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하는 경우보다 약 10억원정도가 더 배분된다.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중앙정부가 배분하는 경우에는 경기와 서울이 각각 2,490억원과 2,010억원을 배분받아 가장 많은 규모를 배분받게 되나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하는 경우에 비하여 약 1/3에 지나지 않는다. 광역자치단체가 배분하는 경우에는 강원이 가장 많은 규모를 배분받게 되며, 경기가 가장 적은 규모를

배분받게 된다. 재정력환산지수가 아닌 역재정력지수에 의하여 배분하는 경우에는 자치구를 제외하고 시·군에만 배분할 경우 다른 대안과는 달리 전남, 경북 등이 가장 많은 규모를 배분받게 되며, 제주가 다른 대안과 마찬가지로 가장 적은 규모를 배분받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자치구를 포함하여 중앙정부가 배분하는 경우와 광역자치단체가 배분하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절충안에 의하여 지방소득세를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되 먼저 징세지주의와 재정력환산지수에 의하여 배분하면 경기가 5,210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경남으로서 2,890억원이다. 자치구를 포함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중앙정부가 배분하는 경우에는 서울이 3,860억원으로 가장 많은 규모를 배분받게 되며, 제주가 가장 적은 규모를 배분받게 된다. 광역자치단체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경우에는 서울이 역시 다른 대안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규모를 배분받게 되며, 경기와 강원등이 1,190억원으로 그 다음으로 많은 규모를 배분받게 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떠한 대안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배분규모는 확연히 달라지게 된다.

세수이전효과를 살펴보면, 국세로부터 지방세로의 이전현상이 발생할 뿐 지방자치단체간 이전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중앙정부로부터 소득세액의 일정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되므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현재와는 달라진다. 국세 소득세의 25%를 지방세로 이양할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한 상태에서 이양하는 경우 78.9 : 21.1에서 75.5 : 24.5로 변화되며, 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지방소득세의 재원으로 일정부분을 배분할 경우에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74.4 : 25.6으로 변화된다.

형평화효과를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배분공식에 의하여 배분할 경우와 절충안에 의하여 배분할 경우 기존의 지방세체계보다 불형평성의 정도가 더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은 소득세를 지방세화하지 못하는 근거로서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가 심화된다는 이유를 제시하였으나 분석결과 불형평성의 정도가 더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그러한 논의는 잘못되었음이 증명되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지방소득세액을 배분하였을 경우 재정력환산지수에 의하여 배분하는 경우에는 불형평성의 정도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한 배분규모가 너무 커 불형평성의 정도가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그 배분규모를 축소할 경우 불형평성의 정도는 더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소득세를 지방세화할 수 없다는 논의로서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심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배분방식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불형평성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배분된 규모만큼 소득과세의 확충효과가 있다. 지방세체계에 소득과세의 확충이 가지는 의미는 지역의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의 증가가 국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로도 연계되는 장치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 2. 대안의 선택

### 가. 대안의 선택기준

본 연구에서는 배분방식을 기준으로 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에 5개 대안, 기초자치단체에 15개 대안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많은 대안을 분석한 이유는 가능한 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이다.

먼저 대안을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는 바, 기준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지방세목으로서 지방세법하에 규정되는 방식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방세목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차원에서 이전재원으로서 활용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논의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과 연계되는 문제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자주권을 가지는 동시에 재정확충을 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반면 배분공식에 의하여 배분하는 방식은 지방세라기 보다는 일종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이며, 이를 제도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의 기준으로는 현실적인 제약조건을 고려해 보는 것이다. 제약조건으로서 검토할 사항은 현재 논의중에 있는 조세체계개편논의와 관련지어 생각해보는 것이다. 현재 조세체계의 개편논의중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있는 것은 부가세를 전면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부가세형식이 될 것이며, 이는 현재의 조세체계개편논의와 역행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격차문제이다. 재정력의 격차는 첫째, 지역간의 이동을 초래

하게 된다. 즉 주민과 자본의 이동은 정(positive)의 재정편익이 있는 곳으로 몰리게 되어 과소지역과 과밀지역 모두에 효율과 형평의 측면에서 외부불경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재정력격차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가 전체의 정치적 및 사회적 안정과 이에 따른 국가 전체의 후생수준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재정이 형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셋째,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가 심화되어 재정력의 분포상태가 현저하게 불형평해지면 부유한 지방자치단체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간 상대적 박탈감 또는 위화감이 조성되고 이에 따라 국가 전체의 정치적 및 사회적인 안정성이 크게 저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불형평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달성하는데 장애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력의 격차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 나. 대안의 선택

살펴본 바와 같은 대안의 선택기준에 의한 경우 징세지주의보다는 배분공식에 의하여 배분하는 지방소득세의 도입형태가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본질적 의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을 가지고 지역의 주민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의존재원보다는 지방세목화하여 자주재원화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득세의 도입형태를 2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하나는 지방세목으로서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재정조정재원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지방소득세의 신설 방안이다.

## 1) 지방세로서의 지방소득세 신설 방안

이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보해준다는 의미에서 지방소득세를 지방세목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대안중에서 지방세목화할 수 있는 대안들에 대한 조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안중에서 지방소득세를 지방세목화할 수 있는 대안은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징세지주의 대안을 살펴보면, 크게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관계에서 볼 경우,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관계에서 볼 경우,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계에서 볼 경우의 3가지로 요약 가능하다. 이러한 3가지 경우의 수는 다시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로 배분할 경우 자치구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의하여 구분 가능하다. 이러한 각각의 대안중에서 지방소득세를 지방세목화할 경우 과세주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의 과세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 가) 과세주체

과세주체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기준으로는 정수의 용이성, 지역의 고착성, 세원분포의 보편성, 지역개발의 흡수성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지방재원 특히 지방세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중에 하나가 재정불균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세원의 보편성을 기준으로 하겠다.

세원의 불형평성에 대한 분석결과중 광역자치단체의 분석결과는 <표 4-6>에 제시되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7>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으로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소득세의 경우 주거지주의에 기초한 개인소득과세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 세원으로서의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직주분리의 확대에 따른 주거지주의와 원천주의에 따른 세원조정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성의 원칙에 따른 지방행정서비스로부터의 편익과 비용부담의 연계측면에서 볼 때 광역자치단체세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으로서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경우 고려하여야 할 것은 주민세 소득할의 폐지 가능성이다. 만일 주민세 소득할이 폐지될 경우 현재 주민세 소득할이 시·군세이자 특별시·광역시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원이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시·군에 대한 재원이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도가 해당 시·군에 배분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의 배분기준은 징세지주의보다는 배분공식에 의하여 배분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보다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가 심화되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 나) 납세의무자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시·도내에서 국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이다.

#### 다) 과세표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국세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다.

#### 라) 세율

세율은 국세 소득세 총과표의 2.2%이며, 이 규모는 국세 소득세액의 25%상당액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 국세 소득세부담액의 25%가 된다.

### 2) 지방재정조정재원으로서의 지방소득세 신설

지방재정조정재원으로서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방안으로서 본 연구에서 검토한 것은 배분공식에 의하여 배분하는 방안과 징세지주의와 배분공식의 양자를 혼합한 절충안이다.

이러한 방안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절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지방세목으로서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경우 배분공식에 의하여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수 밖에 없으나 순수하게 배분공식에 의하여 배분하는 방식에 의하여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소득세부담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절충안에 의하여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절충안에 의하여 지방소득세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간 불형평성의 정도가 현재 보다는 심화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으므로 불형평성의 문제는 절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장애요인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 징세지주의에 지방자치단체에 50%를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배분공식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배분할 경우에는 재정력환산지

수와 역재정력배분지수가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재정력환산지수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간 불형평성이 역재정력배분지수에 의하여 배분할 경우보다 더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분규모를 조정할 경우 더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절충안을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가능하다. 먼저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하는 방식에 의하여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드러난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의 도입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재정력격차의 심화현상을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력의 격차가 발생하면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배분공식에 의해서만 배분할 경우 지역공공재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공공재의 공급에 관한 수요가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만을 고려할 경우 특정 지방자치단체에는 과잉공급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는 과소공급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이 역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1. 국내문헌

- 김대영, 「지방소득과세의 확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년.
- 김정훈, 「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년.
- 김유찬, 「독일의 재정」, 한국조세연구원, 1997년.
- 내무부, 「외국의 지방세제도」, 1991년.
- 박정수, 「공동세제도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3년.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3년.
- ....., 「중앙-지방정부간 기능 및 재정책임의 재분배」, 한국조세연구원, 1994년.
-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원조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7년.
- 성명재, 「근로소득세 세수추계와 세수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7년.
- 이준구,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서울 : 다산출판사, 1993년.
- 이필우, 「조세론」, 서울 : 법문사, 1995년.
- 진영환, 「산업기지개발의 지역파급효과 분석」, 국토개발연구원, 1989년
-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 1996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발전계획」, 1996년.

## 2. 국외문헌

- Bahl, Roy W. and Linn, Johannes F. *Urban Public Finance in Developing Countr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 King, David, *Fiscal Tiers: The Economics of Multi-Level Government*,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84.
- McLure, Charles(ed.), *Tax Assignment in Federal Countries*, Australia: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Press, 1993.
- Musgrave, Richard A., "Who should Tax, Where and What," in C.E.McLure, Jr.(ed.), *Tax Assignment in Federal Countries*, Canberra: Centre for Research on Federal Financial Relation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983.
- Rosen, Harvey S. *Public Finance*, 4th. ed., Chicago: Irwin, 1995.
- Shah, Anwar, *The Reform of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in Developing and Emerging Market Economy*,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1994.

## <논 문>

### 1. 국내논문

- 곽채기, “자치단체 계층간 세원배분체계의 조정방안,”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8년 제1호.
- 김이태, “국세와 지방세간 세원재배분,” 「지방재정」, 1984년 3월호.
- 김정욱, “관광과세화와 세부담의 지역간 전가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28권 4호, 1994년.
- 김정훈, “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물품소비를 중심으로),”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6년 제1호.
- 박종구, “지방재정력 향상을 위한 국세·지방세의 재배분,”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8년 제1호.
- 손광락, “지방재정수요변화에 대응한 지방세체계의 조정방안,”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8년 제1호.
- 오연천, “자치시대의 지방세제 개편과 지방소득세제의 도입구상,”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5년 제2호.
- ....., “21세기 지방세의 역할과 전망,”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8년 제1호.
- 오희환, “중앙·지방정부간 사무재배분,” 「지방자치」, 현대사회연구소, 1997. 2.
- 원윤희, “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5년 제2호.
- 이필우, “지방소득과세제의 발전방향,”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6년 제3호

최명근, “지방소비과세제도 확충의 필요성과 주요국의 입법례,”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6년 제4호.

## 2. 국외논문

- Bahl, Roy W. "The Decentralization of Government," 광복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재정 50년의 회고와 전망」,  
1995년 10월.
- Bird, Richard M., "Threading the Fiscal Labyrinth: Some Issues in Fiscal  
Decentralization," *National Tax Journal*, Vol. XLVI, NO.2. 1993.
- Browning, Edgar K, & Liu, Liquan, "The Optimal Supply of Public Goods  
and the Distortionary Cost of Taxation: Comment," *National  
Tax Journal*, Vol. LI, NO.1. 1998.
- Dye, Richard F. and McLure, Therese J., "Growth and Variability of  
State Individual Income and General Sales Tax," *National Tax  
Journal*, Vol. XLIV, NO.1. 1991.
- Feldstein, Martin, "The Effect of Marginal Tax Rate on Taxable Income:  
A Panel Study of the 1986 Tax Reform Ac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3. No.3 1995. June.
- ....., "How Big Should Government Be," *National Tax  
Journal*, Vol. L, NO.2. 1997. June.
- Kaplow, Louis, The Optimal Supply of Public Goods and The  
Distortionary Cost of Taxation, *National Tax Journal*, Vol. XLIX,  
NO.4. December, 1996.

## <기 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1997년.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1996년, 1997년.

.....,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1998년.

OECD, 「*Revenue Statistics of OECD Member Countries 1965-1994*」,

1995.

## <부록 1> 국세소득세의 배분비율 및 징세지주의 반영결과

(단위 : 천원)

Ki	$\alpha = 10\%$		$\alpha = 15\%$	
	1995	1996	1995	1996
1	1,361,819,003	1,476,688,193	2,042,728,505	2,215,032,289
0.9	1,225,637,103	1,329,019,373	1,838,455,654	1,993,529,060
0.8	1,089,455,203	1,181,350,554	1,634,182,804	1,772,025,831
0.7	953,273,302	1,033,681,735	1,429,909,953	1,550,522,602
0.6	817,091,402	886,012,916	1,225,637,103	1,329,019,373
0.5	680,909,502	738,344,096	1,021,364,252	1,107,516,144
0.4	544,727,601	590,675,277	817,091,402	886,012,916
0.3	408,545,701	443,006,458	612,818,551	664,509,687
0.2	272,363,801	295,337,639	408,545,701	443,006,458
0.1	136,181,900	147,668,819	204,272,850	221,503,229
Ki	$\alpha = 20\%$		$\alpha = 25\%$	
1	2,723,638,007	2,953,376,385	3,404,547,508	3,691,720,481
0.9	2,451,274,206	2,658,038,747	3,064,092,757	3,322,548,433
0.8	2,178,910,405	2,362,701,108	2,723,638,007	2,953,376,385
0.7	1,906,546,605	2,067,363,470	2,383,183,256	2,584,204,337
0.6	1,634,182,804	1,772,025,831	2,042,728,505	2,215,032,289
0.5	1,361,819,003	1,476,688,193	1,702,273,754	1,845,860,241
0.4	1,089,455,203	1,181,350,554	1,361,819,003	1,476,688,193
0.3	817,091,402	886,012,916	1,021,364,252	1,107,516,144
0.2	544,727,601	590,675,277	680,909,502	738,344,096
0.1	272,363,801	295,337,639	340,454,751	369,172,048
Ki	$\alpha = 30\%$		$\alpha = 35\%$	
1	4,085,457,010	4,430,064,578	4,766,366,512	5,168,408,674
0.9	3,676,911,309	3,987,058,120	4,289,729,860	4,651,567,807
0.8	3,268,365,608	3,544,051,662	3,813,093,209	4,134,726,939
0.7	2,859,819,907	3,101,045,204	3,336,456,558	3,617,886,072
0.6	2,451,274,206	2,658,038,747	2,859,819,907	3,101,045,204
0.5	2,042,728,505	2,215,032,289	2,383,183,256	2,584,204,337
0.4	1,634,182,804	1,772,025,831	1,906,546,605	2,067,363,470
0.3	1,225,637,103	1,329,019,373	1,429,909,953	1,550,522,602
0.2	817,091,402	886,012,916	953,273,302	1,033,681,735
0.1	408,545,701	443,006,458	476,636,651	516,840,867

Ki	$\alpha = 40\%$		$\alpha = 45\%$		$\alpha = 50\%$	
	1995	1996	1995	1996	1995	1996
1	5,447,276,013	5,906,752,770	6,128,185,515	6,645,096,866	6,809,095,017	7,383,440,963
0.9	4,902,548,412	5,316,077,493	5,515,366,963	5,980,587,180	6,128,185,515	6,645,096,866
0.8	4,357,820,811	4,725,402,216	4,902,548,412	5,316,077,493	5,447,276,013	5,906,752,770
0.7	3,813,093,209	4,134,726,939	4,289,729,860	4,651,567,807	4,766,366,512	5,168,408,674
0.6	3,268,365,608	3,544,051,662	3,676,911,309	3,987,058,120	4,085,457,010	4,430,064,578
0.5	2,723,638,007	2,953,376,385	3,064,092,757	3,322,548,433	3,404,547,508	3,691,720,481
0.4	2,178,910,405	2,362,701,108	2,451,274,206	2,658,038,747	2,723,638,007	2,953,376,385
0.3	1,634,182,804	1,772,025,831	1,838,455,654	1,993,529,060	2,042,728,505	2,215,032,289
0.2	1,089,455,203	1,181,350,554	1,225,637,103	1,329,019,373	1,361,819,003	1,476,688,193
0.1	544,727,601	590,675,277	612,818,551	664,509,687	680,909,502	738,344,096

## <부록 2> 국세 소득세의 광역자치단체간 배분결과

(단위 : 천원)

구분	Ki = 10%	(1-Ki) = 90%	계
서울	184,040,974	214,560,277	398,601,251
부산	29,558,025	216,733,417	246,291,442
대구	16,810,600	217,013,578	233,824,178
인천	16,464,975	216,962,055	233,427,030
광주	7,394,175	220,672,940	228,067,114
대전	7,642,025	217,789,785	225,431,810
경기	36,912,375	206,611,608	243,523,983
강원	5,776,150	229,358,781	235,134,931
충북	6,281,525	227,156,117	233,437,642
충남	6,610,350	227,653,133	234,263,483
전북	7,248,250	226,410,263	233,658,513
전남	6,415,650	228,609,443	235,025,093
경북	13,353,575	226,013,967	239,367,542
경남	21,986,375	220,561,153	242,547,528
제주	2,677,025	226,441,917	229,118,942
계	369,172,048	3,322,548,433	3,691,720,481
	Ki = 20%	(1-Ki) = 80%	계
서울	368,081,948	190,720,246	558,802,194
부산	59,116,050	192,651,926	251,767,976
대구	33,621,200	192,900,958	226,522,158
인천	32,929,950	192,855,160	225,785,109
광주	14,788,350	196,153,724	210,942,074
대전	15,284,050	193,590,920	208,874,970
경기	73,824,750	183,654,763	257,479,513
강원	11,552,300	203,874,472	215,426,772
충북	12,563,050	201,916,549	214,479,599
충남	13,220,700	202,358,340	215,579,040
전북	14,496,500	201,253,568	215,750,067
전남	12,831,300	203,208,393	216,039,693
경북	26,707,150	200,901,304	227,608,454
경남	43,972,750	196,054,359	240,027,108
제주	5,354,050	201,281,704	206,635,754
계	738,344,096	2,953,376,385	3,691,720,481

구분	Ki = 30%	(1-Ki) = 70%	계
서울	552,122,922	166,880,215	719,003,137
부산	88,674,075	168,570,435	257,244,510
대구	50,431,800	168,788,338	219,220,138
인천	49,394,925	168,748,265	218,143,189
광주	22,182,525	171,634,509	193,817,033
대전	22,926,075	169,392,055	192,318,130
경기	110,737,124	160,697,918	271,435,042
강원	17,328,450	178,390,163	195,718,613
충북	18,844,575	176,676,980	195,521,555
충남	19,831,050	177,063,548	196,894,598
전북	21,744,750	176,096,872	197,841,621
전남	19,246,950	177,807,344	197,054,294
경북	40,060,725	175,788,641	215,849,366
경남	65,959,125	171,547,564	237,506,688
제주	8,031,075	176,121,491	184,152,566
계	1,107,516,144	2,584,204,337	3,691,720,481
Ki = 40%	(1-Ki) = 60%	계	
서울	736,163,897	143,040,184	879,204,081
부산	118,232,099	144,488,944	262,721,044
대구	67,242,400	144,675,718	211,918,118
인천	65,859,900	144,641,370	210,501,269
광주	29,576,700	147,115,293	176,691,993
대전	30,568,100	145,193,190	175,761,290
경기	147,649,499	137,741,072	285,390,571
강원	23,104,600	152,905,854	176,010,454
충북	25,126,100	151,437,411	176,563,511
충남	26,441,400	151,768,755	178,210,155
전북	28,993,000	150,940,176	179,933,175
전남	25,662,600	152,406,295	178,068,895
경북	53,414,300	150,675,978	204,090,278
경남	87,945,500	147,040,769	234,986,269
제주	10,708,100	150,961,278	161,669,378
계	1,476,688,193	2,215,032,288	3,691,720,481

구분	Ki = 50%	(1-Ki) = 50%	계
서울	920,204,871	119,200,154	1,039,405,024
부산	147,790,124	120,407,454	268,197,578
대구	84,053,000	120,563,099	204,616,098
인천	82,324,875	120,534,475	202,859,349
광주	36,970,875	122,596,078	159,566,952
대전	38,210,125	120,994,325	159,204,450
경기	184,561,874	114,784,227	299,346,101
강원	28,880,750	127,421,545	156,302,295
충북	31,407,625	126,197,843	157,605,468
충남	33,051,750	126,473,963	159,525,713
전북	36,241,250	125,783,480	162,024,730
전남	32,078,250	127,005,246	159,083,496
경북	66,767,875	125,563,315	192,331,190
경남	109,931,874	122,533,974	232,465,849
제주	13,385,125	125,801,065	139,186,190
계	1,845,860,241	1,845,860,241	3,691,720,482
	Ki = 60%	(1-Ki) = 40%	계
서울	1,104,245,845	95,360,123	1,199,605,967
부산	177,348,149	96,325,963	273,674,112
대구	100,863,599	96,450,479	197,314,078
인천	98,789,850	96,427,580	195,217,429
광주	44,365,050	98,076,862	142,441,912
대전	45,852,150	96,795,460	142,647,610
경기	221,474,249	91,827,381	313,301,630
강원	34,656,900	101,937,236	136,594,136
충북	37,689,150	100,958,274	138,647,424
충남	39,662,100	101,179,170	140,841,270
전북	43,489,500	100,626,784	144,116,284
전남	38,493,900	101,604,197	140,098,097
경북	80,121,450	100,450,652	180,572,101
경남	131,918,249	98,027,179	229,945,429
제주	16,062,150	100,640,852	116,703,002
계	2,215,032,289	1,476,688,192	3,691,720,481

구분	Ki = 70%	(1-Ki) = 30%	계
서울	1,288,286,819	71,520,092	1,359,806,911
부산	206,906,174	72,244,472	279,150,646
대구	117,674,199	72,337,859	190,012,059
인천	115,254,824	72,320,685	187,575,509
광주	51,759,225	73,557,646	125,316,871
대전	53,494,175	72,596,595	126,090,770
경기	258,386,624	68,870,536	327,257,160
강원	40,433,050	76,452,927	116,885,977
충북	43,970,675	75,718,706	119,689,381
충남	46,272,450	75,884,378	122,156,827
전북	50,737,750	75,470,088	126,207,838
전남	44,909,550	76,203,148	121,112,697
경북	93,475,025	75,337,989	168,813,013
경남	153,904,624	73,520,384	227,425,009
제주	18,739,175	75,480,639	94,219,814
계	2,584,204,337	1,107,516,144	3,691,720,481
	Ki = 80%	(1-Ki) = 20%	계
서울	1,472,327,793	47,680,061	1,520,007,854
부산	236,464,199	48,162,981	284,627,180
대구	134,484,799	48,225,239	182,710,039
인천	131,719,799	48,213,790	179,933,589
광주	59,153,400	49,038,431	108,191,831
대전	61,136,200	48,397,730	109,533,930
경기	295,298,999	45,913,691	341,212,689
강원	46,209,200	50,968,618	97,177,818
충북	50,252,200	50,479,137	100,731,337
충남	52,882,800	50,589,585	103,472,385
전북	57,986,000	50,313,392	108,299,392
전남	51,325,200	50,802,098	102,127,298
경북	106,828,599	50,225,326	157,053,925
경남	175,890,999	49,013,590	224,904,589
제주	21,416,200	50,320,426	71,736,626
계	2,953,376,385	738,344,096	3,691,720,481

구분	Ki = 90%	(1-Ki) = 10%	계
서울	1,656,368,767	23,840,031	1,680,208,797
부산	266,022,224	24,081,491	290,103,714
대구	151,295,399	24,112,620	175,408,019
인천	148,184,774	24,106,895	172,291,669
광주	66,547,575	24,519,215	91,066,790
대전	68,778,225	24,198,865	92,977,090
경기	332,211,373	22,956,845	355,168,219
강원	51,985,350	25,484,309	77,469,659
충북	56,533,725	25,239,569	81,773,293
충남	59,493,150	25,294,793	84,787,942
전북	65,234,250	25,156,696	90,390,946
전남	57,740,850	25,401,049	83,141,899
경북	120,182,174	25,112,663	145,294,837
경남	197,877,374	24,506,795	222,384,169
제주	24,093,225	25,160,213	49,253,438
계	3,322,548,433	369,172,048	3,691,720,481

### <부록 3> 각 대안별 세수규모(기초자치단체)

(단위 : 백만원)

서울	정세지주의			배분공식						절충안					
				재정력환산지수			역재정력배분지수			정세지 + 재정력환산지수			정세지 + 역재정력배분지수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종로구	-	51,185	69,082	-	8,020	4,699	-	2,177	1,759	-	29,602	29,752	-	26,681	24,614
중구	-	107,932	145,673	-	7,975	4,543	-	1,373	1,109	-	57,954	51,039	-	54,653	43,078
용산구	-	23,693	31,977	-	8,045	4,788	-	3,267	2,639	-	15,869	19,469	-	13,480	17,587
성동구	-	12,869	17,368	-	8,058	4,833	-	4,343	3,508	-	10,463	15,439	-	8,605	16,593
광진구	-	15,099	20,379	-	8,052	4,813	-	3,785	3,058	-	11,575	16,247	-	9,442	15,878
동대문	-	14,083	19,008	-	8,053	4,817	-	3,895	3,146	-	11,068	15,869	-	8,989	15,808
중랑구	-	6,799	9,177	-	8,059	4,836	-	4,462	3,604	-	7,429	13,134	-	5,631	14,711
성북구	-	12,625	17,040	-	8,054	4,821	-	3,996	3,228	-	10,340	15,321	-	8,311	15,555
강북구	-	6,965	9,400	-	8,067	4,866	-	5,761	4,654	-	7,516	13,261	-	6,363	18,332
도봉구	-	6,199	8,366	-	8,063	4,852	-	5,066	4,092	-	7,131	12,939	-	5,632	16,147
노원구	-	9,670	13,052	-	8,060	4,841	-	4,619	3,731	-	8,865	14,238	-	7,144	16,185
은평구	-	8,529	11,511	-	8,060	4,841	-	4,635	3,744	-	8,294	13,804	-	6,582	15,814
서대문	-	13,396	18,081	-	8,058	4,835	-	4,436	3,583	-	10,727	15,647	-	8,916	17,041
마포구	-	22,730	30,679	-	8,051	4,811	-	3,729	3,012	-	15,391	19,150	-	13,230	18,503
양천구	-	11,938	16,112	-	8,056	4,825	-	4,122	3,330	-	9,997	15,069	-	8,030	15,650
강서구	-	15,577	21,024	-	8,043	4,782	-	3,145	2,540	-	11,810	16,361	-	9,362	14,297
구로구	-	11,043	14,905	-	8,055	4,822	-	4,030	3,255	-	9,549	14,721	-	7,537	15,070
금천구	-	10,704	14,447	-	8,061	4,846	-	4,828	3,899	-	9,383	14,644	-	7,766	17,134
영등포	-	68,760	92,804	-	8,012	4,672	-	1,975	1,595	-	38,386	36,391	-	35,368	30,460
동작구	-	11,220	15,143	-	8,058	4,834	-	4,398	3,553	-	9,639	14,815	-	7,809	16,145
관악구	-	10,585	14,286	-	8,060	4,840	-	4,610	3,724	-	9,322	14,586	-	7,597	16,494
서초구	-	60,324	81,417	-	7,984	4,574	-	1,481	1,196	-	34,154	32,961	-	30,903	26,033
강남구	-	126,279	170,435	-	7,912	4,320	-	901	728	-	67,096	57,547	-	63,590	48,467
송파구	-	33,372	45,041	-	8,018	4,692	-	2,119	1,711	-	20,695	22,947	-	17,745	17,964
강동구	-	10,224	13,800	-	8,047	4,797	-	3,430	2,770	-	9,136	14,354	-	6,827	13,127
계	-	681,800	920,207	-	200,981	119,200	-	90,583	73,168	-	441,391	519,705	-	386,193	496,687

부 산	정세지주의			배분공식						절충안					
				재정력환산지수			역재정력배분지 수			정세지 + 재정력환산지수			정세지 + 역재정력배분지수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중 구	-	14,544	15,640	-	8,059	7,896	-	4,474	4,008	-	11,301	11,485	-	9,509	8,858
서 구	-	5,925	6,372	-	8,075	8,210	-	8,060	7,220	-	7,000	7,458	-	6,993	7,524
동 구	-	11,582	12,455	-	8,069	8,092	-	6,196	5,550	-	9,826	10,151	-	8,889	8,707
영동구	-	4,455	4,791	-	8,075	8,208	-	8,029	7,193	-	6,265	6,740	-	6,243	6,893
부산진	-	19,311	20,766	-	8,061	7,934	-	4,730	4,237	-	13,686	13,832	-	12,020	11,002
동래구	-	12,636	13,588	-	8,062	7,956	-	4,891	4,381	-	10,349	10,588	-	8,763	8,326
남 구	-	8,605	9,253	-	8,066	8,028	-	5,499	4,926	-	8,335	8,662	-	7,052	7,031
북 구	-	4,064	4,370	-	8,072	8,152	-	7,023	6,291	-	6,068	6,517	-	5,543	6,099
해운대	-	7,039	7,570	-	8,054	7,801	-	3,939	3,529	-	7,547	7,769	-	5,490	5,401
사하구	-	11,724	12,607	-	8,060	7,922	-	4,642	4,158	-	9,892	10,123	-	8,183	7,790
금정구	-	7,995	8,598	-	8,066	8,034	-	5,562	4,983	-	8,031	8,368	-	6,779	6,817
강서구	-	4,160	4,474	-	8,082	8,328	-	11,567	10,361	-	6,121	6,664	-	7,863	8,991
연제구	-	6,354	6,833	-	8,069	8,094	-	6,216	5,568	-	7,211	7,601	-	6,285	6,545
수영구	-	7,769	8,354	-	8,069	8,083	-	6,086	5,451	-	7,919	8,285	-	6,927	7,052
사상구	-	8,295	8,920	-	-	-	-			-	4,147	4,047	-	4,147	3,450
기장군	-	2,976	3,200	-	8,047	7,670	-	3,385	3,033	-	5,512	5,811	-	3,181	3,852
계	-	137,434	147,791	-	120,986	120,408	-	90,299	80,889	-	129,210	134,101	-	113,867	114,338

### 대구

종 구	-	17,262	17,869	-	8,067	14,563	-	5,849	7,159	-	12,665	17,054	-	11,556	14,499
동 구	-	7,330	7,588	-	8,082	15,899	-	11,755	14,388	-	7,706	11,364	-	9,543	11,902
서 구	-	8,352	8,646	-	8,080	15,712	-	10,298	12,604	-	8,216	11,928	-	9,325	11,643
남 구	-	6,815	7,055	-	8,081	15,853	-	11,357	13,900	-	7,448	11,020	-	9,086	11,330
북 구	-	8,837	9,147	-	8,077	15,413	-	8,597	10,522	-	8,457	12,107	-	8,716	10,894
수성구	-	15,058	15,587	-	8,075	15,260	-	7,929	9,704	-	11,567	15,962	-	11,493	14,399
달서구	-	12,769	13,217	-	8,075	15,236	-	7,830	9,583	-	10,422	14,509	-	10,299	12,896
달성군	-	4,777	4,944	-	8,047	12,626	-	3,385	4,143	-	6,412	8,367	-	4,081	5,107
계	-	81,200	84,053	-	64,584	120,562	-	67,000	82,003	-	72,893	102,311	-	74,099	92,670

인천	정세지주의			배분공식						절충안					
				재정력환산지수			역재정력배분지수			정세지 + 재정력환산지수			정세지 + 역재정력배분지수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중구	-	8,044	9,180	-	8,059	11,925	-	4,492	5,734	-	8,051	10,673	-	6,268	7,474
동구	-	4,818	5,498	-	8,074	12,530	-	7,643	9,756	-	6,446	8,659	-	6,230	7,672
남구	-	11,775	13,438	-	8,059	11,929	-	4,504	5,750	-	9,917	13,298	-	8,139	9,604
연수구	-	3,023	3,450	-	8,061	12,011	-	4,769	6,087	-	5,542	7,179	-	3,896	4,797
남동구	-	12,470	14,232	-	8,055	11,761	-	4,041	5,158	-	10,263	13,716	-	8,255	9,700
부평구	-	15,168	17,311	-	8,051	11,613	-	3,704	4,728	-	11,610	15,550	-	9,436	11,018
계양구	-	3,866	4,412	-	8,064	12,117	-	5,168	6,596	-	5,965	7,816	-	4,517	5,534
서구	-	11,652	13,298	-	8,035	10,984	-	2,736	3,493	-	9,843	12,813	-	7,194	8,393
강화군	-	974	1,112	-	8,077	12,641	-	8,770	11,195	-	4,526	6,004	-	4,872	6,213
옹진군	-	345	394	-	8,087	13,022	-	17,761	22,671	-	4,216	5,722	-	9,053	11,657
계	-	72,135	82,325	-	80,622	120,533	-	63,588	81,168	-	76,379	101,430	-	67,860	82,062

### 광주

동구	-	10,685	10,499	-	8,057	24,016	-	4,291	17,422	-	9,371	19,143	-	7,489	15,925
서구	-	5,583	5,486	-	8,056	23,738	-	4,119	16,722	-	6,820	13,644	-	4,851	11,032
남구	-	3,761	3,695	-	8,068	25,917	-	6,015	24,421	-	5,914	12,420	-	4,888	12,113
북구	-	11,831	11,625	-	8,056	23,882	-	4,206	17,077	-	9,943	20,314	-	8,018	16,845
광산구	-	5,767	5,667	-	8,063	25,043	-	5,077	20,614	-	6,915	14,263	-	5,423	12,584
계	-	37,627	36,972	-	40,300	122,596	-	23,708	96,256	-	38,963	79,784	-	30,669	68,499

### 대전

동구	-	6,236	5,270	-	8,058	25,486	-	4,435	21,038	-	7,147	13,873	-	5,335	11,874
중구	-	11,362	9,601	-	8,049	24,250	-	3,521	16,702	-	9,705	17,978	-	7,441	13,803
서구	-	8,422	7,117	-	8,035	22,468	-	2,714	12,876	-	8,229	14,804	-	5,568	10,411
유성구	-	10,755	9,089	-	8,045	23,750	-	3,250	15,417	-	9,400	17,280	-	7,003	12,924
대덕구	-	8,442	7,134	-	8,055	25,039	-	4,054	19,231	-	8,248	15,667	-	6,248	12,725
계	-	45,217	38,211	-	40,242	120,993	-	17,974	85,264	-	42,729	79,602	-	31,595	61,737

경기	징세지주의			배분공식						결충안					
				재정력환산지수			역재정력배분지수			징세지 + 재정력환산지수			징세지 + 역재정력배분지수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수원	97,865	41,909	26,217	11,319	7,996	3,656	2,059	1,665	939	54,592	24,952	13,014	49,962	21,787	9,514
성남	58,093	24,877	15,563	11,289	7,983	3,633	1,812	1,465	827	34,691	16,430	8,679	29,952	13,171	5,944
의정부	14,397	6,165	3,857	11,381	8,025	3,705	2,883	2,331	1,315	12,889	7,095	3,979	8,640	4,249	2,695
안양	46,936	20,099	12,574	11,284	7,980	3,629	1,775	1,436	810	29,110	14,040	7,464	24,356	10,768	4,959
부천	51,297	21,967	13,742	11,331	8,002	3,665	2,178	1,761	993	31,314	14,984	7,962	26,738	11,864	5,539
광명	16,677	7,141	4,468	11,395	8,031	3,715	3,161	2,556	1,442	14,036	7,586	4,234	9,919	4,849	3,032
동두천	3,449	1,477	924	11,465	8,063	3,770	6,296	5,092	2,872	7,457	4,770	2,833	4,872	3,284	3,460
안산	53,560	22,936	14,348	11,291	7,983	3,634	1,823	1,474	831	32,426	15,459	8,187	27,692	12,205	5,556
고양	34,381	14,723	9,211	11,227	7,954	3,584	1,447	1,170	660	22,804	11,339	6,071	17,914	7,947	3,706
과천	13,530	5,794	3,625	11,010	7,854	3,414	850	687	388	12,270	6,824	3,695	7,190	3,241	1,599
구리	9,288	3,977	2,488	11,387	8,027	3,709	2,985	2,414	1,362	10,338	6,002	3,427	6,137	3,196	2,304
평택	31,989	13,698	8,570	11,409	8,037	3,726	3,505	2,834	1,599	21,699	10,868	5,904	17,747	8,266	4,532
남양주	12,172	5,212	3,261	11,425	8,045	3,739	4,024	3,254	1,835	11,798	6,629	3,760	8,098	4,233	3,075
오산	7,306	3,129	1,957	11,424	8,044	3,738	3,979	3,218	1,815	9,365	5,586	3,231	5,642	3,173	2,631
시흥	14,966	6,409	4,009	11,406	8,036	3,724	3,439	2,781	1,569	13,186	7,222	4,054	9,203	4,595	3,024
군포	17,187	7,360	4,604	11,347	8,009	3,677	2,356	1,905	1,075	14,267	7,685	4,265	9,772	4,633	2,672
의왕	10,972	4,699	2,939	11,410	8,038	3,727	3,536	2,860	1,613	11,191	6,368	3,622	7,254	3,779	2,726
하남	6,215	2,662	1,665	11,426	8,045	3,740	4,046	3,272	1,846	8,821	5,353	3,113	5,131	2,967	2,570
양주	7,384	3,162	1,978	11,425	8,045	3,738	3,997	3,232	1,823	9,405	5,604	3,239	5,691	3,197	2,647
여주	7,109	3,044	1,904	11,434	8,049	3,746	4,373	3,536	1,995	9,271	5,547	3,214	5,741	3,290	2,812
화성	20,200	8,650	5,411	11,390	8,029	3,712	3,064	2,478	1,397	15,795	8,340	4,614	11,632	5,564	3,289
파주	11,037	4,727	2,957	11,430	8,047	3,743	4,193	3,391	1,912	11,234	6,387	3,639	7,615	4,058	3,062
광주	9,025	3,865	2,418	11,391	8,029	3,712	3,081	2,492	1,405	10,208	5,947	3,401	6,053	3,178	2,329
연천	2,023	866	542	11,494	8,076	3,793	10,426	8,431	4,756	6,759	4,471	2,692	6,225	4,649	5,410
포천	6,954	2,978	1,863	11,435	8,049	3,746	4,395	3,554	2,005	9,195	5,513	3,198	5,675	3,266	2,809
가평	2,651	1,135	710	11,488	8,074	3,788	9,236	7,469	4,213	7,069	4,605	2,758	5,943	4,303	4,867
양평	4,478	1,918	1,200	11,490	8,075	3,790	9,661	7,812	4,407	7,984	4,996	2,957	7,069	4,865	5,239
이천	39,470	16,902	10,574	11,400	8,033	3,719	3,270	2,644	1,492	25,435	12,468	6,712	21,370	9,773	5,062
용인	61,554	26,359	16,490	11,268	7,973	3,616	1,665	1,347	760	36,411	17,166	9,044	31,610	13,853	6,170
안성	7,830	3,353	2,098	11,457	8,059	3,764	5,608	4,535	2,558	9,644	5,706	3,304	6,719	3,945	3,494
김포	8,944	3,830	2,396	11,418	8,041	3,733	3,770	3,048	1,719	10,181	5,985	3,405	6,357	3,439	2,668
계	688,940	295,023	184,562	352,746	248,731	114,785	118,893	96,144	54,233	520,845	271,877	149,671	403,919	195,587	119,396

강원	장세지주의			배분공식						절충안					
				재정력환산지수			역재정력배분지수			장세지 + 재정력환산지수			장세지 + 역재정력배분지수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춘천	20,251	8,672	6,153	11,457	8,059	6,743	5,634	4,556	5,257	15,854	8,366	10,392	12,943	6,614	14,170
원주	17,736	7,595	5,388	11,451	8,057	6,685	5,231	4,230	4,881	14,593	7,826	9,340	11,483	5,912	12,488
강릉	13,958	5,977	4,240	11,460	8,061	6,773	5,867	4,744	5,474	12,709	7,019	7,814	9,912	5,360	10,293
동해	6,517	2,791	1,980	11,472	8,066	6,887	6,971	5,637	6,505	8,994	5,428	4,791	6,744	4,214	5,929
태백	2,886	1,236	877	11,506	8,082	7,205	14,603	11,809	13,626	7,196	4,659	3,396	8,745	6,522	5,683
속초	6,275	2,687	1,906	11,451	8,057	6,688	5,252	4,247	4,901	8,863	5,372	4,630	5,763	3,468	5,321
삼척	4,869	2,085	1,479	11,499	8,079	7,144	12,057	9,750	11,251	8,184	5,082	4,192	8,463	5,918	6,249
홍천	2,903	1,243	882	11,503	8,081	7,180	13,429	10,860	12,531	7,203	4,662	3,395	8,166	6,051	5,382
횡성	2,398	1,027	729	11,507	8,082	7,211	14,927	12,071	13,928	6,953	4,554	3,197	8,663	6,548	5,464
영월	3,582	1,534	1,088	11,505	8,081	7,192	13,990	11,313	13,054	7,543	4,807	3,678	8,786	6,424	5,956
평창	2,782	1,191	845	11,502	8,080	7,167	12,905	10,436	12,042	7,142	4,636	3,341	7,843	5,814	5,167
정선	1,792	768	545	11,513	8,085	7,274	19,166	15,499	17,884	6,653	4,426	2,968	10,479	8,134	6,211
철원	1,855	794	564	11,498	8,078	7,128	11,550	9,340	10,778	6,677	4,436	2,949	6,703	5,067	4,228
화천	1,995	855	606	11,506	8,082	7,206	14,639	11,839	13,660	6,751	4,468	3,030	8,317	6,346	5,136
양구	838	359	255	11,516	8,086	7,299	21,569	17,443	20,127	6,177	4,222	2,583	11,203	8,900	6,251
인제	1,424	610	433	11,512	8,085	7,264	18,303	14,802	17,079	6,468	4,347	2,813	9,863	7,706	5,751
고성	1,711	733	520	11,500	8,079	7,148	12,206	9,870	11,389	6,605	4,406	2,895	6,958	5,301	4,311
양양	1,291	553	392	11,508	8,083	7,227	15,775	12,757	14,720	6,399	4,318	2,747	8,533	6,654	4,996
계	95,062	40,710	28,881	206,866	145,363	127,421	224,074	181,203	209,087	150,964	93,034	78,151	159,567	110,953	118,986
총부															
청주	68,888	29,500	17,256	11,368	8,018	9,266	2,653	2,145	3,745	40,128	18,759	24,541	35,771	15,823	27,929
충주	12,073	5,170	3,024	11,465	8,063	11,201	6,268	5,069	8,849	11,769	6,616	7,291	9,170	5,119	7,336
제천	6,398	2,740	1,603	11,484	8,072	11,583	8,580	6,938	12,113	8,941	5,406	5,627	7,489	4,839	6,099
청원	7,523	3,221	1,884	11,479	8,069	11,465	7,706	6,232	10,880	9,501	5,645	5,944	7,614	4,777	6,170
보은	1,579	676	396	11,514	8,085	12,165	19,563	15,820	27,620	6,547	4,381	4,295	10,571	8,248	8,844
옥천	4,852	2,078	1,216	11,499	8,078	11,863	11,753	9,504	16,593	8,176	5,078	5,229	8,303	5,791	6,833
영동	2,203	943	552	11,510	8,084	12,090	16,803	13,588	23,724	6,857	4,514	4,467	9,503	7,266	7,926
진천	6,296	2,696	1,577	11,472	8,066	11,345	6,978	5,643	9,851	8,884	5,381	5,521	6,637	4,169	5,386
괴산	3,528	1,511	884	11,511	8,084	12,106	17,328	14,012	24,464	7,520	4,797	4,889	10,428	7,761	8,662
음성	8,338	3,570	2,089	11,467	8,064	11,238	6,438	5,206	9,090	9,902	5,817	6,129	7,388	4,388	5,953
단양	3,704	1,586	928	11,499	8,079	11,875	11,948	9,662	16,868	7,602	4,833	4,872	7,826	5,624	6,468
계	125,383	53,691	31,408	126,268	88,762	126,197	116,018	93,819	163,797	125,827	71,227	78,805	120,700	73,755	97,606

충남	징세자주의			배분공식						절충안					
				재정력환산지수			역제정력배분지수			징세지 + 재정력환산지수			징세지 + 역제정력배분지수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천안	27,856	11,929	8,102	11,427	8,045	7,777	4,069	3,291	4,754	19,641	9,987	12,229	15,962	7,609	16,451
공주	5,452	2,334	1,586	11,496	8,077	8,565	10,903	8,817	12,737	8,474	5,206	4,614	8,177	5,576	7,355
보령	7,005	3,000	2,038	11,492	8,076	8,528	10,121	8,185	11,824	9,249	5,538	5,148	8,563	5,592	7,860
아산	19,779	8,470	5,753	11,463	8,062	8,196	6,106	4,938	7,134	15,621	8,266	9,526	12,942	6,704	12,997
서산	8,439	3,614	2,455	11,478	8,069	8,369	7,576	6,126	8,850	9,959	5,841	5,598	8,008	4,870	7,579
금산	2,433	1,042	708	11,506	8,082	8,680	14,452	11,687	16,883	6,969	4,562	3,591	8,442	6,364	7,204
연기	5,803	2,485	1,688	11,474	8,067	8,319	7,159	5,789	8,363	8,639	5,276	4,660	6,481	4,137	6,009
논산	7,274	3,115	2,116	11,476	8,068	8,340	7,371	5,961	8,612	9,375	5,591	5,183	7,322	4,538	6,877
부여	4,869	2,085	1,416	11,498	8,078	8,589	11,498	9,298	13,432	8,184	5,082	4,417	8,184	5,692	7,289
서천	4,721	2,022	1,373	11,500	8,079	8,611	12,106	9,790	14,142	8,111	5,050	4,372	8,414	5,906	7,459
청양	1,132	485	329	11,515	8,086	8,787	20,690	16,732	24,171	6,323	4,285	3,168	10,911	8,608	9,066
홍성	3,377	1,446	982	11,489	8,074	8,492	9,444	7,637	11,033	7,433	4,760	3,863	6,410	4,542	5,657
예산	3,367	1,442	979	11,489	8,074	8,494	9,472	7,659	11,065	7,428	4,758	3,860	6,419	4,551	5,662
태안	4,354	1,865	1,266	11,493	8,076	8,537	10,302	8,331	12,035	7,924	4,970	4,220	7,328	5,098	6,526
당진	7,777	3,330	2,262	11,464	8,062	8,201	6,144	4,969	7,178	9,620	5,696	5,315	6,960	4,149	6,642
계	113,637	48,664	33,052	172,260	121,075	126,475	147,413	119,210	172,213	142,950	84,868	79,764	130,523	83,936	120,633
전북															
전주	43,117	18,464	14,926	11,373	8,021	6,986	2,744	2,219	1,743	27,245	13,242	18,932	22,930	10,341	19,983
군산	17,949	7,686	6,214	11,457	8,059	8,369	5,606	4,534	3,562	14,703	7,873	9,637	11,777	6,110	9,196
익산	17,474	7,483	6,049	11,460	8,061	8,408	5,822	4,708	3,698	14,467	7,772	9,469	11,648	6,095	9,024
정읍	4,833	2,069	1,673	11,503	8,080	9,114	13,151	10,635	8,355	8,168	5,075	4,805	8,992	6,353	4,764
남원	4,544	1,946	1,573	11,505	8,081	9,147	13,949	11,280	8,862	8,024	5,013	4,704	9,246	6,613	4,791
김제	3,309	1,417	1,146	11,506	8,082	9,176	14,780	11,952	9,389	7,408	4,750	4,236	9,045	6,685	4,397
완주	5,525	2,366	1,913	11,503	8,080	9,116	13,187	10,664	8,378	8,514	5,223	5,074	9,356	6,515	5,084
전안	1,022	438	354	11,521	8,089	9,425	29,419	23,791	18,690	6,271	4,263	3,431	15,220	12,114	6,243
무주	1,177	504	408	11,510	8,084	9,238	16,846	13,623	10,702	6,344	4,294	3,430	9,012	7,063	3,842
장수	593	254	205	11,521	8,089	9,422	29,084	23,520	18,477	6,057	4,172	3,264	14,839	11,887	5,984
임실	1,007	431	349	11,521	8,089	9,419	28,738	23,240	18,257	6,264	4,260	3,423	14,873	11,836	6,102
순창	717	307	248	11,522	8,089	9,433	30,470	24,640	19,357	6,120	4,198	3,315	15,594	12,474	6,312
고창	1,598	684	553	11,513	8,085	9,283	18,794	15,198	11,939	6,555	4,385	3,608	10,196	7,941	4,414
부안	1,826	782	632	11,511	8,084	9,257	17,627	14,254	11,198	6,668	4,433	3,687	9,726	7,518	4,288
계	104,691	44,831	36,242	160,926	113,073	125,783	240,217	194,258	152,607	132,808	78,953	81,015	172,454	119,545	94,424

전남	징세지주의			배분공식						결충안					
				재정력환산지수			역재정력배분지수			징세지 + 재정력환산지수			징세지 + 역재정력배분지수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목포	11,994	5,136	3,172	11,454	8,058	5,036	5,450	4,407	2,617	11,724	6,597	5,510	8,722	4,772	6,282
여수	8,327	3,566	2,203	11,458	8,060	5,055	5,671	4,586	2,723	9,893	5,813	4,314	6,999	4,076	4,626
순천	14,172	6,069	3,748	11,475	8,067	5,155	7,221	5,839	3,467	12,824	7,068	6,262	10,697	5,954	7,532
나주	4,665	1,998	1,234	11,504	8,081	5,328	13,629	11,021	6,544	8,084	5,039	3,198	9,147	6,510	4,057
여천	20,815	8,914	5,506	11,383	8,025	4,611	2,906	2,350	1,396	16,099	8,469	8,270	11,861	5,632	9,984
광양	23,124	9,902	6,116	11,450	8,056	5,008	5,148	4,163	2,472	17,287	8,979	9,151	14,136	7,032	11,360
담양	2,045	876	541	11,506	8,082	5,342	14,709	11,895	7,063	6,775	4,479	2,343	8,377	6,385	3,003
곡성	1,490	638	394	11,515	8,086	5,391	20,283	16,402	9,739	6,502	4,362	2,177	10,886	8,520	3,529
구례	1,122	480	297	11,516	8,086	5,400	21,723	17,567	10,430	6,319	4,283	2,059	11,422	9,023	3,561
여천	1,036	444	274	11,516	8,086	5,397	21,215	17,156	10,187	6,276	4,265	2,030	11,126	8,800	3,451
고흥	1,696	726	449	11,513	8,085	5,383	19,050	15,405	9,147	6,605	4,406	2,242	10,373	8,066	3,451
보성	1,503	644	398	11,516	8,086	5,398	21,290	17,217	10,223	6,510	4,365	2,183	11,397	8,990	3,676
화순	2,705	1,158	716	11,509	8,083	5,357	16,074	12,999	7,718	7,107	4,621	2,565	9,390	7,079	3,498
장흥	1,106	474	293	11,516	8,087	5,402	21,996	17,788	10,562	6,311	4,280	2,054	11,551	9,131	3,592
강진	1,657	710	438	11,514	8,085	5,388	19,755	15,976	9,486	6,586	4,397	2,231	10,706	8,343	3,532
해남	2,428	1,040	642	11,511	8,084	5,370	17,401	14,072	8,355	6,970	4,562	2,478	9,915	7,556	3,557
영암	5,331	2,283	1,410	11,505	8,081	5,332	13,963	11,292	6,705	8,418	5,182	3,418	9,647	6,787	4,410
무안	1,828	783	483	11,509	8,083	5,360	16,324	13,201	7,838	6,669	4,433	2,278	9,076	6,991	3,129
함평	1,997	470	290	11,515	8,086	5,396	20,969	16,958	10,069	6,306	4,278	2,049	11,033	8,714	3,445
영광	6,995	2,996	1,850	11,494	8,076	5,270	10,502	8,492	5,042	9,245	5,536	3,944	8,749	5,744	4,690
장성	2,867	1,228	758	11,510	8,084	5,367	17,039	13,779	8,182	7,189	4,656	2,621	9,953	7,504	3,708
완도	1,385	593	366	11,514	8,085	5,387	19,603	15,852	9,412	6,450	4,339	2,141	10,494	8,223	3,385
진도	954	409	252	11,518	8,087	5,411	23,937	19,357	11,493	6,236	4,248	2,007	12,446	9,883	3,795
신안	940	403	249	11,526	8,091	5,459	42,160	34,094	20,243	6,233	4,247	2,018	21,550	17,248	6,343
계	121,284	51,940	32,079	275,947	193,870	127,003	398,018	321,868	191,113	198,618	122,904	79,543	259,653	186,903	111,596

경북	징세자주의			배분공식						절충안					
				재정력환산지수			역제정력배분지수			징세지 + 재정력환산지수			징세지 + 역제정력배분지수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포항	68,435	29,306	21,036	11,392	8,030	4,939	3,101	2,508	1,341	39,914	18,668	17,041	35,768	15,907	17,345
경주	19,909	8,526	6,120	11,455	8,059	5,274	5,497	4,445	2,377	15,682	8,292	6,427	12,703	6,486	5,768
김천	7,151	3,062	2,198	11,490	8,074	5,458	9,540	7,715	4,125	9,320	5,568	3,673	8,345	5,388	3,260
안동	9,885	4,233	3,039	11,486	8,073	5,437	8,798	7,115	3,804	10,685	6,153	4,270	9,341	5,674	3,817
구미	55,548	23,787	17,075	11,414	8,040	5,057	3,661	2,961	1,583	33,481	15,914	14,233	29,605	13,374	14,259
영주	5,950	2,548	1,829	11,494	8,076	5,480	10,471	8,468	4,528	8,722	5,312	3,416	8,211	5,508	3,111
영천	6,245	2,674	1,920	11,491	8,075	5,465	9,815	7,937	4,244	8,868	5,375	3,475	8,030	5,305	3,080
상주	3,642	1,560	1,120	11,509	8,083	5,562	16,353	13,224	7,071	7,576	4,821	2,936	9,998	7,392	3,466
문경	2,850	1,221	876	11,508	8,083	5,553	15,459	12,501	6,685	7,179	4,652	2,758	9,155	6,861	3,131
경산	13,099	5,609	4,026	11,434	8,049	5,163	4,374	3,537	1,891	12,266	6,829	4,877	8,736	4,573	3,914
군위	900	386	277	11,517	8,087	5,601	22,318	18,048	9,650	6,209	4,236	2,344	11,609	9,217	3,728
의성	1,967	842	605	11,510	8,084	5,566	16,881	13,652	7,300	6,739	4,463	2,567	9,424	7,247	3,137
청송	863	370	265	11,518	8,087	5,609	24,316	19,663	10,514	6,191	4,228	2,339	12,590	10,017	4,033
영양	476	204	146	11,525	8,091	5,646	38,616	31,228	16,698	6,000	4,147	2,267	19,546	15,716	6,184
영덕	1,181	506	363	11,512	8,085	5,576	18,092	14,630	7,823	6,347	4,295	2,397	9,637	7,568	3,133
청도	3,001	1,285	923	11,511	8,084	5,569	17,240	13,942	7,455	7,256	4,685	2,797	10,121	7,614	3,448
고령	1,686	722	518	11,493	8,076	5,476	10,276	8,310	4,443	6,590	4,399	2,470	5,981	4,516	2,030
성주	1,718	736	528	11,499	8,079	5,507	11,907	9,629	5,149	6,608	4,407	2,489	6,812	5,183	2,294
칠곡	3,625	1,552	1,114	11,460	8,061	5,301	5,856	4,736	2,532	7,542	4,807	2,832	4,740	3,144	1,813
예천	1,479	633	455	11,512	8,085	5,577	18,314	14,810	7,919	6,495	4,359	2,463	9,896	7,722	3,242
봉화	1,793	768	551	11,520	8,088	5,620	27,257	22,042	11,786	6,656	4,428	2,549	14,525	11,405	4,724
울진	5,312	2,275	1,633	11,497	8,078	5,497	11,348	9,177	4,907	8,405	5,176	3,281	8,330	5,725	3,092
울릉	495	212	152	11,522	8,089	5,631	31,069	25,125	13,434	6,009	4,151	2,266	15,782	12,668	5,003
계	217,212	93,017	66,768	264,269	185,716	125,564	340,559	275,403	147,299	240,740	139,365	96,167	278,885	184,210	107,012

경 남	징세자주의			배분공식						절충안					
				재정력환산지수			역재정력배분지수			징세지 + 재정력환산지수			징세지 + 역재정력배분지수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창 원	60,271	25,810	19,282	11,336	8,004	5,322	2,232	1,805	947	35,804	16,907	12,718	31,252	13,807	9,676
울 산	136,889	58,620	43,793	11,312	7,993	5,225	1,993	1,611	845	74,101	33,306	25,630	69,441	30,116	21,289
마 산	35,226	15,085	11,269	11,386	8,027	5,524	2,983	2,412	1,266	23,306	11,556	8,578	19,105	8,748	6,080
진 주	18,282	7,829	5,849	11,451	8,057	5,784	5,235	4,234	2,221	14,867	7,943	5,835	11,759	6,031	3,953
진 해	7,361	3,152	2,355	11,447	8,055	5,767	4,998	4,041	2,120	9,404	5,604	3,980	6,179	3,597	2,237
통 영	6,927	2,966	2,216	11,484	8,072	5,914	8,455	6,837	3,587	9,206	5,519	3,977	7,691	4,902	2,944
사 천	4,646	1,990	1,486	11,496	8,077	5,962	10,939	8,846	4,641	8,071	5,033	3,614	7,793	5,418	3,152
김 해	14,414	6,173	4,611	11,430	8,047	5,700	4,214	3,408	1,788	12,922	7,110	5,142	9,314	4,790	3,136
밀 양	5,000	2,141	1,600	11,495	8,077	5,960	10,790	8,725	4,578	8,248	5,109	3,673	7,895	5,434	3,172
거 제	14,576	6,242	4,663	11,460	8,061	5,821	5,873	4,749	2,492	13,018	7,151	5,226	10,225	5,496	3,532
의 령	854	366	273	11,520	8,088	6,062	27,769	22,456	11,782	6,187	4,227	3,020	14,312	11,411	6,334
함 안	3,743	1,603	1,197	11,484	8,072	5,917	8,582	6,940	3,641	7,613	4,837	3,440	6,162	4,271	2,487
창 넝	2,176	932	696	11,493	8,076	5,953	10,325	8,349	4,381	6,835	4,504	3,191	6,251	4,641	2,638
양 산	19,403	8,309	6,207	11,375	8,022	5,478	2,768	2,238	1,174	15,389	8,165	5,880	11,085	5,273	3,573
고 성	4,227	1,810	1,352	11,497	8,078	5,967	11,274	9,117	4,783	7,862	4,944	3,545	7,751	5,464	3,163
남 해	1,446	619	463	11,507	8,082	6,009	15,239	12,323	6,466	6,477	4,351	3,095	8,343	6,472	3,625
하 동	1,950	835	624	11,512	8,084	6,027	17,969	14,531	7,624	6,731	4,460	3,188	9,960	7,683	4,312
산 청	1,482	635	474	11,519	8,088	6,057	25,830	20,888	10,999	6,501	4,361	3,124	13,656	10,761	5,997
합 양	1,030	441	329	11,517	8,087	6,050	23,393	18,918	9,925	6,273	4,264	3,044	12,211	9,679	5,384
거 창	2,124	909	679	11,506	8,082	6,005	14,716	11,900	6,244	6,815	4,496	3,207	8,420	6,405	3,611
합 천	1,595	683	510	11,513	8,085	6,030	18,604	15,045	7,893	6,554	4,384	3,130	10,100	7,864	4,400
계	343,624	147,150	109,931	240,740	169,314	122,534	234,181	189,373	99,357	292,184	158,231	116,237	288,905	168,263	104,645

#### 제주

제 주	24,064	10,305	8,940	11,417	8,041	25,596	3,741	3,025	21,613	17,740	9,173	30,322	13,902	6,665	33,669
서귀포	5,730	2,454	2,129	11,452	8,057	30,355	5,278	4,269	30,496	8,591	5,255	13,931	5,504	3,361	14,909
북제주	3,209	1,374	1,192	11,483	8,071	34,637	8,376	6,774	48,394	7,346	4,723	12,680	5,793	4,074	16,863
남제주	3,023	1,295	1,123	11,487	8,073	35,213	9,095	7,355	52,544	7,255	4,684	12,660	6,059	4,324	17,777
계	36,026	15,428	13,385	45,839	32,242	125,801	26,490	21,423	153,047	40,932	23,835	69,593	31,258	18,424	83,218

## <부록 4> 각 대안별 세수확충효과(기초자치단체)

서 울	정세지주의			배분공식						절충안					
				재정력환산지수			역재정력배분지수			정세지 + 재정력환산지수			정세지 + 역재정력배분지수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종로구	100.0	205.9	242.9	100.0	116.6	109.7	100.0	104.5	103.6	100.0	161.3	161.6	100.0	155.2	150.9
중 구	100.0	232.5	278.8	100.0	109.8	105.6	100.0	101.7	101.4	100.0	171.1	162.6	100.0	167.1	152.9
용산구	100.0	180.1	208.2	100.0	127.2	116.2	100.0	111.0	108.9	100.0	153.7	165.8	100.0	145.6	159.5
성동구	100.0	162.4	184.3	100.0	139.1	123.4	100.0	121.1	117.0	100.0	150.8	174.9	100.0	141.7	180.5
광진구	100.0	163.1	185.1	100.0	133.6	120.1	100.0	115.8	112.8	100.0	148.3	167.9	100.0	139.4	166.3
동대문	100.0	155.5	174.9	100.0	131.7	119.0	100.0	115.3	112.4	100.0	143.6	162.5	100.0	135.4	162.3
중랑구	100.0	138.8	152.4	100.0	146.0	127.6	100.0	125.5	120.6	100.0	142.4	175.0	100.0	132.1	184.0
성북구	100.0	153.1	171.7	100.0	133.9	120.3	100.0	116.8	113.6	100.0	143.5	164.5	100.0	135.0	165.5
강북구	100.0	144.9	160.6	100.0	152.0	131.4	100.0	137.1	130.0	100.0	148.4	185.5	100.0	141.0	218.1
도봉구	100.0	142.4	157.2	100.0	155.1	133.2	100.0	134.6	128.0	100.0	148.8	188.5	100.0	138.5	210.4
노원구	100.0	147.2	163.7	100.0	139.3	123.6	100.0	122.5	118.2	100.0	143.3	169.5	100.0	134.9	179.0
은평구	100.0	143.0	158.0	100.0	140.6	124.4	100.0	123.4	118.9	100.0	141.8	169.6	100.0	133.2	179.7
서대문	100.0	166.1	189.2	100.0	139.7	123.8	100.0	121.9	117.7	100.0	152.9	177.2	100.0	144.0	184.1
마포구	100.0	180.7	208.9	100.0	128.6	117.1	100.0	113.2	110.7	100.0	154.6	168.0	100.0	147.0	165.7
양천구	100.0	155.0	174.3	100.0	137.1	122.2	100.0	119.0	115.3	100.0	146.1	169.5	100.0	137.0	172.1
강서구	100.0	147.4	163.9	100.0	124.5	114.5	100.0	109.6	107.7	100.0	135.9	149.8	100.0	128.5	143.5
구로구	100.0	145.5	161.5	100.0	133.2	119.9	100.0	116.6	113.4	100.0	139.4	160.7	100.0	131.1	162.1
금천구	100.0	159.0	179.7	100.0	144.5	126.7	100.0	126.6	121.5	100.0	151.8	180.8	100.0	142.8	194.5
영등포	100.0	214.5	254.6	100.0	113.3	107.8	100.0	103.3	102.7	100.0	163.9	160.6	100.0	158.9	150.7
동작구	100.0	147.2	163.7	100.0	133.9	120.3	100.0	118.5	114.9	100.0	140.5	162.3	100.0	132.8	167.9
관악구	100.0	151.6	169.6	100.0	139.3	123.6	100.0	122.5	118.1	100.0	145.4	171.1	100.0	137.0	180.3
서초구	100.0	171.6	196.7	100.0	109.5	105.4	100.0	101.8	101.4	100.0	140.6	139.1	100.0	136.7	130.9
강남구	100.0	189.5	220.8	100.0	105.6	103.1	100.0	100.6	100.5	100.0	147.6	140.8	100.0	145.1	134.4
송파구	100.0	153.4	172.0	100.0	112.8	107.5	100.0	103.4	102.7	100.0	133.1	136.7	100.0	128.4	128.7
강동구	100.0	135.7	148.2	100.0	128.1	116.8	100.0	112.0	109.7	100.0	131.9	150.2	100.0	123.9	145.9
계	100.0	175.2	201.4	100.0	122.2	113.1	100.0	110.0	108.1	100.0	148.7	157.3	100.0	142.6	154.7

부 산	정세지주의			배분공식						절충안					
				재정력환산지수			역재정력배분지수			정세지 + 재정력환산지수			정세지 + 역재정력배분지수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중 구	100.0	224.4	233.8	100.0	168.9	167.5	100.0	138.3	134.3	100.0	196.6	198.2	100.0	181.3	175.8
서 구	100.0	180.2	186.2	100.0	209.3	211.1	100.0	209.1	197.7	100.0	194.7	200.9	100.0	194.6	201.8
동 구	100.0	198.6	206.1	100.0	168.7	168.9	100.0	152.8	147.3	100.0	183.7	186.5	100.0	175.7	174.2
영동구	100.0	162.6	167.3	100.0	213.5	215.4	100.0	212.8	201.1	100.0	188.1	194.7	100.0	187.7	196.9
부산진	100.0	162.3	167.0	100.0	126.0	125.6	100.0	115.3	113.7	100.0	144.2	144.6	100.0	138.8	135.5
동래구	100.0	171.4	176.7	100.0	145.5	144.9	100.0	127.6	124.7	100.0	158.4	159.8	100.0	149.5	147.0
남 구	100.0	164.5	169.3	100.0	160.4	160.2	100.0	141.2	136.9	100.0	162.5	164.9	100.0	152.8	152.7
북 구	100.0	146.4	149.9	100.0	192.2	193.1	100.0	180.2	171.8	100.0	169.3	174.4	100.0	163.3	169.6
해운대	100.0	131.9	134.3	100.0	136.5	135.4	100.0	117.9	116.0	100.0	134.2	135.2	100.0	124.9	124.5
사하구	100.0	152.2	156.1	100.0	135.9	135.3	100.0	120.7	118.5	100.0	144.0	145.1	100.0	136.4	134.7
금정구	100.0	150.7	154.5	100.0	151.1	150.9	100.0	135.2	131.6	100.0	150.9	153.0	100.0	143.0	143.2
강서구	100.0	157.3	161.7	100.0	211.4	214.8	100.0	259.4	242.8	100.0	184.4	191.8	100.0	208.4	223.9
연제구	100.0	151.5	155.4	100.0	165.4	165.6	100.0	150.4	145.1	100.0	158.5	161.6	100.0	151.0	153.1
수영구	100.0	163.2	168.0	100.0	165.7	165.8	100.0	149.5	144.4	100.0	164.4	167.4	100.0	156.4	157.4
사상구	100.0	147.5	151.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3.7	123.2	100.0	123.7	119.8
기장군	100.0	118.5	119.8	100.0	149.9	147.6	100.0	121.0	118.8	100.0	134.2	136.0	100.0	119.7	123.9
계	100.0	158.6	163.0	100.0	151.6	151.3	100.0	138.5	134.5	100.0	155.1	157.2	100.0	148.6	148.8

### 대구

중 구	100.0	198.3	201.8	100.0	145.9	182.9	100.0	133.3	140.8	100.0	172.1	197.1	100.0	165.8	182.6
동 구	100.0	148.3	150.0	100.0	153.3	204.8	100.0	177.5	194.8	100.0	150.8	174.9	100.0	162.9	178.4
서 구	100.0	159.3	161.3	100.0	157.3	211.5	100.0	173.1	189.4	100.0	158.3	184.6	100.0	166.2	182.6
남 구	100.0	167.5	169.9	100.0	180.1	257.1	100.0	212.6	237.8	100.0	173.8	209.2	100.0	190.0	212.3
북 구	100.0	142.8	144.3	100.0	139.1	174.6	100.0	141.6	150.9	100.0	140.9	158.6	100.0	142.2	152.7
수성구	100.0	168.3	170.7	100.0	136.6	169.3	100.0	136.0	144.0	100.0	152.5	172.4	100.0	152.2	165.3
달서구	100.0	153.2	155.0	100.0	133.6	163.4	100.0	132.6	139.9	100.0	143.4	160.4	100.0	142.9	153.7
달성군	100.0	116.5	117.1	100.0	127.8	143.7	100.0	111.7	114.3	100.0	122.2	128.9	100.0	114.1	117.7
계	100.0	153.2	155.1	100.0	142.3	179.0	100.0	143.9	153.8	100.0	147.8	167.1	100.0	148.6	160.7

인천	장세지주의			배분공식						절충안					
				재정력환산지수			역재정력배분지수			장세지 + 재정력환산지수			장세지 + 역재정력배분지수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중구	100.0	153.2	160.8	100.0	153.3	178.9	100.0	129.7	138.0	100.0	153.3	170.6	100.0	141.5	149.5
동구	100.0	179.7	191.0	100.0	233.6	307.4	100.0	226.5	261.5	100.0	206.7	243.3	100.0	203.1	227.0
남구	100.0	157.8	166.0	100.0	139.6	158.6	100.0	122.1	128.2	100.0	148.7	165.3	100.0	139.9	147.1
연수구	100.0	126.2	129.9	100.0	169.9	204.1	100.0	141.3	152.8	100.0	148.0	162.2	100.0	133.8	141.6
남동구	100.0	156.7	164.7	100.0	136.6	153.5	100.0	118.4	123.5	100.0	146.7	162.4	100.0	137.6	144.1
부평구	100.0	161.1	169.7	100.0	132.4	146.7	100.0	114.9	119.0	100.0	146.7	162.6	100.0	138.0	144.4
계양구	100.0	139.2	144.7	100.0	181.8	222.9	100.0	152.4	166.9	100.0	160.5	179.3	100.0	145.8	156.1
서구	100.0	131.4	135.9	100.0	121.7	129.6	100.0	107.4	109.4	100.0	126.6	134.6	100.0	119.4	122.7
강화군	100.0	110.0	111.4	100.0	182.7	229.4	100.0	189.8	214.6	100.0	146.3	161.5	100.0	149.9	163.6
옹진군	100.0	116.2	118.5	100.0	479.1	710.5	100.0	932.7	1,162.9	100.0	297.7	368.3	100.0	524.4	646.5
계	100.0	145.5	151.9	100.0	150.8	175.9	100.0	140.1	151.1	100.0	148.1	163.9	100.0	142.8	151.7
<b>광주</b>															
동구	100.0	175.1	173.8	100.0	156.7	268.9	100.0	130.2	222.5	100.0	165.9	234.6	100.0	152.7	212.0
서구	100.0	143.8	143.0	100.0	163.2	286.2	100.0	132.3	231.2	100.0	153.5	207.0	100.0	138.1	186.5
남구	100.0	140.8	140.1	100.0	187.6	381.3	100.0	165.3	365.1	100.0	164.2	234.8	100.0	153.1	231.5
북구	100.0	159.9	158.8	100.0	140.8	220.9	100.0	121.3	186.4	100.0	150.3	202.8	100.0	140.6	185.2
광산구	100.0	153.6	152.7	100.0	175.0	332.9	100.0	147.2	291.7	100.0	164.3	232.6	100.0	150.4	217.0
계	100.0	156.4	155.4	100.0	160.4	283.8	100.0	135.5	244.3	100.0	158.4	219.6	100.0	146.0	202.7
<b>광주</b>															
동구	100.0	152.0	144.0	100.0	167.3	312.7	100.0	137.0	275.6	100.0	159.6	215.8	100.0	144.5	199.1
중구	100.0	163.6	153.7	100.0	145.1	235.8	100.0	119.7	193.5	100.0	154.3	200.6	100.0	141.7	177.3
서구	100.0	149.2	141.6	100.0	147.0	231.3	100.0	115.9	175.3	100.0	148.1	186.5	100.0	132.5	160.9
유성구	100.0	174.2	162.7	100.0	155.5	263.9	100.0	122.4	206.4	100.0	164.9	219.3	100.0	148.3	189.2
대덕구	100.0	176.6	164.8	100.0	173.1	327.3	100.0	136.8	274.6	100.0	174.9	242.2	100.0	156.7	215.5
계	100.0	162.4	152.7	100.0	155.5	267.0	100.0	124.8	217.7	100.0	159.0	209.9	100.0	143.6	185.2

경 기	정세지주의			배분공식						절충안					
				재정력환산지수			여재정력배분지수			정세지 + 재정력환산지수			정세지 + 여재정력배분지수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수 원	153.3	122.8	114.3	106.2	104.4	102.0	101.1	100.9	100.5	129.7	113.6	107.1	127.2	111.9	105.2
성 남	133.1	114.2	108.9	106.4	104.6	102.1	101.0	100.8	100.5	119.8	109.4	104.9	117.1	107.5	103.4
의정부	127.6	111.8	107.4	121.8	115.4	107.1	105.5	104.5	102.5	124.7	113.6	107.6	116.6	108.1	105.2
안 양	139.4	116.9	110.5	109.5	106.7	103.0	101.5	101.2	100.7	124.4	111.8	106.3	120.4	109.0	104.2
부 천	134.9	115.0	109.4	107.7	105.4	102.5	101.5	101.2	100.7	121.3	110.2	105.4	118.2	108.1	103.8
광 명	131.6	113.5	108.5	121.6	115.2	107.0	106.0	104.8	102.7	126.6	114.4	108.0	118.8	109.2	105.7
동두천	124.6	110.5	106.6	181.7	157.5	126.9	144.9	136.3	120.5	153.1	134.0	120.2	134.7	123.4	124.7
안 산	142.5	118.2	111.4	109.0	106.3	102.9	101.4	101.2	100.7	125.7	112.3	106.5	122.0	109.7	104.4
고 양	129.5	112.6	107.9	109.6	106.8	103.1	101.2	101.0	100.6	119.6	109.7	105.2	115.4	106.8	103.2
과 천	164.0	127.4	117.1	152.1	137.1	116.1	104.0	103.2	101.8	158.0	132.3	117.5	134.0	115.3	107.6
구 리	132.9	114.1	108.8	140.4	128.5	113.2	110.6	108.6	104.8	136.7	121.3	112.2	121.8	111.3	108.2
평 택	141.8	117.9	111.2	114.9	110.5	104.9	104.6	103.7	102.1	128.3	114.2	107.7	123.2	110.8	105.9
남양주	125.5	110.9	106.8	123.9	116.9	107.8	108.4	106.8	103.8	124.7	113.9	107.9	117.0	108.9	106.4
오 산	139.1	116.8	110.5	161.2	143.1	120.0	121.3	117.2	109.7	150.1	129.9	117.3	130.2	117.0	114.1
시 흥	136.7	115.7	109.8	128.0	119.7	109.1	108.4	106.8	103.8	132.3	117.7	109.9	122.6	111.3	107.4
군 포	136.6	115.7	109.8	124.2	117.1	107.8	105.0	104.1	102.3	130.4	116.4	109.1	120.8	109.9	105.7
의 왕	146.9	120.1	112.6	148.8	134.3	115.9	115.1	112.2	106.9	147.8	127.2	115.5	131.0	116.1	111.6
하 남	127.4	111.8	107.4	150.4	135.5	116.5	117.9	114.4	108.1	138.9	123.6	113.7	122.7	113.1	111.3
양 주	131.1	113.3	108.3	148.1	133.9	115.7	116.8	113.6	107.7	139.6	123.6	113.6	124.0	113.5	111.1
여 주	129.9	112.8	108.0	148.2	133.9	115.8	118.4	114.9	108.4	139.0	123.4	113.5	124.2	113.9	111.8
화 성	138.8	116.6	110.4	121.9	115.4	107.1	105.9	104.8	102.7	130.3	116.0	108.9	122.3	110.7	106.3
파 주	132.7	114.0	108.8	133.9	123.9	111.1	112.4	110.1	105.7	133.3	118.9	110.8	122.6	112.0	109.1
광 주	128.0	112.0	107.5	135.3	124.9	111.5	109.5	107.7	104.4	131.6	118.4	110.5	118.8	109.8	107.2
연 천	121.4	109.2	105.7	221.5	185.4	140.1	210.2	189.1	150.3	171.4	147.3	128.5	165.8	149.1	157.2
포 천	122.2	109.5	106.0	136.6	125.7	112.0	114.1	111.4	106.4	129.4	117.6	110.2	118.1	110.4	109.0
가 평	119.8	108.5	105.3	185.6	160.2	128.2	168.9	155.7	131.4	152.7	134.3	120.6	144.3	132.1	136.3
양 평	130.9	113.2	108.3	179.3	155.7	126.2	166.7	153.9	130.4	155.1	134.5	120.4	148.8	133.6	136.2
이 천	174.6	131.9	120.0	121.5	115.2	107.0	106.2	105.0	102.8	148.1	123.6	112.7	140.4	118.5	109.6
용 인	158.1	124.9	115.6	110.6	107.5	103.4	101.6	101.3	100.7	134.4	116.2	108.5	129.9	113.1	105.8
안 성	131.7	113.6	108.5	146.4	132.6	115.2	122.7	118.4	110.4	139.0	123.1	113.4	127.2	116.0	114.1
김 포	132.0	113.7	108.6	140.9	128.8	113.4	113.5	110.9	106.2	136.4	121.2	112.2	122.8	112.3	109.5
계	139.2	116.8	110.5	120.1	114.1	106.5	106.8	105.5	103.1	129.6	115.5	108.5	123.0	111.1	106.8

강원	정세지주의			배분공식						절충안					
				재정력환산지수			역재정력배분지수			정세지 + 재정력환산지수			정세지 + 역재정력배분지수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춘천	142.3	118.1	112.9	123.9	116.8	114.1	111.8	109.5	111.0	133.1	117.5	121.7	127.0	113.8	129.6
원주	137.3	116.0	111.3	124.1	117.0	114.1	111.0	108.9	110.3	130.7	116.5	119.7	124.2	112.4	126.3
강릉	134.1	114.6	110.3	128.0	119.7	116.5	114.3	111.6	113.4	131.0	117.1	119.1	124.2	113.1	125.1
동해	135.0	115.0	110.6	161.6	143.3	137.0	137.4	130.3	134.9	148.3	129.1	125.7	136.2	122.6	131.8
태백	133.2	114.2	110.1	232.2	192.8	182.8	267.7	235.6	256.5	182.7	153.5	139.0	200.4	174.9	165.3
속초	130.5	113.1	109.3	155.7	139.2	132.5	125.5	120.7	123.8	143.1	126.1	122.5	128.0	116.9	125.9
삼척	136.8	115.7	111.2	186.8	161.0	153.9	191.0	173.6	184.9	161.8	138.4	131.6	163.9	144.7	147.2
홍천	125.4	110.9	107.7	200.8	170.8	162.9	217.7	195.1	209.8	163.1	140.8	129.7	171.5	153.0	147.2
횡성	130.4	113.0	109.2	245.6	202.3	191.3	288.9	252.8	276.3	188.0	157.6	140.5	209.6	162.9	169.2
영월	146.5	119.9	114.1	249.3	204.9	193.3	281.5	246.8	269.4	197.9	162.4	147.7	214.0	183.4	177.3
평창	126.8	111.5	108.1	210.8	177.8	169.0	224.3	200.5	216.0	168.8	144.6	132.2	175.5	156.0	149.8
정선	128.1	112.1	108.6	280.8	226.9	214.2	400.9	343.4	380.8	204.5	169.5	146.6	264.5	227.7	197.5
철원	121.1	109.0	106.4	230.9	192.0	181.1	231.5	206.3	222.7	176.0	150.5	133.6	176.3	157.7	148.1
화천	140.3	117.3	112.2	332.3	263.2	245.5	395.6	339.0	375.8	236.3	190.2	161.2	267.9	228.1	203.7
양구	123.7	110.2	107.2	426.0	328.9	306.7	710.7	593.9	669.8	274.9	219.5	173.1	417.2	352.0	277.0
인제	125.5	110.9	107.8	306.3	244.9	230.2	428.1	365.3	406.1	215.9	177.9	150.4	276.8	238.1	203.1
고성	125.8	111.0	107.8	273.3	221.7	207.7	283.9	248.7	271.6	199.5	166.4	143.6	204.8	179.9	165.0
양양	125.7	111.0	107.8	329.5	261.2	244.1	414.6	354.4	393.6	227.6	186.1	154.8	270.2	232.7	199.6
계	134.5	114.8	110.5	175.0	152.7	146.2	181.3	165.7	175.8	154.7	133.7	128.3	157.9	140.2	143.1
총복															
청주	158.2	124.9	114.6	109.6	106.8	107.8	102.2	101.8	103.2	133.9	115.8	120.7	130.2	113.4	123.6
충주	131.3	113.4	107.9	129.8	120.9	129.1	116.3	113.2	123.0	130.6	117.2	118.9	123.8	113.3	119.0
제천	129.5	112.6	107.4	153.0	137.3	153.5	139.6	132.0	155.9	141.3	124.9	126.0	134.6	122.3	128.1
청원	137.8	116.2	109.5	157.7	140.6	157.6	138.7	131.3	154.7	147.8	128.4	129.9	138.3	123.8	131.0
보은	129.4	112.6	107.4	314.5	250.6	326.6	464.4	394.7	614.5	222.0	181.6	180.0	296.9	253.7	264.8
옥천	146.7	120.0	111.7	210.7	177.8	214.2	213.1	191.5	259.7	178.7	148.9	150.3	179.9	155.7	165.8
영동	130.5	113.1	107.6	259.4	212.0	267.5	332.8	288.2	428.6	195.0	162.5	161.9	231.6	200.7	209.8
진천	148.1	120.6	112.0	187.6	161.6	186.6	153.3	143.1	175.2	167.8	141.1	142.1	150.7	131.8	141.1
괴산	129.4	112.6	107.4	196.0	167.4	200.9	244.5	216.8	304.0	162.7	140.0	140.8	186.9	164.7	172.2
음성	145.8	119.6	111.5	163.1	144.3	161.8	135.4	128.6	150.0	154.4	132.0	133.7	140.6	124.1	132.7
단양	151.5	122.0	112.9	259.8	212.2	265.0	266.0	234.2	334.3	205.6	167.1	167.7	208.7	178.1	189.9
계	146.1	119.7	111.5	146.4	132.6	146.4	142.7	134.5	160.2	146.3	126.2	129.0	144.4	127.1	135.9

충남	정세지주의			배분공식						절충안					
				재정력환산지수			역재정력배분지수			정세지 + 재정력환산지수			정세지 + 역재정력배분지수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천안	137.4	116.0	110.9	115.3	110.8	110.4	105.5	104.4	106.4	126.3	113.4	116.4	121.4	110.2	122.1
공주	128.9	112.4	108.4	161.0	142.8	145.4	157.8	146.8	167.6	145.0	127.6	124.5	143.4	129.6	139.0
보령	140.4	117.3	111.8	166.3	146.6	149.2	158.4	147.2	168.2	153.4	132.0	129.7	149.4	132.3	145.3
아산	150.8	121.7	114.8	129.4	120.7	121.0	115.7	112.7	118.3	140.1	121.2	124.5	133.2	117.2	133.4
서산	129.6	112.7	108.6	140.2	128.3	129.3	126.5	121.5	131.0	134.9	120.5	119.6	128.1	117.1	126.6
금산	131.0	113.3	109.0	246.4	202.9	210.5	283.9	248.7	314.9	188.7	158.1	145.7	207.4	181.0	191.7
연기	138.4	116.5	111.2	176.0	153.4	155.1	147.4	138.4	155.4	157.2	135.0	130.9	142.9	127.4	139.8
논산	131.0	113.3	109.0	148.8	134.3	135.5	131.4	125.4	136.7	139.9	123.8	122.1	131.2	119.3	129.3
부여	140.2	117.2	111.7	195.0	166.8	171.0	195.0	176.9	211.0	167.6	142.0	136.5	167.6	147.0	160.2
서천	144.1	118.9	112.8	207.3	175.4	180.3	213.0	191.4	232.0	175.7	147.1	140.8	178.5	155.1	169.6
청양	124.9	110.7	107.2	353.0	277.7	293.1	554.6	467.7	631.1	238.9	194.2	169.6	339.7	289.1	299.2
홍성	125.4	110.9	107.4	186.3	160.6	163.8	170.9	157.4	182.9	155.8	135.8	129.0	148.1	134.1	142.5
예산	123.9	110.2	106.9	181.5	157.3	160.2	167.2	154.3	178.5	152.7	133.7	127.4	145.5	132.3	140.2
태안	138.8	116.6	111.3	202.4	172.0	176.1	191.8	174.3	207.3	170.6	144.3	137.6	165.3	145.4	158.2
당진	130.5	113.1	108.9	145.0	131.6	132.2	124.1	119.5	128.2	137.7	122.4	120.9	127.3	116.3	126.1
계	135.9	115.4	110.5	154.5	138.3	140.0	146.6	137.7	154.5	145.2	126.8	125.2	141.3	126.5	138.2
전북															
전주	142.9	118.4	114.9	111.3	108.0	107.0	102.7	102.2	101.7	127.1	113.2	118.8	122.8	110.3	119.9
군산	137.0	115.8	112.8	123.6	116.6	117.2	111.5	109.3	107.3	130.3	116.2	119.8	124.3	112.6	118.9
익산	134.9	115.0	112.1	122.9	116.1	116.8	111.6	109.4	107.4	128.9	115.5	118.9	123.3	112.2	118.0
정읍	129.5	112.6	110.2	170.2	149.3	155.6	180.3	164.9	151.0	149.9	131.0	129.3	154.9	138.8	129.1
남원	134.5	114.8	111.9	187.3	161.3	169.4	205.9	185.6	167.3	160.9	138.0	135.7	170.2	150.2	136.4
김제	123.5	110.1	108.1	181.7	157.4	165.1	204.9	184.8	166.6	152.6	133.7	130.1	164.2	147.5	131.2
완주	145.1	119.3	115.6	193.8	165.9	174.3	207.5	187.0	168.3	169.4	142.6	141.4	176.3	153.1	141.5
진안	129.2	112.5	110.1	429.6	331.4	369.7	941.7	780.7	634.8	279.4	222.0	198.2	535.5	446.6	278.6
무주	127.6	111.8	109.5	369.4	289.2	316.2	494.2	418.8	350.5	248.5	200.5	180.3	310.9	265.3	189.9
장수	116.7	107.2	105.8	424.4	327.7	365.3	918.8	762.2	620.2	270.5	217.5	191.9	517.8	434.7	268.5
임실	125.2	110.8	108.7	387.8	302.1	335.3	817.9	680.6	556.1	256.5	206.4	185.5	471.5	395.7	252.4
순창	121.5	109.2	107.4	445.3	342.4	382.7	1,013.1	838.4	680.1	283.4	225.8	199.3	567.3	473.8	289.2
고창	122.4	109.6	107.8	261.7	213.6	230.4	364.0	313.5	267.7	192.1	161.6	150.7	243.2	211.5	162.0
부안	123.1	109.9	108.0	245.9	202.5	217.4	323.5	280.7	242.0	184.5	156.2	146.7	223.3	195.3	154.4
계	136.3	115.5	112.6	155.7	139.2	143.6	183.2	167.3	152.9	146.0	127.4	128.1	159.7	141.4	132.7

전남	징세지주의			배분공식						절충안					
				재정력환산지수			역재정력배분지수			징세지 + 재정력환산지수			징세지 + 역재정력배분지수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목포	133.1	114.2	108.8	131.6	122.2	113.9	115.0	112.2	107.2	132.4	118.2	115.2	124.1	113.2	117.3
여수	133.3	114.3	108.8	145.8	132.2	120.2	122.7	118.3	110.9	139.5	123.2	117.2	128.0	116.3	118.5
순천	137.6	116.1	110.0	130.5	121.4	113.7	119.2	115.5	109.2	134.1	118.8	116.6	128.4	115.8	120.0
나주	131.5	113.5	108.3	177.6	154.5	135.9	192.0	174.4	144.2	154.5	134.0	121.6	161.7	143.9	127.4
여천	170.6	130.3	118.7	138.6	127.2	115.6	109.9	108.0	104.7	154.6	128.7	128.1	140.3	119.1	133.9
광양	162.0	126.5	116.4	130.7	121.6	113.4	113.8	111.2	106.6	146.4	124.1	124.5	137.9	118.9	130.5
담양	130.6	113.1	108.1	272.0	220.8	179.9	319.9	277.9	205.6	201.3	167.0	135.0	225.3	195.5	144.9
곡성	131.9	113.7	108.4	346.6	273.2	215.5	534.4	451.3	308.6	239.3	193.4	146.6	333.2	282.5	175.6
구례	127.5	111.8	107.3	381.9	297.9	232.2	631.8	530.0	355.3	254.7	204.8	150.4	379.6	320.9	187.2
여천	121.2	109.1	105.6	335.1	265.1	210.2	533.0	450.2	307.9	228.1	187.1	141.4	327.1	279.6	170.4
고흥	120.9	109.0	105.5	241.9	199.7	166.4	334.9	289.9	212.8	181.4	154.3	127.6	227.9	199.4	142.5
보성	124.9	110.7	106.6	290.8	234.0	189.4	452.8	385.3	269.4	207.9	172.3	136.2	288.8	248.0	160.9
화순	126.6	111.4	107.0	213.3	179.6	152.7	258.2	228.0	176.0	170.0	145.5	125.3	192.4	169.7	134.4
장흥	122.2	109.5	105.9	331.1	262.3	208.4	541.4	457.0	312.0	226.7	185.9	141.2	331.8	283.2	172.1
강진	130.5	113.1	108.1	312.0	248.8	199.2	463.7	394.1	274.6	221.2	180.9	141.1	297.1	253.6	165.0
해남	122.6	109.7	106.0	206.9	175.1	149.9	261.6	230.7	177.6	164.7	142.4	123.0	192.1	170.2	133.0
영암	153.5	122.9	114.2	215.5	181.1	153.5	240.2	213.4	167.3	184.5	152.0	134.3	196.9	168.1	144.3
무안	125.9	111.1	106.8	263.0	214.5	175.9	331.3	287.0	211.0	194.5	162.8	132.3	228.6	199.0	144.3
함평	118.3	107.8	104.8	292.1	234.9	190.0	449.8	382.9	268.0	205.2	171.4	134.2	284.0	245.4	157.5
영광	166.8	128.6	117.7	209.7	177.1	150.3	200.2	181.1	148.1	188.2	152.8	137.6	183.5	154.8	144.8
장성	139.2	116.8	110.4	257.2	210.4	173.3	332.7	288.2	211.8	198.2	163.6	135.8	236.0	202.5	150.6
완도	123.3	110.0	106.2	293.5	235.9	190.5	429.4	366.4	258.2	208.4	172.9	136.0	276.3	238.2	156.9
진도	122.8	109.8	106.0	375.5	293.4	229.4	672.5	563.0	374.9	249.2	201.6	148.0	397.7	336.4	190.8
신안	125.0	110.7	106.6	406.2	315.0	245.0	1,220.3	1,005.8	637.8	265.6	212.8	153.6	672.5	558.2	268.5
계	140.3	117.3	110.7	191.7	164.4	142.2	232.2	206.9	163.5	166.0	140.8	126.4	186.3	162.1	137.1

경북	장세지주의			배분공식						절충안					
				재정력환산지수			역재정력배분지수			장세지 + 재정력환산지수			장세지 + 역재정력배분지수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포항	153.4	122.9	116.4	108.9	106.3	103.9	102.4	102.0	101.0	131.1	114.6	113.3	127.9	112.4	113.5
경주	132.5	113.9	110.0	118.7	113.2	108.6	109.0	107.3	103.9	125.6	113.5	110.5	120.7	110.6	109.4
김천	133.1	114.2	110.2	153.2	137.4	125.3	144.2	135.7	119.1	143.2	125.8	117.0	138.7	125.0	115.1
안동	136.0	115.4	111.1	141.9	129.4	119.8	132.1	125.9	113.9	139.0	122.4	115.6	134.1	120.7	113.9
구미	163.1	127.0	119.4	113.0	109.1	105.7	104.2	103.4	101.8	138.0	118.1	116.2	133.6	115.2	116.2
영주	132.6	114.0	110.0	163.0	144.2	130.0	157.4	146.4	124.8	147.8	129.1	118.7	145.0	130.2	117.0
영천	133.3	114.3	110.2	161.3	143.1	129.2	152.4	142.4	122.6	147.3	128.7	118.5	142.9	128.3	116.4
상주	125.1	110.7	107.7	179.2	155.6	138.3	212.5	191.0	148.6	152.1	133.2	120.2	168.8	150.8	123.8
문경	124.7	110.6	107.6	199.8	170.1	148.2	234.1	208.4	158.0	162.3	140.4	123.9	179.4	159.5	127.2
경산	133.2	114.2	110.2	128.9	120.4	113.1	111.1	109.0	104.8	131.1	117.3	112.3	122.1	111.6	109.9
군위	124.3	110.4	107.5	410.2	317.8	250.8	701.1	586.1	359.9	267.2	214.1	163.1	412.7	348.2	200.4
의성	120.2	108.6	106.2	218.0	182.9	157.1	273.1	240.0	174.8	169.1	145.8	126.3	196.6	174.3	132.2
청송	121.5	109.2	106.6	386.9	301.4	239.7	705.6	589.7	361.9	254.2	205.3	158.3	413.6	349.5	200.4
영양	121.1	109.1	106.5	611.8	459.3	350.7	1,814.7	1,486.7	841.5	366.4	284.1	200.7	967.9	797.9	374.6
영덕	119.7	108.5	106.1	292.4	235.1	193.2	402.3	344.5	230.7	206.1	171.8	140.1	261.0	226.5	152.4
청도	145.2	119.4	113.9	273.5	221.8	183.9	359.8	310.1	212.3	209.3	170.6	142.1	252.5	214.7	152.0
고령	123.9	110.2	107.3	262.9	214.5	177.6	245.6	217.8	163.0	193.4	162.3	135.0	184.8	164.0	128.8
성주	123.8	110.2	107.3	259.0	211.7	176.2	264.7	233.2	171.2	191.4	160.9	134.4	194.2	171.7	131.7
칠곡	123.9	110.2	107.3	175.5	153.1	134.9	138.6	131.2	116.7	149.7	131.7	118.7	131.2	120.7	111.9
예천	123.8	110.2	107.3	285.5	230.3	189.9	395.1	338.6	227.6	204.6	170.2	139.7	259.4	224.4	152.2
봉화	138.8	116.6	111.9	349.5	275.2	221.7	690.4	577.4	355.3	244.2	195.9	155.2	414.6	347.0	202.3
울진	146.5	119.9	114.3	200.7	170.8	148.1	199.4	180.4	143.0	173.6	145.3	128.7	173.0	150.1	127.1
울릉	134.2	114.7	110.5	896.3	659.0	489.1	2,247.1	1,836.4	1,028.4	515.3	386.9	256.6	1,190.7	975.5	445.7
계	142.2	118.1	113.0	151.4	136.1	124.4	166.2	153.5	128.6	146.8	127.1	118.7	154.2	135.8	120.8

경 남	정세지주의			배분공식						결총안					
				재정력환산지수			역재정력배분지수			정세지 + 재정력환산지수			정세지 + 역재정력배분지수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창 원	149.7	121.3	115.9	109.4	106.6	104.4	101.8	101.5	100.8	129.5	114.0	110.5	125.8	111.4	108.0
울 산	149.5	121.2	115.8	104.1	102.9	101.9	100.7	100.6	100.3	126.8	112.0	109.3	125.1	110.9	107.7
마 산	140.4	117.3	112.9	113.0	109.2	106.3	103.4	102.8	101.5	126.7	113.2	109.8	121.9	110.0	106.9
진 주	132.6	113.9	110.4	120.4	114.4	110.3	109.3	107.5	104.0	126.5	114.2	110.4	120.9	110.7	107.0
진 해	128.4	112.2	109.1	144.1	131.1	122.2	119.3	115.6	108.2	136.3	121.6	115.4	123.8	113.9	108.6
통 영	134.2	114.7	111.0	156.8	139.9	129.2	141.8	133.8	117.7	145.5	127.3	119.7	138.0	124.2	114.6
사 천	126.7	111.4	108.5	166.0	146.4	134.2	162.8	150.8	126.7	146.4	128.9	120.8	144.8	131.1	118.1
김 해	125.0	110.7	108.0	119.8	114.0	109.9	107.3	105.9	103.1	122.4	112.3	108.9	116.2	108.3	105.4
밀 양	129.5	112.6	109.5	167.9	147.7	135.2	163.8	151.6	127.0	148.7	130.2	121.7	146.6	132.1	118.7
거 제	145.3	119.4	114.5	135.6	125.1	118.1	118.3	114.8	107.7	140.5	122.2	116.3	131.8	117.1	111.0
의 령	122.9	109.8	107.3	408.2	316.4	262.2	842.9	700.7	415.2	265.5	213.1	180.8	482.9	405.3	269.4
함 안	132.1	113.7	110.3	198.4	169.2	150.7	173.6	159.5	131.2	165.3	141.5	129.5	152.8	136.6	121.3
창 넝	118.3	107.8	105.9	196.6	167.9	150.0	186.8	170.2	136.8	157.5	137.9	126.8	152.6	139.0	122.2
양 산	143.4	118.6	113.9	125.5	118.0	112.3	106.2	105.0	102.6	134.5	118.3	113.2	124.8	111.8	108.0
고 성	146.1	119.8	114.8	225.5	188.2	165.1	223.1	199.5	152.2	185.8	154.0	138.7	184.6	159.6	134.5
남 해	122.2	109.5	107.1	276.9	224.2	192.4	334.3	289.4	199.4	199.6	166.9	147.6	228.3	199.5	155.7
하 동	127.5	111.8	108.8	262.5	214.1	185.1	353.7	305.2	207.6	195.0	163.0	145.0	240.6	208.5	160.9
산 청	130.6	113.1	109.8	337.5	266.7	224.9	632.5	530.6	325.9	234.0	189.9	164.4	381.5	321.8	223.6
함 양	121.0	109.0	106.7	334.5	264.7	223.2	576.3	485.2	302.1	227.7	186.8	162.0	348.6	297.1	209.6
거 창	125.2	110.8	108.0	236.3	195.7	171.1	274.3	241.0	174.0	180.7	153.3	138.0	199.7	175.9	142.8
합 천	122.3	109.5	107.1	260.9	213.0	184.3	360.1	310.3	210.3	191.6	161.3	143.8	241.2	209.9	161.5
계	141.3	117.7	113.2	129.0	120.4	114.7	128.2	122.8	112.0	135.1	119.0	114.0	134.7	120.2	112.6
제주															
제주	137.6	116.1	114.0	117.8	112.6	140.0	105.8	104.7	133.8	127.7	114.3	147.4	121.7	110.4	152.6
서귀포	125.8	111.1	109.6	151.7	136.3	236.9	123.8	119.3	237.6	138.8	123.7	162.8	124.8	115.2	167.3
북제주	125.5	110.9	109.5	191.3	164.2	375.4	166.6	153.9	484.8	158.4	137.6	200.8	146.1	132.4	234.1
남제주	125.0	110.7	109.3	194.8	166.6	390.7	175.1	160.7	533.8	159.9	138.7	204.5	150.0	135.7	246.8
계	132.5	113.9	112.1	141.4	129.1	213.5	123.9	119.3	238.1	136.9	121.5	162.8	128.2	116.6	175.1

## <부록 5> 각 대안별 소득과세 강화 효과(기초자치단체)

서 울	현재	정세지주의			배분공식						절충안					
					재정력환산지수			역재정력배분지수			정세지 + 재정력환산지수			정세지 + 역재정력배분지수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종로구	18.6	18.6	124.5	161.6	18.6	35.2	28.3	18.6	23.1	22.3	18.6	79.9	80.2	18.6	73.8	69.6
중 구	23.3	23.3	155.8	202.1	23.3	33.1	28.9	23.3	25.0	24.7	23.3	94.4	86.0	23.3	90.4	76.2
용산구	10.1	10.1	90.3	118.3	10.1	37.4	26.3	10.1	21.2	19.1	10.1	63.8	76.0	10.1	55.7	69.6
성동구	9.7	9.7	72.1	94.0	9.7	48.8	33.2	9.7	30.8	26.7	9.7	60.5	84.6	9.7	51.5	90.2
광진구	8.4	8.4	71.4	93.5	8.4	42.0	28.5	8.4	24.2	21.1	8.4	56.7	76.2	8.4	47.8	74.7
동대문	7.9	7.9	63.4	82.8	7.9	39.6	26.9	7.9	23.2	20.3	7.9	51.5	70.4	7.9	43.3	70.2
중랑구	5.7	5.7	44.5	58.1	5.7	51.7	33.3	5.7	31.2	26.3	5.7	48.1	80.7	5.7	37.8	89.7
성북구	4.2	4.2	57.3	75.9	4.2	38.1	24.5	4.2	21.0	17.8	4.2	47.7	68.7	4.2	39.2	69.7
강북구	0.0	-	44.9	60.6	-	52.0	31.4	-	37.1	30.0	-	48.4	85.5	-	41.0	118.1
도봉구	6.8	6.8	49.2	64.0	6.8	62.0	40.0	6.8	41.5	34.8	6.8	55.6	95.3	6.8	45.3	117.2
노원구	4.9	4.9	52.1	68.6	4.9	44.2	28.5	4.9	27.4	23.1	4.9	48.1	74.4	4.9	39.7	83.9
은평구	5.0	5.0	48.0	63.1	5.0	45.7	29.4	5.0	28.4	23.9	5.0	46.9	74.6	5.0	38.2	84.8
서대문	4.9	4.9	71.0	94.1	4.9	44.7	28.8	4.9	26.8	22.6	4.9	57.8	82.1	4.9	48.9	89.0
마포구	14.2	14.2	94.9	123.1	14.2	42.8	31.3	14.2	27.4	24.9	14.2	68.8	82.2	14.2	61.2	79.9
양천구	4.6	4.6	59.6	78.9	4.6	41.7	26.8	4.6	23.6	20.0	4.6	50.7	74.1	4.6	41.6	76.7
강서구	12.2	12.2	59.5	76.1	12.2	36.6	26.7	12.2	21.7	19.9	12.2	48.1	61.9	12.2	40.6	55.6
구로구	8.2	8.2	53.8	69.7	8.2	41.5	28.1	8.2	24.9	21.7	8.2	47.6	68.9	8.2	39.3	70.4
금천구	22.1	22.1	81.1	101.7	22.1	66.5	48.8	22.1	48.7	43.6	22.1	73.8	102.8	22.1	64.9	116.6
영등포	23.3	23.3	137.9	177.9	23.3	36.7	31.1	23.3	26.6	26.0	23.3	87.3	83.9	23.3	82.2	74.1
동작구	4.2	4.2	51.4	67.9	4.2	38.1	24.5	4.2	22.7	19.1	4.2	44.7	66.5	4.2	37.0	72.1
관악구	4.9	4.9	56.4	74.5	4.9	44.1	28.4	4.9	27.3	23.0	4.9	50.3	75.9	4.9	41.9	85.2
서초구	8.3	8.3	79.9	105.0	8.3	17.8	13.7	8.3	10.1	9.7	8.3	48.9	47.4	8.3	45.0	39.2
강남구	11.3	11.3	100.9	132.2	11.3	17.0	14.4	11.3	12.0	11.9	11.3	58.9	52.1	11.3	56.4	45.7
송파구	8.0	8.0	61.4	80.0	8.0	20.8	15.5	8.0	11.4	10.7	8.0	41.1	44.7	8.0	36.4	36.7
강동구	3.5	3.5	39.2	51.7	3.5	31.6	20.3	3.5	15.5	13.2	3.5	35.4	53.6	3.5	27.3	49.4

부 산	현재	정세지주의			배분공식						결충안					
					재정력환산지수			역재정력배분지수			정세지 + 재정력환산지수			정세지 + 역재정력배분지수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중 구	8.6	8.6	132.9	142.3	8.6	77.5	76.1	8.6	46.8	42.8	8.6	105.2	106.8	8.6	89.9	84.3
서 구	0.0	-	80.2	86.2	-	109.3	111.1	-	109.1	97.7	-	94.7	100.9	-	94.6	101.8
동 구	17.0	17.0	115.7	123.1	17.0	85.8	85.9	17.0	69.8	64.3	17.0	100.7	103.5	17.0	92.7	91.2
영동구	14.1	14.1	76.7	81.4	14.1	127.5	129.4	14.1	126.9	115.2	14.1	102.1	108.8	14.1	101.8	110.9
부산진	6.5	6.5	68.8	73.5	6.5	32.5	32.1	6.5	21.7	20.1	6.5	50.6	51.1	6.5	45.3	42.0
동래구	5.6	5.6	77.0	82.4	5.6	51.2	50.6	5.6	33.3	30.4	5.6	64.1	65.4	5.6	55.1	52.7
남 구	7.5	7.5	72.0	76.8	7.5	67.9	67.6	7.5	48.7	44.4	7.5	69.9	72.4	7.5	60.3	60.2
북 구	0.0	-	46.4	49.9	-	92.2	93.1	-	80.2	71.8	-	69.3	74.4	-	63.3	69.6
해운대	9.1	9.1	41.0	43.4	9.1	45.6	44.4	9.1	26.9	25.1	9.1	43.3	44.3	9.1	34.0	33.6
사하구	13.4	13.4	65.6	69.5	13.4	49.2	48.6	13.4	34.0	31.9	13.4	57.4	58.4	13.4	49.8	48.0
금정구	6.3	6.3	57.0	60.8	6.3	57.4	57.2	6.3	41.6	37.9	6.3	57.2	59.4	6.3	49.3	49.5
강서구	13.8	13.8	71.1	75.4	13.8	125.2	128.6	13.8	173.2	156.6	13.8	98.1	105.6	13.8	122.1	137.7
연제구	8.1	8.1	59.6	63.5	8.1	73.5	73.7	8.1	58.5	53.2	8.1	66.6	69.7	8.1	59.1	61.2
수영구	0.0	-	63.2	68.0	-	65.7	65.8	-	49.5	44.4	-	64.4	67.4	-	56.4	57.4
사상구	11.5	11.5	59.0	62.5	11.5	11.5	11.5	11.5	11.5	11.5	11.5	35.2	34.6	11.5	35.2	31.2
기장군	6.2	6.2	24.7	26.0	6.2	56.1	53.8	6.2	27.2	25.0	6.2	40.4	42.2	6.2	25.9	30.1

### 대구

중 구	5.7	5.7	104.0	107.4	5.7	51.6	88.6	5.7	39.0	46.5	5.7	77.8	102.8	5.7	71.5	88.3
동 구	6.6	6.6	54.9	56.6	6.6	59.9	111.4	6.6	84.1	101.4	6.6	57.4	81.5	6.6	69.5	85.0
서 구	14.2	14.2	73.5	75.5	14.2	71.5	125.7	14.2	87.3	103.6	14.2	72.5	98.8	14.2	80.4	96.8
남 구	0.0	-	67.5	69.9	-	80.1	157.1	-	112.6	137.8	-	73.8	109.2	-	90.0	112.3
북 구	9.7	9.7	52.5	54.0	9.7	48.8	84.3	9.7	51.3	60.6	9.7	50.6	68.3	9.7	51.9	62.4
수성구	4.5	4.5	72.9	75.3	4.5	41.2	73.8	4.5	40.5	48.6	4.5	57.0	77.0	4.5	56.7	69.9
달서구	12.5	12.5	65.7	67.5	12.5	46.1	75.9	12.5	45.1	52.4	12.5	55.9	72.9	12.5	55.4	66.2
달성군	6.9	6.9	23.4	24.0	6.9	34.7	50.6	6.9	18.6	21.2	6.9	29.1	35.8	6.9	21.0	24.6

부 산	현재	정세지주의			배분공식						절충안					
					재정력환산지수			역재정력배분지수			정세지 + 재정력환산지수			정세지 + 역재정력배분지수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중 구	13.2	13.2	66.5	74.0	13.2	66.6	92.2	13.2	43.0	51.2	13.2	66.5	83.9	13.2	54.7	62.7
동 구	33.1	33.1	112.8	124.1	33.1	166.7	240.5	33.1	159.6	194.6	33.1	139.8	176.4	33.1	136.2	160.1
남 구	9.8	9.8	67.6	75.8	9.8	49.4	68.4	9.8	31.9	38.0	9.8	58.5	75.1	9.8	49.8	57.0
연수구	0.0	-	26.2	29.9	-	69.9	104.1	-	41.3	52.8	-	48.0	62.2	-	33.8	41.6
남동구	18.2	18.2	74.9	82.9	18.2	54.8	71.7	18.2	36.6	41.7	18.2	64.9	80.6	18.2	55.7	62.3
부평구	20.1	20.1	81.2	89.8	20.1	52.5	66.9	20.1	35.0	39.2	20.1	66.9	82.7	20.1	58.1	64.5
계양구	10.1	10.1	49.3	54.9	10.1	91.9	133.0	10.1	62.5	77.0	10.1	70.6	89.4	10.1	55.9	66.3
서 구	10.8	10.8	42.2	46.7	10.8	32.5	40.4	10.8	18.2	20.2	10.8	37.4	45.4	10.8	30.2	33.4
강화군	0.0	-	10.0	11.4	-	82.7	129.4	-	89.8	114.6	-	46.3	61.5	-	49.9	63.6
옹진군	0.0	-	16.2	18.5	-	379.1	610.5	-	832.7	1,062.9	-	197.7	268.3	-	424.4	546.5
평주																
동 구	7.0	7.0	82.2	80.9	7.0	63.7	175.9	7.0	37.2	129.5	7.0	72.9	141.6	7.0	59.7	119.0
서 구	15.7	15.7	59.5	58.7	15.7	78.9	201.9	15.7	48.0	146.9	15.7	69.2	122.7	15.7	53.7	102.2
남 구	10.9	10.9	51.7	51.0	10.9	98.4	292.2	10.9	76.2	276.0	10.9	75.1	145.7	10.9	63.9	142.3
북 구	10.1	10.1	70.0	68.9	10.1	50.9	131.0	10.1	31.4	96.5	10.1	60.4	112.9	10.1	50.7	95.4
광산구	18.6	18.6	72.2	71.3	18.6	93.6	251.5	18.6	65.8	210.3	18.6	82.9	151.2	18.6	69.0	135.6
대전																
동 구	8.3	8.3	60.4	52.3	8.3	75.6	221.0	8.3	45.4	183.9	8.3	68.0	124.1	8.3	52.9	107.4
중 구	5.6	5.6	69.2	59.3	5.6	50.7	141.4	5.6	25.3	99.1	5.6	59.9	106.2	5.6	47.3	82.9
서 구	5.8	5.8	55.1	47.4	5.8	52.8	137.2	5.8	21.7	81.1	5.8	53.9	92.4	5.8	38.4	66.7
유성구	20.7	20.7	94.9	83.4	20.7	76.2	184.6	20.7	43.1	127.1	20.7	85.6	140.0	20.7	69.0	109.9
대덕구	27.2	27.2	103.9	92.0	27.2	100.4	254.6	27.2	64.0	201.8	27.2	102.1	169.5	27.2	84.0	142.8

경기	현재	정세지주의			배분공식						절충안					
					재정력환산지수			역재정력배분지수			정세지 + 재정력환산지수			정세지 + 역재정력배분지수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수원	31.5	84.9	54.4	45.8	37.7	35.9	33.5	32.7	32.5	32.1	61.3	45.1	38.6	58.8	43.4	36.7
성남	18.6	51.7	32.8	27.5	25.0	23.2	20.7	19.6	19.4	19.1	38.4	28.0	23.6	35.7	26.1	22.0
의정부	16.0	43.6	27.8	23.4	37.8	31.4	23.1	21.5	20.5	18.5	40.7	29.6	23.6	32.6	24.1	21.2
안양	23.4	62.8	40.3	34.0	32.9	30.1	26.5	24.9	24.6	24.1	47.8	35.2	29.7	43.9	32.5	27.6
부천	20.5	55.5	35.5	29.9	28.3	26.0	23.0	22.0	21.7	21.2	41.9	30.7	26.0	38.8	28.6	24.3
광명	19.9	51.5	33.4	28.3	41.5	35.1	26.9	25.9	24.7	22.6	46.5	34.2	27.9	38.7	29.1	25.6
동두천	12.5	37.1	23.1	19.1	94.2	70.0	39.4	57.4	48.8	33.0	65.7	46.5	32.7	47.3	35.9	37.2
안산	27.2	69.7	45.4	38.6	36.2	33.5	30.1	28.7	28.4	27.9	52.9	39.5	33.7	49.2	36.9	31.6
고양	15.9	45.4	28.5	23.8	25.5	22.7	19.0	17.1	16.9	16.5	35.4	25.6	21.1	31.3	22.7	19.1
과천	37.4	101.4	64.8	54.5	89.4	74.5	53.5	41.4	40.6	39.2	95.4	69.6	54.8	71.4	52.7	44.9
구리	16.8	49.8	30.9	25.6	57.2	45.3	30.0	27.4	25.4	21.6	53.5	38.1	29.0	38.6	28.1	25.0
평택	26.6	68.4	44.5	37.8	41.5	37.1	31.5	31.2	30.3	28.7	55.0	40.8	34.3	49.8	37.4	32.6
남양주	15.1	40.6	26.0	21.9	39.0	32.0	22.9	23.5	21.9	18.9	39.8	29.0	23.0	32.1	24.0	21.5
오산	25.3	64.4	42.1	35.8	86.5	68.4	45.3	46.6	42.5	35.0	75.4	55.2	42.6	55.5	42.3	39.4
시흥	23.6	60.3	39.3	33.4	51.6	43.3	32.7	32.1	30.4	27.5	55.9	41.3	33.6	46.2	34.9	31.0
군포	22.9	59.5	38.6	32.7	47.1	40.0	30.7	27.9	27.0	25.2	53.3	39.3	32.0	43.7	32.8	28.6
의왕	28.2	75.1	48.3	40.7	76.9	62.5	44.1	43.3	40.4	35.1	76.0	55.4	43.7	59.2	44.3	39.8
하남	14.0	41.4	25.7	21.3	64.4	49.5	30.5	31.9	28.4	22.1	52.9	37.6	27.7	36.6	27.1	25.3
양주	20.1	51.1	33.4	28.4	68.2	53.9	35.8	36.9	33.7	27.7	59.7	43.7	33.7	44.0	33.5	31.2
여주	19.6	49.5	32.4	27.6	67.8	53.5	35.4	38.0	34.5	28.0	58.7	43.0	33.1	43.8	33.5	31.5
화성	27.6	66.4	44.2	38.0	49.4	43.0	34.7	33.4	32.3	30.2	57.9	43.6	36.4	49.9	38.2	33.9
파주	19.7	52.4	33.7	28.5	53.6	43.6	30.8	32.1	29.8	25.4	53.0	38.6	30.5	42.3	31.7	28.8
광주	17.4	45.3	29.3	24.9	52.7	42.2	28.9	26.9	25.1	21.7	49.0	35.8	27.9	36.1	27.2	24.6
연천	10.9	32.3	20.1	16.6	132.4	96.3	51.0	121.1	100.0	61.2	82.4	58.2	39.4	76.7	60.1	68.1
포천	14.5	36.8	24.1	20.5	51.1	40.3	26.5	28.6	25.9	21.0	43.9	32.2	24.8	32.7	25.0	23.5
가평	10.1	29.8	18.5	15.4	95.7	70.3	38.3	78.9	65.8	41.5	62.8	44.4	30.6	54.4	42.2	46.4
양평	15.8	46.7	29.0	24.0	95.1	71.5	41.9	82.5	69.7	46.2	70.9	50.3	36.2	64.6	49.4	51.9
이천	43.7	118.3	75.6	63.7	65.2	58.9	50.7	49.9	48.7	46.5	91.8	67.3	56.4	84.1	62.2	53.3
용인	35.3	93.5	60.2	50.9	46.0	42.9	38.7	36.9	36.6	36.0	69.7	51.5	43.9	65.2	48.4	41.1
안성	20.2	51.9	33.8	28.7	66.6	52.8	35.4	42.9	38.6	30.6	59.3	43.3	33.6	47.4	36.2	34.4
김포	19.9	51.9	33.6	28.5	60.8	48.7	33.3	33.4	30.8	26.1	56.3	41.1	32.1	42.7	32.2	29.5

강 원	현재	정세지주의			배분공식						절충안					
					재정력환산지수			역재정력배분지수			정세지 + 재정력환산지수			정세지 + 역재정력배분지수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춘천	23.7	66.0	41.8	36.5	47.6	40.5	37.8	35.4	33.2	34.7	56.8	41.2	45.4	50.7	37.5	53.3
원주	21.1	58.5	37.1	32.5	45.2	38.1	35.2	32.2	30.0	31.4	51.9	37.6	40.8	45.3	33.6	47.4
강릉	19.8	53.9	34.4	30.2	47.8	39.5	36.3	34.1	31.4	33.2	50.8	36.9	38.9	44.0	32.9	44.9
동해	23.2	58.2	38.2	33.8	84.8	66.5	60.2	60.6	53.5	58.1	71.5	52.3	48.9	59.4	45.8	55.0
태백	18.2	54.0	33.5	29.1	160.7	118.3	107.4	199.0	164.5	186.9	107.3	75.9	60.3	126.5	99.0	88.6
속초	15.6	46.1	28.6	24.8	71.3	54.8	48.1	41.1	36.2	39.4	58.7	41.7	38.1	43.6	32.4	41.5
삼척	26.3	63.1	42.0	37.5	113.1	87.3	80.2	117.3	99.9	111.2	88.1	64.7	57.9	90.2	71.0	73.5
홍천	14.7	40.2	25.6	22.4	115.5	85.5	77.6	132.4	109.9	124.5	77.8	55.6	44.5	86.3	67.7	61.9
횡성	19.3	49.6	32.3	28.5	164.9	121.6	110.5	208.2	172.1	195.6	107.3	76.9	59.7	128.9	102.2	88.4
영월	27.6	74.1	47.5	41.7	176.9	132.5	120.9	209.1	174.4	197.0	125.5	90.0	75.3	141.6	111.0	104.9
평창	16.6	43.3	28.0	24.7	127.3	94.4	85.6	140.8	117.1	132.5	85.3	61.2	48.7	92.1	72.5	66.3
정선	17.5	45.6	29.6	26.0	198.3	144.4	131.7	318.4	260.8	298.3	122.0	87.0	64.1	182.0	145.2	115.0
철원	12.7	33.8	21.7	19.1	143.6	104.7	93.9	144.2	119.0	135.4	88.7	63.2	46.3	89.0	70.4	60.8
화천	22.2	62.5	39.4	34.4	254.5	185.3	167.7	317.7	261.2	298.0	158.5	112.4	83.3	190.1	150.3	125.9
양구	12.7	36.4	22.8	19.9	338.7	241.6	219.3	623.3	506.5	582.5	187.6	132.2	85.8	329.8	264.6	189.6
인제	13.4	38.9	24.3	21.1	219.7	158.3	143.6	341.4	278.7	319.5	129.3	91.3	63.8	190.2	151.5	116.5
고성	16.2	41.9	27.2	24.0	189.4	137.9	123.9	200.1	164.9	187.8	115.7	82.5	59.8	121.0	96.0	81.1
양양	14.7	40.5	25.8	22.5	244.2	175.9	158.9	329.3	269.2	308.3	142.3	100.8	69.5	184.9	147.4	114.4
총부																
청주	33.1	91.2	58.0	47.6	42.7	39.8	40.9	35.3	34.9	36.2	66.9	48.9	53.8	63.3	46.4	56.6
충주	18.6	50.0	32.0	26.5	48.4	39.5	47.7	34.9	31.8	41.6	49.2	35.8	37.5	42.4	31.9	37.7
제천	16.9	46.4	29.6	24.3	69.9	54.2	70.4	56.5	48.9	72.8	58.2	41.9	42.9	51.5	39.2	45.1
청원	24.3	62.1	40.5	33.8	82.0	64.9	81.9	63.0	55.6	79.0	72.1	52.7	54.2	62.6	48.1	55.3
보은	18.7	48.2	31.3	26.1	233.2	169.3	245.4	383.2	313.4	533.3	140.7	100.3	98.7	215.7	172.4	183.5
옥천	33.4	80.2	53.5	45.1	144.1	111.2	147.6	146.6	124.9	198.2	112.1	82.3	83.8	113.4	89.2	99.2
영동	18.3	48.9	31.4	26.0	177.8	130.3	185.8	251.1	206.6	347.0	113.3	80.9	80.2	150.0	119.0	128.1
진천	32.1	80.2	52.7	44.2	119.7	93.7	118.7	85.4	75.2	107.3	99.9	73.2	74.3	82.8	64.0	73.2
괴산	18.3	47.8	30.9	25.7	114.3	85.7	119.3	162.8	135.2	222.3	81.0	58.3	59.1	105.3	83.0	90.6
음성	28.9	74.7	48.5	40.4	91.9	73.2	90.7	64.3	57.5	78.9	83.3	60.9	62.6	69.5	53.0	61.6
단양	40.1	91.6	62.2	53.0	199.9	152.4	205.1	206.1	174.4	274.5	145.8	107.3	107.8	148.9	118.3	130.0

총 남	현재	정세지주의			배분공식						절충안					
					재정력환산지수			역재정력배분지수			정세지 + 재정력환산지수			정세지 + 역재정력배분지수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천안	24.5	61.8	40.5	35.3	39.8	35.3	34.9	29.9	28.9	30.8	50.8	37.9	40.9	45.9	34.7	46.5
공주	16.3	45.3	28.7	24.8	77.3	59.2	61.8	74.2	63.1	83.9	61.3	44.0	40.8	59.7	45.9	55.4
보령	22.9	63.3	40.2	34.7	89.2	69.5	72.1	81.3	70.1	91.1	76.3	54.9	52.6	72.3	55.2	68.3
아산	31.1	81.9	52.8	45.9	60.5	51.8	52.1	46.8	43.8	49.4	71.2	52.3	55.5	64.3	48.3	64.4
서산	22.1	51.7	34.8	30.7	62.3	50.4	51.4	48.6	43.6	53.1	57.0	42.6	41.7	50.1	39.2	48.6
금산	18.3	49.3	31.6	27.3	164.8	121.2	128.8	202.3	167.1	233.2	107.0	76.4	64.0	125.8	99.3	110.0
연기	26.2	64.7	42.7	37.4	102.3	79.7	81.4	73.7	64.6	81.6	83.5	61.2	57.1	69.2	53.6	66.0
논산	17.6	48.5	30.8	26.6	66.4	51.9	53.1	49.0	43.0	54.2	57.5	41.4	39.6	48.7	36.9	46.9
부여	23.2	63.4	40.4	34.9	118.2	89.9	94.2	118.2	100.0	134.2	90.8	65.2	59.7	90.8	70.2	83.4
서천	26.3	70.4	45.2	39.1	133.6	101.7	106.6	139.3	117.6	158.3	102.0	73.4	67.1	104.8	81.4	95.9
청양	14.9	39.8	25.5	22.1	268.0	192.6	208.0	469.6	382.6	546.1	153.9	109.1	84.5	254.7	204.1	214.1
홍성	14.4	39.8	25.3	21.8	100.7	75.1	78.2	85.4	71.8	97.3	70.3	50.2	43.5	62.6	48.6	56.9
예산	14.6	38.5	24.8	21.5	96.1	71.8	74.8	81.8	68.9	93.1	67.3	48.3	42.0	60.1	46.9	54.7
태안	22.5	61.3	39.1	33.8	124.9	94.5	98.6	114.3	96.7	129.7	93.1	66.8	60.1	87.8	67.9	80.6
당진	23.4	53.9	36.5	32.3	68.4	55.0	55.6	47.5	42.9	51.6	61.2	45.8	44.3	50.7	39.7	49.5
전북																
전주	24.9	67.8	43.2	39.7	36.2	32.8	31.8	27.6	27.1	26.6	52.0	38.0	43.7	47.7	35.2	44.8
군산	23.0	59.9	38.8	35.8	46.6	39.6	40.2	34.5	32.3	30.3	53.3	39.2	42.8	47.2	35.6	41.9
익산	21.8	56.7	36.8	33.9	44.7	37.9	38.6	33.5	31.2	29.2	50.7	37.4	40.7	45.1	34.0	39.9
정읍	18.5	48.0	31.1	28.7	88.7	67.8	74.1	98.8	83.4	69.5	68.3	49.5	47.8	73.4	57.3	47.6
남원	19.9	54.3	34.6	31.8	107.2	81.2	89.3	125.7	105.5	87.1	80.8	57.9	55.6	90.0	70.1	56.2
김제	14.8	38.3	24.9	23.0	96.5	72.2	80.0	119.7	99.7	81.5	67.4	48.5	44.9	79.0	62.3	46.0
완주	31.1	76.2	50.4	46.7	124.9	97.0	105.5	138.7	118.1	99.4	100.6	73.7	72.5	107.4	84.3	72.6
진안	16.6	45.9	29.2	26.8	346.3	248.1	286.3	858.4	697.3	551.4	196.1	138.6	114.8	452.1	363.2	195.3
무주	16.4	43.9	28.2	25.9	285.8	205.6	232.6	410.6	335.2	266.8	164.9	116.9	96.7	227.3	181.7	106.3
장수	9.4	26.1	16.5	15.1	333.7	237.1	274.6	828.2	671.5	529.6	179.9	126.8	101.3	427.1	344.0	177.8
임실	14.6	39.7	25.4	23.3	302.4	216.7	249.9	732.5	595.1	470.7	171.1	121.0	100.1	386.1	310.3	167.0
순창	12.8	34.3	22.0	20.2	358.0	255.2	295.4	925.9	751.2	592.8	196.2	138.6	112.1	480.1	386.6	201.9
고창	13.1	35.6	22.7	20.9	174.8	126.7	143.5	277.1	226.6	180.8	105.2	74.7	63.8	156.3	124.7	75.1
부안	14.3	37.5	24.3	22.4	160.3	116.8	131.7	237.8	195.0	156.3	98.9	70.5	61.1	137.6	109.6	68.7

전 남	현재	정세지주의			배분공식						절충안					
					재정력환산지수			역재정력배분지수			정세지 + 재정력환산지수			정세지 + 역재정력배분지수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목포	19.6	52.8	33.8	28.4	51.3	41.9	33.5	34.7	31.8	26.9	52.0	37.9	34.9	43.7	32.8	37.0
여수	18.6	51.9	32.8	27.4	64.4	50.8	38.8	41.2	36.9	29.5	58.1	41.8	35.8	46.5	34.9	37.1
순천	21.9	59.5	38.0	31.8	52.3	43.3	35.6	41.0	37.4	31.1	55.9	40.6	38.5	50.3	37.7	41.9
나주	19.2	50.6	32.6	27.5	96.8	73.7	55.1	111.1	93.5	63.3	73.7	53.2	40.7	80.9	63.1	46.5
여천	46.2	116.9	76.5	64.9	84.8	73.4	61.9	56.1	54.2	50.9	100.8	75.0	74.3	86.5	65.3	80.1
광양	39.7	101.7	66.2	56.1	70.4	61.3	53.1	53.5	50.8	46.3	86.0	63.7	64.2	77.6	58.5	70.1
담양	18.6	49.2	31.7	26.7	190.6	139.4	98.5	238.5	196.4	124.2	119.9	85.6	53.6	143.8	114.1	63.5
곡성	22.7	54.6	36.4	31.1	269.3	195.9	138.2	457.1	374.0	231.3	162.0	116.1	69.3	255.9	205.2	98.3
구례	16.0	43.4	27.7	23.2	297.9	213.9	148.2	547.7	446.0	271.3	170.7	120.8	66.4	295.6	236.8	103.1
여천	11.8	33.0	20.9	17.4	246.9	176.9	122.0	444.9	362.0	219.8	139.9	98.9	53.2	238.9	191.4	82.3
고흥	11.8	32.7	20.7	17.3	153.7	111.5	78.1	246.6	201.7	124.5	93.2	66.1	39.4	139.7	111.2	54.3
보성	14.0	38.9	24.7	20.6	204.9	148.0	103.5	366.8	299.3	183.4	121.9	86.4	50.2	202.9	162.0	74.9
화순	15.6	42.2	27.0	22.6	128.9	95.1	68.3	173.8	143.5	91.5	85.5	61.0	40.8	108.0	85.2	50.0
장흥	12.1	34.3	21.6	18.0	243.2	174.4	120.5	453.5	369.1	224.1	138.8	98.0	53.3	243.9	195.4	84.2
강진	17.4	47.9	30.5	25.5	229.4	166.2	116.6	381.1	311.5	192.0	138.6	98.3	58.5	214.5	171.0	82.4
해남	12.5	35.1	22.2	18.5	119.4	87.6	62.4	174.1	143.2	90.1	77.3	54.9	35.5	104.6	82.7	45.6
영암	37.5	91.1	60.5	51.7	153.1	118.7	91.1	177.7	150.9	104.9	122.1	89.6	71.9	134.4	105.7	81.8
무안	15.0	40.9	26.1	21.9	178.1	129.6	91.0	246.3	202.1	126.1	109.5	77.8	47.3	143.6	114.1	59.4
함평	10.7	29.0	18.5	15.5	202.7	145.5	100.7	360.4	293.5	178.6	115.9	82.0	44.8	194.7	156.0	68.1
영광	37.9	104.6	66.5	55.5	147.6	115.0	88.2	138.1	118.9	86.0	126.1	90.7	75.5	121.4	92.7	82.6
장성	22.7	61.9	39.5	33.1	179.9	133.1	96.0	255.4	210.9	134.5	120.9	86.3	58.5	158.7	125.2	73.4
완도	13.6	36.8	23.5	19.7	207.0	149.4	104.1	343.0	279.9	171.7	121.9	86.5	49.5	189.9	151.7	70.4
진도	12.8	35.7	22.6	18.9	288.3	206.3	142.3	585.4	475.8	287.7	162.0	114.4	60.8	310.5	249.2	103.6
신안	13.3	38.2	24.0	19.9	319.5	228.2	158.3	1,133.4	919.1	551.1	178.9	126.1	66.9	585.8	471.5	181.8

경북	현재	정세지주의			배분공식						절충안					
					재정력환산지수			역재정력배분지수			정세지 + 재정력환산지수			정세지 + 역재정력배분지수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포항	32.7	86.1	55.5	49.1	41.6	39.0	36.5	35.1	34.6	33.7	63.8	47.3	46.0	60.6	45.1	46.2
경주	19.9	52.4	33.8	29.8	38.6	33.0	28.5	28.8	27.1	23.7	45.5	33.4	30.4	40.6	30.4	29.3
김천	21.6	54.7	35.8	31.8	74.8	59.0	46.9	65.8	57.3	40.7	64.8	47.4	38.6	60.2	46.5	36.7
안동	20.2	56.2	35.6	31.3	62.1	49.6	40.0	52.3	46.1	34.1	59.2	42.6	35.8	54.3	40.9	34.1
구미	41.2	104.3	68.3	60.6	54.2	50.4	47.0	45.4	44.6	43.0	79.3	59.3	57.4	74.9	56.4	57.4
영주	18.4	51.0	32.3	28.4	81.3	62.6	48.4	75.7	64.8	43.2	66.2	47.5	37.1	63.4	48.6	35.4
영천	22.4	55.7	36.7	32.6	83.7	65.5	51.6	74.8	64.7	45.0	69.7	51.1	40.9	65.2	50.7	38.8
상주	14.4	39.4	25.1	22.1	93.5	70.0	52.6	126.9	105.3	63.0	66.5	47.5	34.6	83.1	65.2	38.2
문경	14.3	39.1	24.9	21.9	114.2	84.5	62.5	148.4	122.8	72.3	76.6	54.7	38.3	93.8	73.9	41.5
경산	22.0	55.1	36.2	32.2	50.9	42.4	35.1	33.1	30.9	26.8	53.0	39.3	34.3	44.1	33.6	31.9
군위	14.3	38.5	24.7	21.7	324.4	232.1	165.1	615.3	500.3	274.2	181.5	128.3	77.4	326.9	262.5	114.7
의성	11.5	31.7	20.2	17.7	129.5	94.4	68.6	184.6	151.5	86.4	80.6	57.3	37.8	108.1	85.8	43.7
청송	11.7	33.2	20.9	18.3	298.6	213.1	151.4	617.3	501.5	273.6	165.9	117.0	70.0	325.3	261.2	112.2
영양	11.7	32.8	20.7	18.2	523.4	370.9	262.4	1,726.4	1,398.3	753.1	278.1	195.8	112.3	879.6	709.5	286.3
영덕	11.2	31.0	19.7	17.3	203.6	146.3	104.4	313.6	255.7	142.0	117.3	83.0	51.3	172.3	137.7	63.6
청도	24.6	69.8	43.9	38.5	198.0	146.4	108.5	284.4	234.7	136.9	133.9	95.2	66.7	177.1	139.3	76.5
고령	15.0	38.9	25.3	22.4	177.9	129.5	92.6	160.7	132.8	78.0	108.4	77.4	50.0	99.8	79.0	43.8
성주	14.9	38.6	25.1	22.2	173.9	126.6	91.0	179.5	148.0	86.1	106.3	75.8	49.3	109.1	86.6	46.6
칠곡	18.8	42.7	29.0	26.1	94.3	71.9	53.7	57.4	50.0	35.5	68.5	50.5	37.4	50.0	39.5	30.7
예천	13.3	37.1	23.5	20.6	198.7	143.5	103.1	308.3	251.9	140.9	117.9	83.5	53.0	172.7	137.7	65.5
봉화	21.5	60.4	38.2	33.5	271.1	196.7	143.3	611.9	498.9	276.8	165.7	117.4	76.7	336.1	268.6	123.9
울진	32.5	79.0	52.4	46.8	133.2	103.2	80.6	131.9	112.9	75.5	106.1	77.8	61.2	105.5	82.6	59.6
울릉	18.1	52.4	32.8	28.7	814.4	577.2	407.3	2,165.3	1,754.5	946.6	433.4	305.0	174.7	1,108.8	893.6	363.9

경 남	현재	징세지주의			배분공식						절충안					
					재정력환산지수			역재정력배분지수			징세지 + 재정력환산지수			징세지 + 역재정력배분지수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창 원	33.6	83.4	54.9	49.5	43.0	40.2	38.0	35.5	35.1	34.4	63.2	47.6	44.1	59.4	45.0	41.6
울 산	33.6	83.1	54.8	49.4	37.7	36.5	35.5	34.3	34.2	33.9	60.4	45.6	42.8	58.7	44.5	41.3
마 산	24.0	64.4	41.3	36.9	37.1	33.2	30.3	27.4	26.8	25.5	50.7	37.3	33.8	45.9	34.0	30.9
진 주	20.2	52.7	34.1	30.6	40.6	34.5	30.5	29.5	27.7	24.1	46.7	34.3	30.6	41.1	30.9	27.2
진 해	18.3	46.7	30.5	27.4	62.5	49.4	40.6	37.6	33.9	26.5	54.6	40.0	33.7	42.2	32.2	27.0
통 영	19.4	53.7	34.1	30.4	76.2	59.3	48.7	61.2	53.2	37.2	65.0	46.7	39.1	57.5	43.7	34.0
사 천	15.9	42.6	27.3	24.4	81.9	62.3	50.1	78.7	66.7	42.6	62.3	44.8	36.7	60.7	47.0	34.0
김 해	16.3	41.3	27.0	24.3	36.1	30.2	26.2	23.6	22.2	19.4	38.7	28.6	25.2	32.4	24.6	21.7
밀 양	17.5	47.0	30.1	26.9	85.4	65.2	52.7	81.2	69.0	44.5	66.2	47.7	39.2	64.1	49.6	36.2
거 제	32.4	77.8	51.9	46.9	68.1	57.5	50.5	50.7	47.2	40.2	72.9	54.7	48.7	64.2	49.5	43.4
의 령	13.5	36.4	23.3	20.8	321.7	229.9	175.7	756.4	614.3	328.7	179.0	126.6	94.3	396.4	318.8	183.0
함 안	24.9	57.0	38.7	35.2	123.4	94.1	75.6	98.5	84.4	56.1	90.2	66.4	54.4	77.7	61.5	46.2
창 넝	11.0	29.3	18.8	16.9	107.6	78.9	61.1	97.8	81.2	47.8	68.5	48.9	37.8	63.6	50.0	33.2
양 산	28.9	72.3	47.5	42.8	54.3	46.8	41.1	35.1	33.9	31.5	63.3	47.2	42.0	53.7	40.7	36.9
고 성	27.9	74.0	47.7	42.7	153.4	116.1	93.0	150.9	127.4	80.1	113.7	81.9	66.6	112.5	87.5	62.4
남 해	12.6	34.8	22.1	19.7	189.5	136.8	104.9	246.8	202.0	112.0	112.1	79.5	60.1	140.8	112.1	68.3
하 동	16.9	44.4	28.7	25.7	179.4	131.0	102.0	270.6	222.0	124.5	111.9	79.8	61.9	157.5	125.3	77.7
산 청	17.4	48.0	30.5	27.2	254.9	184.2	142.3	549.9	448.0	243.4	151.5	107.3	81.8	298.9	239.3	141.1
함 양	11.7	32.7	20.7	18.4	246.2	176.4	134.9	488.1	396.9	213.8	139.4	98.5	73.7	260.4	208.8	121.3
거 창	14.0	39.2	24.8	22.1	150.3	109.8	85.1	188.3	155.0	88.0	94.7	67.3	52.0	113.8	89.9	56.8
합 천	12.8	35.1	22.3	19.9	173.7	125.8	97.1	272.8	223.1	123.1	104.4	74.1	56.5	154.0	122.7	74.3
제주																
제 주	20.7	58.4	36.8	34.7	38.6	33.3	60.7	26.6	25.5	54.5	48.5	35.1	68.1	42.5	31.2	73.4
서귀포	15.4	41.3	26.5	25.0	67.1	51.8	152.4	39.2	34.7	153.0	54.2	39.1	78.3	40.3	30.6	82.7
북제주	14.0	39.5	24.9	23.4	105.3	78.1	289.4	80.6	67.8	398.8	72.4	51.5	114.8	60.0	46.4	148.0
남제주	15.2	40.2	25.9	24.5	110.0	81.9	305.9	90.3	75.9	449.0	75.1	53.9	119.7	65.2	50.9	162.0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Income Tax**

## **Abstract and Propositions**

### **Chapter 1. Introduction**

1. Purpose of the Study
2. Scope and Methodology
3. Framework for Analysis

### **Chapter 2. Background and Feasibility of the Local Income Tax**

1. Background
2. Feasibility

### **Chapter 3. Application Alternatives for the Local Income Tax**

1. Types
2. Tax Sources
3. Tax Rates
4. Criteria and Results of Distribution

### **Chapter 4. Evaluation of the Alternatives**

1. Increasing the Local Tax Revenue

2. Transfer of the Tax Revenue
3. Horizontal Equity
4. Enlargement of Income Taxation
5. Discussion

## Bibliography

## Appendix